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0524-01

지킬수록 기분좋은 기본
법질서 캠페인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

>>> 2008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0524-01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

>>> 2008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법 무 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법무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경 (해바라기 아동센터 임상심리전문가)

♧ 이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법무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임

연구요약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의 현황과 관련 대책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 재범 방지와 아동 보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아동 성폭력 범죄 예방으로 인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며,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 통합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아동 성폭력 처벌과 재범방지 부분, 아동 성폭력 예방과 아동보호 부분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의 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 사례 소개 및 개선 방안의 순으로 고찰하였다. 처벌과 재범 방지와 관련해서는 아동 성폭력 범죄를 규율하는 법과 정책들을 검토하였고, 아동 성폭력 예방과 아동보호와 관련해서는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 아동보호, 성폭력 피해 아동 원스톱 지원 및 아동 성폭력 예방 대책에 관해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상담사례 분석,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담당자 설문조사, 외국정책사례 연구, 워크샵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아동 성폭력 처벌과 재범 방지 대책은 아동 성폭력의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전자발찌 제도의 도입 등 제도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 왔으나 법원 양형과정을 통해 낮은 형이 선고되고 있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경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에 관한 친고죄, 공소시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외국 입법과 제도로는 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양형기

준과 양형범위, 추가적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세밀하게 목록화한 영국 성범죄법에 의한 양형기준, 유전자정보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예, 성폭력 범죄자 거주제한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 입법례, 경찰이 성범죄자 출소정보를 제공받아 재범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였고, 이들이 우리의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폭력 재범 방지 대책을 제언하면, 첫째, 아동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입법적 정비 방안으로 성폭력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친고죄 규정과 공소시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유전자 등록제도와 성폭력 범죄자 거주제한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성폭력 범죄자 대상 재범방지 교육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교육이나 보건복지가족부의 등록기간 감축교육, 교도소 수용자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마련과 인력양성 등 제반여건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아동 성폭력범죄자 출소정보 고지제도를 도입하여 성폭력 범죄자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의 피해 아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성폭력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제도,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제 등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이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아동 성폭력 전담기관 사례분석(54건) 결과 형사절차상 아동보호라는 목적이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사 및 재판 관련 정보제공 부분은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과제를 제시하면, 첫째,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가 필요하고, 둘째,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전문가 참여가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며, 셋째,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양질의 성폭력 피해 아동 조사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고, 넷째, 수사과정에 필요한 피해자 진술조서

의 경우 영상조서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 원스톱 지원체제와 관련하여 그 현황을 보면,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경우 13세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대상으로 전국에 3개소가 운영중이며, 의료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상대적으로 의료지원과 상담지원의 비중이 높다.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경우 아동 성폭력 전담기구는 아니나, 2007년 센터이용자 10명 중 한 명, 센터 이용한 성폭력피해자 10명 중 한 명이 아동 성폭력 피해자이고, 강제추행이 가장 많고 8-13세 이하 연령대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녹화진술, 조서 작성, 고소장 작성 등의 법률수사지원, 의료지원 비중이 높다. 아동 성폭력 전담기구가 아니다 보니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교육 경험이 적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동 성폭력 관련 전문가 투입 혹은 아동 성폭력 관련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 등을 위한 교육 훈련에 대한 교육 훈련 기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사례 분석 결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협력하는 형태(Multi-Disciplinary Team, 이하 MDT)의 통합 지원제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찰, (법의학) 의료인, 가족아동 관련 기관, 피해자 대변을 위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공간을 갖춘 센터, 관련 기관 등에서 팀으로 운영 등 형태는 다양하다. 이는 형사법적 지원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소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AC 모델의 경우 각종 시설이 구비된 별도 센터 형태로 운영되며, 형사법적 지원과 함께 아동과 가족을 위한 의료,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한다. SART 모델은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에 있는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을 이뤄서 운영되며, 증거 채취, 조사 등을 수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MDT는 관련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피해자의 불편함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물리적 통합성 뿐 아니라 기능적 통합성 차원에서 전문가들 간의 역할분담, 조정 등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원스톱 지원도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의 물리적 통합성 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 속에서의 기능상 통합성을 높이도록 개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센터 수준의 원스톱 지원이 아닌, 성폭력 피해 아동 지원체계 차원의 원스톱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원스톱 지원을 위한 다분야 전문가 협력방식이 다각화되어야 한다. 셋째, 원스톱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전문화・차별화가 필요하다. 넷째, 성폭력 피해 아동 지원 인력의 아동 성폭력 관련 교육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밀착형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끝으로 아동 성폭력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는,「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추진상황」점검을 위해「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구축・운영, 아동 놀이터・공원, 학교 내 CCTV 설치,「지역 공동 안전네트워크」 구축,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 노인 및 퇴직인력을 활용한 아동안전 확보, 배움터 지킴이 배치확대, 아동 안전 자원봉사단체 효율적 관리・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외국 사례로는 일본 효고현의「안전한 마을 만들기 조례」, 미국의 안전학교 프로젝트, 영국의 이웃 상호 감시 범죄 예방 프로그램, 호주의 안전한 집 프로젝트 등이 우리 정책수립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보호 종합대책의 구체적 실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책이 입체적 아동 안전 시스템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구

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뿐만 아니라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범죄 예방 영역에서의 검찰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성폭력 범죄의 사후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형사소추기능에 주력해 왔던 검찰기능의 범죄예방기능으로의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 주체 간의 연계를 모색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법집행관 이외에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NGO, 지역주민들과 연계하여 범죄예방 및 통제 활동을 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지역-학교-행정-경찰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연계를 끌어내기 위하여 범죄예방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 예방 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검찰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을 확산시켜야 한다.

다섯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도 확산되어야 한다. 성인 대상 예방교육을 통하여 아동 성범죄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성인이 할 수 있는 일들과 단계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꾀함으로써 결국 아동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3.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7

Ⅱ. **아동성폭력 처벌 및 재범방지** ····· 9

1. 공식통계 ····· 11
2. 현행 제도 및 운영현황 ····· 17
   가. 현행 제도 및 운영현황 ····· 17
   나. 아동 성폭력범죄자 처벌 및 재범방지제도의 문제점 ····· 25
3. 외국 입법과 제도 ····· 32
   가. 영국 성범죄법에 의한 양형기준 지침서 ····· 32
   나. 유전자정보 등록제도 ····· 37
   다. 기타 아동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제도 ····· 49
4. 소결 ····· 54

Ⅲ. **아동성폭력 관련 아동보호** ····· 59

1. 형사절차상 피해 아동 보호 ····· 61
   가. 현행 제도 ····· 63
   나. 운영 현황 ····· 67
   다. 소결 ····· 85
2. 성폭력 피해 아동 원스톱 지원 ····· 93
   가. 현행 제도 및 운영 현황 ····· 93
   나. 외국 사례 분석 ····· 126

다. 소결 ····· 135
3.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 ····· 140
가. 공식통계 ····· 142
나. 현행 제도 및 운영 현황 ····· 148
다. 외국 사례 ····· 156
라. 소결 ····· 161

Ⅳ.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와 아동보호 대책 ····· 167

1.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대책 ····· 169
가. 아동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입법적 정비 방안 ····· 169
나. 성폭력 범죄자 대상 재범방지 교육의 실효성 확보 ····· 171
다. 아동성폭력 범죄자 출소 정보 고지 제도 도입 ····· 171
2. 아동성폭력 관련 아동 보호 ····· 172
가. 형사절차상 아동 보호 대책 ····· 172
나. 성폭력 피해 아동 원스톱 지원 개선 방안 ····· 176
다.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 ····· 179

참고문헌 ····· 183

부록 ····· 189

1. 아동 성폭력사건 선고결과 및 감형사유 ····· 191
2. 범죄유형에 따른 DNA샘플 채취, 보존에 관한
미국 각 주의 관련 규정 ····· 194
3. 미국 50개 주의 주별 유전자정보 입력대상 범죄 표 ····· 199
4. 일본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방지관련 제도 ····· 201
5. 형사절차제도:실태조사기록지 ····· 210
6.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 ·· 217

표 목 차

<표 Ⅱ-1> 성폭력범죄 접수인원 ····· 11
<표 Ⅱ-2>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접수인원 ····· 12
<표 Ⅱ-3> 형법상 성폭력범죄 죄명별 접수 및 처리인원(2006년) ····· 13
<표 Ⅱ-4> 성폭력특별법상 성폭력범죄 죄명별 접수 및 처리인원(2006년) ··· 14
<표 Ⅱ-5> 13세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결과 ····· 16
<표 Ⅱ-6> 범죄유형별 피해자수 ····· 16
<표 Ⅱ-7>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 ····· 21
<표 Ⅱ-8> 신상정보 열람대상 및 열람권자 ····· 22
<표 Ⅱ-9> 영국 성범죄법에 의한 양형기준 지침서의 내용일부 ····· 36
<표 Ⅲ-1> 경찰청의 진술녹화 실적 ····· 68
<표 Ⅲ-2> 사법관계자의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 75
<표 Ⅲ-3> 사법관계자의 태도에 대한 빈도분석결과 ····· 76
<표 Ⅲ-4> 각 기관의 비밀보호규정 준수 제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 78
<표 Ⅲ-5> 전담조사제도와 관련한 질문항목에 대한 응답내용의 기술통계치 78
<표 Ⅲ-6> 전담조사제도와 관련한 질문항목에 대한 응답 빈도 ····· 79
<표 Ⅲ-7> 해바라기아동센터 설치 현황 ····· 95
<표 Ⅲ-8>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구비시설 ····· 103
<표 Ⅲ-9> 접수 현황 ····· 104
<표 Ⅲ-10> 서비스 지원 현황 ····· 105
<표 Ⅲ-11> 의료지원 실적 ····· 107
<표 Ⅲ-12> 법률지원 실적 ····· 109
<표 Ⅲ-13> 상담지원 실적 ····· 110
<표 Ⅲ-14>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현황 ····· 111
<표 Ⅲ-15> 인력 구성 및 활용 ····· 113
<표 Ⅲ-16> 피해 유형 및 지원 내용(06년~07년) ····· 117
<표 Ⅲ-17> 지역별 운영실적 ····· 118

<표 Ⅲ-18> 센터 일반 현황 ····· 119
<표 Ⅲ-19> 아동 성폭력 피해자 현황 ····· 120
<표 Ⅲ-20> 센터 내원 성폭력 피해 아동 현황 ····· 121
<표 Ⅲ-21> 아동 성폭력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 122
<표 Ⅲ-22> 외부 기관과의 연계 ····· 123
<표 Ⅲ-23> 고소율 ····· 124
<표 Ⅲ-24> 센터 인력의 아동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125
<표 Ⅲ-25> 성범죄 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 143
<표 Ⅲ-26> 성범죄 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 143
<표 Ⅲ-27> 13세 미만에서의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행 장소 ····· 144
<표 Ⅲ-28> 성범죄 유형별 범행 발생 시간 ····· 145
<표 Ⅲ-29>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범행 시간 ····· 146
<표 Ⅲ-30>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147
<표 Ⅲ-31>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
아동·청소년 간의 관계 ····· 148
<표 Ⅲ-32> 놀이터·공원에 CCTV 설치 현황 ····· 150
<표 Ⅲ-33> 설치 목표대수 ····· 151
<표 Ⅲ-34>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현황 ····· 153
<표 Ⅲ-35> 자원봉사단체 소속단체별 현황 ····· 154
<표 Ⅲ-36> 경기도지역 협력단체 연계현황 ····· 155

그 림 목 차

<그림 Ⅲ-1> 피해아동의 연령분포 ····· 70
<그림 Ⅲ-2> 가해자의 연령 분포 ····· 71
<그림 Ⅲ-3> 고소~1심까지의 소요 시간 ····· 74
<그림 Ⅲ-4> 2심 소요 시간 ····· 74
<그림 Ⅲ-5> 조사관의 타이핑이 조사를 방해하는 정도(경찰단계) ····· 81
<그림 Ⅲ-6> 조사관의 타이핑이 조사를 방해하는 정도(검찰단계) ····· 82
<그림 Ⅲ-7> 기존 시스템과 원스톱 시스템 ····· 94
<그림 Ⅲ-8> 해바라기아동센터 업무 체계도 ····· 97
<그림 Ⅲ-9>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기본 조직도 ····· 98
<그림 Ⅲ-10>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의 업무 및 수행 인력 ····· 100
<그림 Ⅲ-11> 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의 업무 및 수행 인력 ····· 101
<그림 Ⅲ-12>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의 업무 및 수행 인력 ····· 102
<그림 Ⅲ-13>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기본 조직도 ····· 112
<그림 Ⅲ-14>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업무체계도 ····· 116
<그림 Ⅲ-15> 범죄예방망(CPN) 모델의 구조 ····· 16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3.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의 안양초등학교 여학생 유괴・살해사건에서 나타난 범죄자의 흉악성과 잔인성은 국민 대다수를 불안에 떨게 하였으며, 국민들은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더 이상 일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것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제도, 전자발찌제도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성폭력범죄 방지관련 법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성폭력범죄의 발생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성폭력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범죄 방지대책이나 범죄자 교정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에 대한 방어능력이 부족하고, 어른에게 의존의 정도가 강한 아동대상의 성폭력은 아동에게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함께 어렸을 때의 경험이 전 생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또한 아동들의 가족의 고통이 심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통계로, 경찰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성폭력범죄 신고는 24.4% 증가하였으나, 아동대상 성폭력은 80.2%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법무부・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년 이내 재범률의 경우 전체 성폭력범죄가 37%인데 비해 아동 성폭력범죄는 50%에 달하고 있어(여성신문, 2008.4.5)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방지와 특히 재범방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아동대상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범방지 대책이,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예방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두 측면에서의 대책이 함께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는 아동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최

근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이 구성되었고,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7개의 과제와 실행계획으로 구성된「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1)]

그런데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나 보호에 관한 제도가 전혀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함) 등 특별법에서의 법정형이 강화되었고, 그동안 시행되었던 신상공개제도가 신상등록제도와 열람제도로 개선되고 강화되는 등 범죄자 처벌과 재범방지에 관한 제도가 상당수 마련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특히 성폭력범죄자의 상습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재범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도 다수 마련되어 있다.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동진술녹화제도를 비롯한 여러 제도들이 성폭력특별법에 도입되었다. 또한 피해발생시 응급조치와 함께 법률, 의료, 상담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체계들이 구성되어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학교에서의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들 수 있지만, 이것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이외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예방대책은 미미한 수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재범방지 그리고 아동 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아동보호로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 각각의 아동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사례의 소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아동 성폭력범죄자 처벌과 재범방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

1)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2008),「'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실행계획」, 2008.5.26.

는 성폭력범죄자 처벌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하여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해 볼 것이다. 필요한 경우 외국입법례도 함께 연구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또한 성폭력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지원체제 가운데 업무처리나 숫자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와 여성부의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이 센터들이 다루고 있는 아동 성폭력 지원업무의 비중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보호차원에서의 사회안전망 구축방안과 관련하여, 아동들의 성폭력범죄 피해로 부터의 안전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방과 후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보장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아동들에게 피해예방을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그리고 피해발생시 신고, 상담, 의료,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적절하고도 빠른 피해자 지원체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등 아동들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 때 외국의 선진적인 정책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와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피해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가능하게 하여 안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아동 성폭력범죄 처벌 및 재범방지

- 공식통계
- 현행 제도 및 운영현황
- 외국 입법 및 정책사례
- 종합 및 분석

○ 아동 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 형사절차상 피해아동 보호
- 성폭력피해아동 원스톱 지원
- 아동 성폭력 예방

○ 아동 성폭력 재범방지와 아동보호대책 제시
- 아동 성폭력 재범방지대책
- 아동 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아동보호대책

나. 연구방법

○ 공식통계자료, 선행연구 등 문헌연구
○ 해바라기아동센터 상담사례 분석
- 상담사례 분석(54건)을 통해 형사사법절차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관계공무원 면접조사
- 여성부, 경찰청 담당공무원 면접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방향 및 연구조사방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담당자 설문조사
○ 외국정책사례 연구
○ 분야별 관계자 워크샵
- 경찰, 검사, 판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아동 성폭력문제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논의하였음(2008.5.21 "우리

사회, 여아의 안전을 진단한다-아동 성폭력을 중심으로-" 여성정책 포럼 개최)

- 경찰, 검찰,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워크샵을 통해 형사절차상 피해아동 지원과 관련하여 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2008.8.8).

○ 전문가 자문회의

3.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 여 도

○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으로 인한 아동보호와 안전한 사회조성에 기여

○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재사회화 기회 제공

○ 성폭력범죄의 감소로 인한 형사사법 집행관련 물적·인적 비용의 절감효과 제공

나. 기대효과

○ 아동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공감대 형성

○ 아동 성폭력범죄 방지대책의 철저한 시행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 기대

○ 아동 성폭력범죄의 예방, 범죄자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 집행을 위한 기반형성과 정착화 유도

다. 활용방안

○ 아동 성폭력범죄 관련 관계부처 대책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

○ 성폭력피해로 부터의 아동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방안 제공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유형별 특성에 맞는 재범방지대책 수립 시 활용

Ⅱ 아동성폭력 처벌 및 재범방지

1. 공식통계 11
2. 현행 제도 및 운영현황 17
3. 외국 입법과 제도 32
4. 소결 54

Ⅰ. 공식통계

가.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현황

1) 아동 성폭력범죄 처리현황

○ 형법과 특별법상 성폭력범죄자 접수현황

2002년-2006년 4년 동안 수사기관에 접수된 성폭력범죄자 인원을 보면, 형법범(강간과 추행의 죄)의 경우 6,644명에서 9,403명으로, 특별법범(성폭력특별법)의 경우 4,222명에서 5,455명으로 증가하였다.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원인은 피해자 등의 신고, 고소,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 등이 포함된다.

〈표 Ⅱ-1〉 성폭력범죄 접수인원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강간과추행의죄	6,644	6,981	7,818	7,908	9,403
성폭력특별법	4,222	4,687	4,968	4,748	5,455
계	10,866	11,668	12,786	12,656	14,858

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2003-2007.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접수현황

형법상 범죄는 2002년-2006년 사이 110명에서 117명으로, 성폭력특별법상 범죄는 <표 Ⅱ-2>에서와 같이 534명에서 754명으로 증가하였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여아를 간음한 경우이고,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경우를 내용으로 한다(형법 제305조).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여아나 아동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죄의 경우가 해당된다(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형법상 성폭력범죄 전체 범죄자 8,392명 중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는 114명으로 1.4%, 성폭력특별법의 경우는 5,312명 중 740명으로 14.0%를 차지하고 있다(표 Ⅱ-3). 이를 통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2〉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접수인원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형법	미성년자의제강간	23	38	39	45	37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	87	81	69	72	80
	계	110	119	108	117	117
성폭력특별법	13세미만강간등	534	652	637	700	754
	계	534	652	637	700	754

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2003-2007.

2) 수사기관의 아동 성폭력범죄 처리현황

○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소율과 불기소율 비교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전체는 기소율 38.0%, 불기소율 60%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기소율 51.4%, 불기소율 27.0%,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기소율 60.0%, 불기소율 32.5%로 나타나 13세 미만 성폭력범죄 기소율이 높은 편이다.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강간 등 범죄는 기소율 63.9%, 불기소율 25.0%로 성폭력특별법상 성폭력범죄 전체범죄의 기소율 60.2%, 불기소율 29.0%에 비해 기소율이 높은 편이다.

형법, 성폭력특별법 모두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의지는 성폭력전체의 평균에 비해 강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Ⅱ-3〉 형법상 성폭력범죄 죄명별 접수 및 처리인원(2006년)

(단위 : 명(%))

구분	접수	처리															
		총계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구속	불구속												
강간과 추행의죄	8,633	8,392 (100.0)	3,186 (38.0)	1,222	665	1,299	5,016 (60.0)	710	137	6	3,630	310	75	239	75 (0.9)	1 (0.0)	114 (1.4)
강간·준강간	2,236	2,157	385	385	100	-	1,715	229	4	-	1,240	87	26	129	8	-	49
강제추행·준강제추행	4,605	4,519	1,738	204	241	1,293	2,737	214	43	2	2,301	60	25	92	20	-	24
강간등상해	358	348	297	218	79	-	41	18	7	-	2	10	3	1	6	-	4
강간등치상	1,195	1,142	659	436	223	-	419	230	80	-	33	49	20	7	31	1	32
강간등살인	7	7	6	6	-	-	1	1	-	-	-	-	-	-	-	-	-
강간등치사	4	4	3	3	-	-	1	-	1	-	-	-	-	-	-	-	-
미성년자간음	91	38	31	21	10	-	52	8	-	-	39	-	1	4	-	-	-
업무상위력간음	20	18	2	1	1	-	15	4	-	-	7	2	-	2	-	-	1
미성년자의제강간	37	37 (100.0)	19 (51.4)	18	1	-	10 (27.0)	2	-	2	4	1	-	1	7 (19.0)	-	1 (2.7)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80	77 (100.0)	46 (60.0)	30	10	6	25 (32.5)	4	2	2	13	1	-	3	3 (3.9)	-	3 (3.9)

자료 : 대검찰청(2007),「검찰연감」.

〈표 Ⅱ-4〉 성폭력특별법상 성폭력범죄 죄명별 접수 및 처리인원(2006년)

(단위: 명(%))

구분	접수	처리															
		총계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구속	불구속												
성폭력범죄 전체	**5,455**	**5,312 (100.0)**	**3,197 (60.2)**	**1,609**	**505**	**1,083**	**1,541 (29.0)**	**454**	**321**	**12**	**478**	**163**	**32**	**81**	**456 (8.6)**	**-**	**118 (2.2)**
13세미만 강간등	754	740 (100.0)	473 (63.9)	289	100	84	185 (25.0)	70	65	5	2	34	1	8	70 (9.5)	-	12 (1.6)
강간등 살인	16	16	15	14	1	-	1	-	-	-	-	1	-	-	-	-	-
강간등상해	237	229	182	158	24	-	41	17	1	-	2	12	1	8	4	-	2
강간등치상	322	316	212	187	25	-	41	30	5	-	1	4	1	-	54	-	9
공중밀집장소추행	944	939	622	12	9	601	311	9	9	-	291	2	-	-	-	-	6
업무상위력등추행	123	116	37	4	13	20	78	11	-	-	60	1	-	6	-	-	1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188	171	71	39	23	9	94	67	5	-	1	12	2	7	2	-	4
절도강간등	41	40	33	27	6	-	5	3	2	-	-	-	-	-	1	-	1
주거침입강간등	368	360	279	182	97	-	74	21	32	-	2	15	3	1	4	-	3
친족관계에 의한강간등	265	252 (100.0)	151 (60.0)	127	24	-	93 (37.0)	41	12	1	11	15	3	10	-	-	8 (3.2)
카메라등 이용촬영	488	476	334	36	20	278	114	25	72	-	6	4	-	7	17	-	11
통신매체 이용음란	228	226	101	2	8	91	119	15	11	1	65	14	1	12	2	-	4
특수강간등	950	921	391	313	78	-	264	113	61	-	26	28	19	17	244	-	22
특수강도강간등	326	310	250	190	60	-	32	8	2	-	6	15	1	-	7	-	21
특수강제추행등	205	200	46	29	17	-	89	24	44	5	5	6	-	5	51	-	14

자료 : 대검찰청(2007), 「검찰연감」.

3)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현황

○ 국가청소년위원회 제13차 신상공개자료분석 결과

2007.11.21 제13차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계도문이 발표되었고, 383명이 신상공개 되었다. 심의대상은 2006년 7월-12월에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자이며, 전체 909명 중 383명이 신상공개[2]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신상공개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법원의 공식통계가 세부범죄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사건에 대한 선고결과를 통계로 내고 있기 때문에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결과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의 「검찰연감」의 경우처럼 법원에서의 선고결과를 범죄유형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한 최종심 결과

제13차 신상공개 결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유형은 강제추행(229명), 강간(40명)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Ⅱ-5). 이러한 사실은 제4차-13차 신상공개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청소년이 겪은 범죄유형은 13세 이상의 경우는 강간범죄(74.6%)가, 13세 미만의 경우는 강제추행범죄(70.4%) 피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6).

---

2)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방지와 예방에 관해 국민의 의식을 높일 목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으로, 2008.2.4 부터는 신상정보등록제도로 변경되었음. 신상공개방법은 관보, 국가청소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 정부 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 게시판 1개월간 공개하였음. 신상공개 세부심의기준은 범죄유형(20점), 대상 청소년의 연령(20점), 범행동기·수단·결과·죄질(10점), 범행전력(10점)을 내용으로 하였음.

〈표 Ⅱ-5〉 13세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결과

(단위: 명(%))

피해자연령	최종심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13세 미만	유기징역	32(80.0)	51(22.3)	0	83(30.2)
	집행유예	4(10.0)	59(25.8)	1(16.7)	64(23.3)
	집행유예/보호관찰등	4(10.0)	68(29.7)	0	72(26.2)
	치료감호	0	1(0.4)	0	1(0.4)
	벌금	0	49(21.4)	5(83.3)	54(19.6)
	기타	0	1(0.4)	0	1(0.4)
	계	40(100.0)	229(100.0)	6(100.0)	275(100.0)
13세 이상	무기징역	1	0	0	1(0.2)
	유기징역	60(57.7)	30(24.2)	12(3.1)	102(16.5)
	집행유예	13(12.5)	21(16.9)	34(8.7)	68(11.0)
	집행유예/보호관찰등	30(28.8)	33(26.6)	54(13.8)	117(18.9)
	치료감호	0	1(0.8)	0	1(0.2)
	벌금	0	39(31.5)	290(74.2)	329(53.2)
	기타	0	0	1(0.3)	1(0.2)
	계	104(100.0)	124(100.0)	391(100.0)	619(100.0)

〈표 Ⅱ-6〉 범죄유형별 피해자수

(단위: 명(%))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 알선	음란물 제작	계
13세 미만	591 (25.5)	2,569 (70.4)	91 (1.6)	1 (0.1)	1 (5.6)	3,253 (26.2)
13세 이상	1,737 (74.6)	1,081 (29.6)	5,670 (98.4)	679 (99.9)	17 (94,4)	9,184 (73.8)
계	2,328 (100.0)	3,650 (100.0)	5,761 (100.0)	680 (100.0)	18 (100.0)	12,437 (100.0)

자료 : 제4차-13차 신상공개 자료.

범죄유형별 최종심 결과를 보면,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의 경우 강제추행은 집행유예/보호관찰 등(29.7%)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집행유예(25.8%), 유기징역(22.3%), 벌금(21.4%) 순이고, 강간의 경우 유기징역(80.0%)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집행유예(10.0%), 집행유예/보호관찰 등(10.0%)의 순으로 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5).

이를 통해 13세 미만의 아동은 상대적으로 강제추행의 피해비율이 높고, 그 범죄자들은 집행유예 또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병과된 형을 선고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는 것은 초범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점에서의 재범방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범일 때 범죄의 습성을 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의 재범방지을 위한 교육이나 치료 등 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현행 제도 및 운영현황

가. 현행 제도 및 운영현황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처벌 및 재범방지를 위해 우리나라는 어떤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 아동 성폭력범죄 처벌강화 등 관련 법 개정

아동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제305조)를 비롯하여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등(제8조의 2)이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다.

최근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동반한 유괴, 살해 등의 잔

인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구성요건의 추가와 법정형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발의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우선 성폭력특별법 개정(제14차 개정, 2008.6.13 법률 제9110호)을 통해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유사강간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 법 개정의 목적은 최근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3세 미만의 여자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자를 엄단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3세 미만의 여자 강간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법 제8조의2제1항)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 유사강간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 등(법 제8조의2 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유사강간행위에 추가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 등(법 제8조의2 제2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 강간 등 상해·치상죄에 대한 가중 처벌(법 제9조제1항)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⑤ 13세 미만의 사람 강간 등 살인·치사죄에 대한 가중 처벌(법 제10조)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살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또한「치료감호법」을 통해 소아성기호증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의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그 상한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하는 등 아동 성폭력범죄자 수용치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2008.6.13 개정, 2008.12.14 시행).

2)「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2007.4.27 제정, 2008.9.1부터 시행되었다. 법무부는 200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300명 정도의 성폭력범죄자가 위치추적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조선일보, 2008.8.27).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는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특히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고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3)]

---

3)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대상범죄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강도강간과 성폭력특별법상의 특수강도강간 및 미수범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임. 또한 대상 범죄자는 2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

그러나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1회 범행한 경우도 전자장치 부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 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논의[4]가 있으며, 특별히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만 전자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한다는 것은 범죄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위치확인 수신자료가 성폭력범죄의 증거발견을 용이하게 하여 범죄자의 유죄인정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면 이는 국가의 수사편의를 위하여 과도하게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여지도 있을 듯하다.

따라서 이 제도에 관해 범죄자간의 형평성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배제 또는 최소화하면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가의 설비비용을 투자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가 가해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등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범죄자의 재범방지는 궁극적으로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기계장치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도입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그간 시행되어 오던 신상공개제도를 신상정보등록

받고 관련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친 뒤 5년 이내에 재범할 경우, 또 이 법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재범하거나 상습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 집행 중 가석방되거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동시에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

4) 이 제도가 재범의 위험성 제거나 사회방위를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나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가장 적합한 제도로는 보기 어려워 적합성 원칙에 위배되고 범죄인의 기본권 제한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공익이 실질적으로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어 범죄인의 기본권만을 제한하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들이 있음 : 김서현(2006), “성폭력범 재범장치를 위한 조치-전자팔찌 등 상습범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법제사법위원회, pp.70-74.

제도와 열람제도로 개편하였다(2005.12.29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재범율이 높아 성범죄자의 관리가 필요하고,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법원의 판결선고 시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고지하도록 하였고, 등록방법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하고 경찰은 매년 1회 등록정보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기간은 법 개정을 통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2007.8.3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2008.2.4 시행),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등록기간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연 40시간 이내이며, 교육결과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표 Ⅱ-7〉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

구 분	내 용
등록 기간	○ 10년(형 집행 종료 후)
등록 대상	○ 청소년 대상 성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자 또는 법원에 의해 열람 명령이 확정된 자 - 성 매수의 경우는 재범자이거나 대상 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등록 정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사진 ⑥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신상정보열람제도는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비롯하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법원이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성폭력범죄사건 선고와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다.

열람권자는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이며, 열람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다.

열람방법은 열람권자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시하고 열람하게 되며, 최근에 법무부는 열람절차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인터넷열람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표 Ⅱ-8〉 신상정보 열람대상 및 열람권자

구 분	내 용
열람 기간	○ 5년(형 집행 종료 후)
열람 대상	①13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강간・강제추행 등) ②13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성매매 등 포함)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 ③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등
열람 정보	①성명 ②나이 ③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사진 ⑥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열람 권자	①등록 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②등록 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열람 장소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여청계 미설치서는 생활안전・질서계)
열람 방식	경찰 내부망에 설치된 정보열람 프로그램 접속・열람

여기서 열람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용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아동들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상정보열람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열람제도도 그 방법의 하나일 수 있으나 신상공개제도 시행당시 지적된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나 인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열람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활발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 신상열람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 뉴저지주의 메간법에 의한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통지제도를 참고해 볼 수 있다(윤지영, 2004 : 17-20).

등록요건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정도에 따라 통지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전문가 및 법집행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위험요소들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고 합산하여 결정하는 위험평가점수제를 이용한다.

위험성 평가기준은 크게 4개의 군으로 나누어지며, 범죄의 불법정도(제1군), 범죄경력사항(제2군), 범죄자의 특성(제3군), 석방 후 지역사회의 지원환경(제4군)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하여 저위험군(1등급), 중간위험군(2등급), 고위험군(3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은 신상정보 등록만 강제하고 그 정보는 형사사법기관 내부에서만 이용, 2등급은 학교, 청소년단체, 탁아시설 등에 신상정보 통지, 3등급은 해당 범죄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주민에게 개별통지, 인터넷열람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자의 위험정도에 대한 등급관리를 통해 통지여부를 달리하는 미국 뉴저지주의 통지제도 방식은 성폭력범죄자를 형선고단계에서부터 행형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통지방법을 정하게 됨으로써 더욱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4)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주요 제도

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그 후 10년간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청소년대상 체육시설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

고, 취업자의 해임요구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법 제42조). 취업제한의 기간은 당초 형 확정 후 5년에서 형 확정 후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성폭력범죄 발견 시 신고의무자 신고관련

성폭력특별법상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2조의5).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36조).

이 제도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도이며, 이 규정의 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 교사, 병원 의사 등이 일차적으로 해당될 것이며, 사안발생시 행동지침과 대상자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처벌에 의한 강제보다는 신고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검토하여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 발견시 신고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나누어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 가족내 성폭력인 경우, 외부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 학교 내 동급생이나 상급생에 의한 경우 등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매뉴얼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 친권상실청구제도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친권상실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법 제14조, 제15조, 2007.8.3 개정).

친부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지속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

해서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해임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보호시설에 보호위탁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복지법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제12조, 시, 군, 구청장 청구)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새로 도입된 친권상실청구제도에 대한 활용가능성과 활성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아동 성폭력범죄자 처벌 및 재범방지제도의 문제점

1) 법원 양형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선고형 강화 필요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에 훨씬 못 미치는 선고형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가해자의 음주여부나 가해자, 피해자간 합의서 제출여부가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범행당시 가해자가 음주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형량을 감경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남성의 성적 욕구는 충동적인 것이며, 음주상태에서는 남성의 자기제어능력이 상실되어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다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적 통념에 근거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서 제출여부가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측의 합의는 보통 위자료의 지급이 동반되기 때문에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의 응보감정을 만족시킴으로써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의 범위도 감소한다는 점에서 양형에서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에서 피해자측의 합의가 갖는 의미는 매우 제한적이며, 재산범죄와는 달리 신체상의 침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피해의 배상 및 복구라는 것이 한

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 이외에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가해자(측)의 종용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합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노성호, 1999 : 182-183).

2) 법원 판결문 분석에 의한 아동 성폭력범죄자 감경사유와 문제점

아동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결에서 보면, 일반적인 다른 판결에서와 다르지 않은 형의 감경사유들이 제시되고 있어 검토가 요망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특히 중하고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얼마나 있을까 싶겠지만 역시나 형의 감경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법률지원 중이거나 지원하였던 사례 중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종결되었거나 유죄판결 후 상급심이 진행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급심 및 상급심 판결문을 분석하였다(부록1 참조). 28건의 사례가 분석되었으며, 양형 고려 요인들은 중복 계산되었다.

분석결과,「동종 전과 없음」이 16건에서 감형 사유로 언급되어 최빈치를 드러내었다. 여기에는 살인전과가 있으며, 두 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가해자도 포함되어 있다. 즉, 살인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경 사유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는 범행의 자백(11건)이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범행에 대한 반성(10건)도 자주 고려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의 나이도 10건으로 중요한 고려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상적인 것은 미성년이라는 점이 감안된 경우는 3건인 것에 비해 고령임이 고려된 경우는 7건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어떤 사례에서는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서 더 이상 추가 범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감경 사유로 판시되어 있었다. 나이 든 가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당뇨나 그 밖의 신체 질병 및 정신과 치료(우울증) 병력이 감경사유로 함께 고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합의 5건, 음주 3건, 부양할 자녀가 있거나 가족들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경우가 3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가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진 것, 피해자 측의 고소 취하, 공탁, 추행 정도가 경미함 등이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청각 및 언어 장애가 감경 사유였던 사례도 1건 있었고, 국가유공자라는 점이 감안된 사례도 1건 있었다. 재비행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감경 사유로 판시된 것이 2건 있는데, 재비행성 예측이 전문가들에 의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령과 성행(이 역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피고 측의 주장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판사가 평가한 것이었다.

주목할 만하게도, 아동이 후유증이 없다는 것이 경감 사유로 인정된 사례도 한 건 있었으며, 하급심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은 인정되나, 그것이 과도한 애정표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다가 상급심에서 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

아동에 대한 범죄는 법에서도 법정형이 높고, 특히 엄중하게 처벌되리라고 여겨지지만, 판결문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 예컨대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등은 그것이 어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판결인지가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빈번한 형의 감경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지 못하고, 재범으로 쉽게 나가도록 하는데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적절한 교육과 치료 필요

성폭력범죄자의 범죄유형이나 재범여부 등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처벌, 치료, 교육 중 어느 것이 필요한가를 판단하여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범방지의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도소 내 성폭력범죄자 교육실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6.12. 현재 교도소 수형자 32,996명 중 성폭력범죄자가 4,041명(12.2%)이고, 이들 중 675명(16.7%)이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화・치료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였으나 최근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11개 교도소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재소자의 교육참여를 강제할 법적 근거 미비, 전문인력 및 독립된 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 이외에도 교도소 내 성폭력범죄자 교정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성폭력범죄자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교육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으며, 강제성이 없고, 수강에 대한 혜택이 없으며, 교육수료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교도소 내 교육교화과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유업무가 가중되고, 별도예산 책정없이 소장의 의지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은 한계가 있으며, 외부인이 교도소 내에 들어갔을 때 재소자 계호문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수강명령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병과될 필요가 있다. 집행유예만 선고되는 경우가 전체의 50%정도로 나타나는데 아무런 처우없이 집행유예기간만을 도과하면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인식개선은 거의 불가능하다. 법원과 보호관찰소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시 수강명령을 함께 처분하고, 보호관찰소는 완성도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범죄자의 자기책임성 인식과 피해자에 관한 공감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수립을 통해 재범방지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강명령의 교육도 성폭력범죄 유형별 구분교육 실시, 보호관찰소 집행팀에 성폭력전담제 도입,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개선, 외부강사의 전문성 배양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치료감호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이외에 정신질환자 등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치료감호법」이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문가의 필요적 감정관련 기준마련,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감호소 설치와 관련된 인력, 예산확보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친고죄 폐지 여부 검토

성폭력범죄에 관한 친고죄 폐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친고죄 규정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본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사법기관에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제297조),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강제추행죄(제299조),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제300조),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죄(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죄(제305조)에 대해서는 친고죄로 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제15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1조 제1항),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제14조의 2)를 친고죄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로 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법원(서울고등법원 1999.11.23선고, 99노2442 판결)은 “법이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교적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하여 구태여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소추해서 처벌하고자 함에 있고, 어떠한 범죄를 친고죄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5)]

---

5) 1974.6.18 선고된 고등법원 판결(73노54)도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강간죄가 기소되어 사회에 공표되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여 그 명예를 손상케 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 및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기다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하였다 : 한인섭(1996), 각주 54).

그러나 다수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입법태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정조관념이 강한 우리나라 문화에서 범죄를 소추해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피해자가 입게 될 명예손상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6] 이와 좀 다르게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위치가 부차적인 지위에서 피해자의 권리(헌법 제27조제5항)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의 소송참가방식도 점차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성폭력범죄에 친고죄형식을 취하는 것도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강진철, 2000 : 250).

친고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 의하면,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사회의 안전과 선량한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범죄로서 사회가 개입하여 그 예방과 규제 및 재발방지, 피해자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수치심과 보복에의 두려움 등으로 고소하지 못하는 현실을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하는 점,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거나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면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보호는 고소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사와 재판방식의 고안, 비밀누설금지와 보도금지 규정의 실효화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7]

이와 관련하여 중대한 법익침해행위를 단순히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 보호라는 이유로 국가형벌권 발동여부를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성폭력 문제를 남녀간의 개인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성폭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왜곡시킨다는 점,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강간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고 형사절차에서 가해자를 과보호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여전히 가해자의 처

---

6) 김일수(1994), 「한국형법Ⅲ 각론(상)」, p.379 ; 이재상(1992),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형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자료」, p.41 등.

7) 한인섭(1996), pp.191-194 ; 이명숙(1998), p.66; 최영애(1997), p10.

벌을 원할 수 있음에도 그 처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가해자는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접촉하여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피해자의 본질적 의사를 무시한 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황은영, 2007 : 32-33).

이에 피해자 보호는 친고죄 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피해자 신분의 비공개, 프라이버시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철저한 법·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위해 친고죄 폐지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한편, 친고죄 폐지문제와는 방향이 다르지만, 일본의 경우는 친고죄 고소기간이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을 폐지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8)]

5) 공소시효제도 개선

최근 들어 성폭력범죄자들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자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소시효제도는 범행 이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져 진실발견이 어렵게 되고,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시간의 경과에 의해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범죄자 자신도 역시 시간의 경과로 인해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범인의 법적·사회적 안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공소시효제도는 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고, 중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때 법이 없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가 문제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미국 각 주의 제도를 보면, 미국 메릴랜드주의 경우 살인죄와 더불어 아동 성추행 사건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

8) 한국여성개발원(2004),「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p.145.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지만 중단의 한 형태로서 공소시효가 성폭력범죄자의 피해자인 미성년자에게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미성년의 경우를 포함시켜 성년이 된 이후에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사실상 공소시효를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중단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9)]

이와 관련하여 독일형법의 경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만 18세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도록 공소시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10)]

3. 외국 입법과 제도

가. 영국 성범죄법에 의한 양형기준 지침서[11)]

1) 개요

영국 양형지침위원회(Sentencing Guidelines Council)는「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CJA)」과「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 따른 양형기준(Denfinitive Guideline)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는 2007년 5월 14일 이후에 유죄가 선고되는 범죄자의 양형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지침서에 의하면, 가중 또는 감경요인이 없는 성인의 강간에 대하여는 5년을 양형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다른 범죄의 형량을 위한 계산의 기준으

9) 박용철(2006),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공소시효의 중단 및 연장에 관한 제 문제 - 미국법을 중심으로”,「피해자학연구」제14권 제2호, 2006.10, pp.223-245.
10) 한상훈(2000), “최근 독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과 성적 자기결정의 보호성”,「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p.213.
11) Sentencing Guidelines Council(2007), Sexual Offences Act 2003 Definitive Guideline.

로 삼고 있다.

이 지침서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2부 합의에 의하지 않은 범죄(Non-Consensual Offences), 3부 유효하지 않은 동의를 수반하는 범죄(Offences Invoiving Ostensible Consent), 4부 준비범죄(Preparatory Offences), 5부 기타 범죄(Other Offences), 6부 착취범죄(Exploitation Offences), 7부 미성년 범죄자의 양형(Sentencing Young Offenders-Offences with a Lower Statutory Maximum)이 그것이다.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은 이전까지 양형 판례법에 존재하지 않았던 범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새롭거나 수정된 범죄를 포함하며, 2004년 5월 이 법의 시행으로 다수 사건들이 항소법원에서 숙고되었다. 2006년 12월에 발간된 위원회 지침 "가장 중요한 원칙: 가정 내 폭력"에서는 가족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가정내 폭력'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행위에 관한 양형기준과 양형범위를 정하고, 추가적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를 제시하는 등 법원이 양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다.

2) 양형기준의 구체적 내용

「형사사법법(CJA) 2003」에 의하면, 범죄의 중대성은 두 가지 변수 즉, 범죄자의 형사책임과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을 포함하여 범죄자에 의해 야기되었거나 감수된 위해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양형지침위원회의 지침은 범죄의 심각성은 범죄자의 형사책임의 상대적 영향과 피해자에게 야기된 실질적 또는 예측가능한 위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책임과 위해간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 개별사건의 특수상황내에서 범죄자의 형사책임이 범죄의 중대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 지침은 개별적 성범죄에 대해 의회가 정한 최고형과 재판방식을 상대적 중대성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성범죄로 야기되는 위해'

는 행위가 합의되지 않았거나 강제적, 착취적인 모든 성범죄를 말하며, 피해자가 표면적으로는 동의했으나 어린 나이 또는 정신적 장애로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하는데 영향을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성범죄의 영향은 신체적, 심리적인 것을 포함하며, 부상, 임신, 성적으로 전이되는 병들은 매우 심각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공포심, 모욕감, 퇴폐, 수치심, 당혹, 신뢰의 상실, 성인기에 개인적이거나 친밀한 관계형성 불가능, 자해, 자살 등 심리적 영향 역시 심각할 수 있다.

범죄의 중요성의 또 하나의 변수인 '성범죄에 있어 범죄자의 형사책임'은 범죄자가 위해를 야기하려고 의도한 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더욱 심각한 위해의 의도가 컸을수록 범죄자의 형사책임은 커진다. 성범죄는 특히 범죄자의 성적 만족을 요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지만, 성범죄 역시 행위가 모든 면에서 합의되지 않고 강압적인 경우 그리고 기회주의적이거나 충동적인 것보다 범죄를 계획하는 경우가 형사책임은 더 커진다.

이밖에도 동 지침서는 양형에 관련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더 높은 형량을 암시하는 요소들로 다른 범죄에 의한 보석 중 저지른 범죄, 과거의 선고에 응하지 않았을 때, 범죄가 피해자의 장애(또는 추정되는 장애)에 의한 적개심으로 유발되었거나 적개심을 표현할 때, 특히 반복된 범죄의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의 과거 유죄판결, 범죄의 계획, 가석방 중 저지른 범죄, 신뢰의 지위의 악용 등을 제시하였고, 통상적인 것 이상의 심각한 위해요소로는 다수의 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영향, 특히 취약한 피해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상당히 낮은 형량을 암시하는 요소에는 보통 기대되는 것보다 더 심한 정도의 도발, 정신병이나 장애, 개별 피고인의 연령, 범죄자의 범죄관련한 중요하지 않은 역할만을 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동 지침서는 유죄선고에 부가되는 다양한 명령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에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성범죄자 등록부에 범죄자의 성명 등재는 유죄판결 이후 자동으로 수반되거나 성범죄 경고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상대 범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아동과 함께 일할 자격을 박탈하는 자격박탈명령(disqualification)은 그 범죄자가 아동상대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만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부과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함께 처분할 수 있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이나 외출금지명령에 관한 규정이나 재정적 명령 시 추가될 수 있는 사유재산 몰수명령, 박탈명령 등의 부가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지침서는 이상의 일반원칙을 근거로 하여 성범죄의 구체적 유형을 나누어 강간과 성기삽입에 의한 폭행, 성추행, 성적 행위를 야기하거나 선동하는 것, 기타 동의에 의하지 않은 범죄를 포함하는 '합의에 의하지 않은 범죄(Non-Consensual Offences)', 아동과 관련된 범죄, 심신미약 성인 대상의 범죄를 포함하는 '유효하지 않은 동의를 수반하는 범죄(Offences Involving Ostensible Consent)', 그루밍, 의도적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 등을 포함하는 '준비범죄(Preparatory Offences)', 금지된 성인과의 성적 관계 등을 포함하는 '기타 범죄(Other Offences)', 아동의 음란한 사진 등을 포함하는 '착취범죄(Exploitation Offences)', '미성년 범죄자의 양형(Sentencing Young Offenders)'이 그것이다.

이 지침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이나 양형범위, 추가적 가중요소나 감경요소의 제시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형사사법법(CJA) 2003」 224절의 목적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추행(Assault by penetration)의 경우 합의에 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을 요건으로 하며 법정 최고형은 10년이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고의적인 성적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 법정 최고형은 14년이다. 성추행의 경우 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양형기준과 양형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를 함께 정하고 있다. 즉, 범죄구성요건이 범죄자의 노출된 성기와 피해자의 노출된 성기, 안면 혹은 구강과의 접촉의 경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 양형기준은 5년 구금에서 시작하고, 양형범위는 4-8년 구금이며,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년 구금에서 시작하고, 양형범위는 2-5년 구금으로 되어 있다.

〈표 Ⅱ-9〉 영국 성범죄법에 의한 양형기준 지침서의 내용일부

행위의 종류/본질	양형기준	양형범위
범죄자의 노출된 성기와 피해자의 노출된 성기, 안면 혹은 구강과의 접촉	5년 구금-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4-8년 구금
	3년 구금-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2-5년 구금
범죄자의 노출된 성기와 피해자의 신체의 다른 부분과의 접촉 범죄자의 신체가 아닌 신체의 일부나 물건과 피해자의 성기의 접촉 범죄자의 의복으로 가려진 성기와 피해자의 노출된 성기와의 접촉 또는 범죄자의 노출된 성기와 피해자의 의복으로 가려진 성기간의 접촉	2년 구금-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12개월 구금-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1-4년 구금 26주-2년 구금
(성기를 제외한) 범죄자의 신체와 (성기를 제외한) 피해자의 신체간의 접촉	26주 구금-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4주-18개월 구금
	사회봉사명령-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적절한 비구금형*

추가적 가중요소	추가적 감경요소
1. 범죄자가 사정했거나 피해자의 사정을 야기시킨 경우 2. 위협이나 강제의 범죄전력 3. 마약, 알콜이나 기타 약물을 사용하여 범죄를 촉진하려 한 경우 4.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것 5. 유괴나 불법감금 6. 범죄자가 자신이 성적으로 전염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 7. 신체적 위해가 야기된 경우 8. 오래 끄는 행위나 접촉	피해자가 16세 이상인 경우 범죄 바로 직전에 피해자가 같은 사건에 대하여 범죄자와 합의한 성적 행위에 참여했을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2인의 아동간의(2인 중 1인이 범죄자인 경우) 성적 행위가 상호적으로 동의되고 실험적인 경우 ・(미성년 범죄자의) 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는 합당한 믿음 범죄자의 미성년이거나 미성숙함 최소한이거나 아주 짧은 접촉

* '비구금형'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벌금을 의미함.

추가적 가중요소로 범죄자의 사정이나 피해자의 사정을 야기시킨 경우나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거나 불법감금, 유괴 등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중요한 불법요소를 포함한 가중될 요소를 정하고 있다. 반대로 감경요소의 경우는 당해 이전에 성적 관계가 있었거나 상호적으로 동의되고 실험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영국의 양형지침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양형기준과 양형범위를 정하고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목록화함으로써 실제 양형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여 양형을 표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의 양형기준은 아동연령을 13세를 기준으로 함에 반해 추가적 감경요소를 정하는 연령기준은 16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상호 동의하거나 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는 합당한 믿음을 주거나 또는 범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미성숙한 경우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해석될 것이다.

나. 유전자정보 등록제도

최근 현대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동일인 식별에 획기적으로 이용되는 유전자 감식이 성폭력사건을 비롯한 주요 범죄사건의 해결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전제하에 범죄자들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죄사건을 해결하려는 외국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도 유전자정보은행의 신설에 관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고,[12] 이에 관한 법률안도 제출된 적이 있다.[13]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

12) 이승환(2002), “여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전자정보은행 신설 제안”,「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pp.55-72에서 유전자정보은행 신설을 제안하는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에 관한 3명의 토론자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였다.

13) 2006년 8월 1일 정부가 발의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2008-05-29).

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의 각 주법은 유전자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관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미국의 관련 입법동향 개요

미국은 1987년 플로리다주에서 강도강간범 Tommie Lee Andrews가 범죄현장에 남겨진 정액과의 유전자 비교분석을 통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후 유전자정보은행을 만드는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FBI연구소 및 주·지방의 연구소에서 유전자 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자집단(TWGDAM : The Technical Working Group on DNA Analysis Methods)을 구성하여, 유전자 분석기법의 미국 내 표준화업무를 논의하였으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증 및 분석지침 등 유전자분석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가 유전자 자료은행(National DNA Database)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1988년 버지니아주를 필두로 1998년까지 모든 주에서 DNA Act(the DNA Identification Act)를 입법화하였으며, 2008년 현재 50개 주가 상이한 형태의 독자적인 DNA데이타베이스를 운용하고 있다.

1994년 연방 DNA Identification Act가 제정되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1998년 지방과 주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NDIS(the National DNA Index System)를 설립하였다.[14]

14)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2008), “DNA DB 구축의 필요성” 중 ‘영국과 미국의 입법례’ 참조.

나) 미국 연방 · 주별 입법현황

(1)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에 관한 근거법령

미국에는 1994년에 DNA샘플 채취권한과 범죄자 DNA형 데이터베이스를 정한 연방법인 1994년 DNA감정법(DNA dentification Act of 1994)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연방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DNA형 감정 및 DNA형 데이터베이스의 근거법령이 되었다.

또한 동법에 의해 유전학, 범죄과학전문가, 재판관 등으로 구성된 DNA 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독자적으로 연방차원에서 DNA형 감정의 품질보증의 기준이 작성되었다.[15]

(2) DNA형 데이터베이스 대상자 및 대상범죄

2000년 법 제정의 DNA 분석 미처리 삭감법에서는 DNA형 데이터베이스 등록대상자로서 특정연방법위반자, 콜롬비아 특별구 지정범죄자, 그리고 특정 군사위반자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또한 2001년 9월 11일의 동시다발 테러사건 후에 성립한 애국자법에 의해 테러행위에 관련된 다수 연방법위반이 범죄자DNA형 데이터베이스 등록범죄에 추가되었다.

(3) 각 주별 입법내용

미국 50개주는 모두 성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의 DNA샘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중범죄자(all felons) 또는 흉악한 중범죄자(serious felony offenders)들로 이러한 정책 적용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16]

11개의 주는 DNA샘플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범죄유형에 관해 열거하고 있다. 일부 주는 성범죄자 등록부상에 등록하도록 된 경범죄자에게 DNA샘

15) 日本辯護士連合會(2007), 警察廳 DNA型データベース・システムに關する意見書, p.23.

16) State Laws on DNA Data Banks, Qualifying Offenses, Others Who Must Provide Sample July 2008 : http://www.ncsl.org/programs/cj/dnadatabanks.htm

플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주는 특정 성범죄 또는 아동대상범죄(child victim offenses)를 저지른 이들에게 DNA샘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개주(알래스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캔사스, 루이지애나, 미네소타,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는 체포된 이들의 샘플채취를 인정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텍사스 법은 특정 성범죄자의 기소 후 샘플채취를 인정하고 있다. 미네소타는 여러 개의 흉악 중범죄 가운데 하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after probable cause determination) 샘플채취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2005년에 통과시켰다.

테네시 주는 또한 폭력적 중범죄로 체포된 이들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DNA를 채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felony sex offense), 살인(murder),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또는 이러한 범죄의 미수로 고소, 고발되거나 체포된 성인들을 대상으로 DNA샘플을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주 제안 제69호(Proposition 69)를 2004년 11월 2일에 승인했다. 2009년부터는 모든 중범죄로 체포된 이들의 샘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같은 법안은 유죄선고를 받은 모든 중범죄자들의 DNA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2006년 캔사스주는 중범죄 또는 마약사범 형량 가이드라인 그리드1,2 단계 범죄로 체포된 이들은 DNA샘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2008년 중반에는 모든 중범죄로 체포된 이들에게 확대적용 할 것이다. 뉴멕시코는 2006년 특정 폭력적 중범죄로 체포된 이들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다.

모든 주의 DNA데이터베이스는 주, 연방간의 정보공유를 위해 FBI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 DNA지표시스템으로 연결된다.

범죄유형에 따른 DNA샘플 채취, 보존에 관한 미국 각 주법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중범죄, 일부 청소년범죄, 일부경범죄자, 일부체포범, 정신질환이 인정되는 경우로 나누어 DNA샘플제공 여부가 정해진다(부록2 참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50개주 모두가 예외없이 DNA샘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부록3 참조) 성폭력범죄사건 해결에 유전자정보은행

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 제도운영 현황

(1) DB시스템-CODIS

미국의 범죄자DNA형 DB인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는 연방과 주라는 법의 이중구조를 갖는 국내의 DNA 프로필을 각 주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채택되었다. CODIS는「지방 DNA 인덱스 시스템(LDIS),「주 DNA 인덱스 시스템(SDIS)」,「전미 DNA 인덱스 시스템(NDIS)」로 구성되어 있다. NDIS는 1998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이 개시되어 2005년 7월 현재 미시시피주를 제외한 전체 주의 연구소 및 미군, 연방수사국 및 Puerto Rico(서인도제도)의 연구소가 참가하고 있다. 2005년 9월 현재 NDIS의 법과학 인덱스에는 119,782건의 DNA프로필이, 범죄자 인덱스에는 2,643,409건의 DNA 프로필이 보관되어 있다.

(2)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DNA 분석 미처리 삭감법에서는 벌칙규정으로, 허가없는 자가 DNA 정보를 손에 넣거나 허가없는 자에게 DNA 정보 공개 등을 하면 10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타 프라이버시 보호규정으로 ① 수사목적, ② 재판목적, ③ 형사방어목적, ④ DB구축・프로토콜 작성・품질보증 목적 이외의 DNA 분석은 할 수 없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중대 사건의 무고증명과 유죄 후 DNA 검사

미국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유죄자를 위해 DNA 형 DB를 이용하는 유죄 후 DNA 검사라 불리는 제도가 있다. 전미사법연구소에 설치된「DNA증거의 미래에 관한 전미위원회」의「유죄후의 문제에 관한 회의」에서 1999년에「유죄 후 DNA 검사 : 요청 취급에 관한 권고」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유죄 후 DNA 검사를 인정하는 주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여 현재

는 30개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수형자가 DNA 검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 결과 2002년 1월에는 DNA 감정의 도입에 의해 무죄 판명되어 석방된 수형자가 미 전역에서 100명을 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⑷ 각주의 DNA형 DB 대상자와 대상 범죄

1988년 콜로라도주는 가석방 전에 성범죄자로 부터 생체샘플을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성범죄를 중심으로 유죄자의 DNA형 데이터베이스 창설을 인정하는 주법이 제정되기 시작되었다. 1998년에는 전체 주에서 DNA형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주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DNA형 데이터베이스의 등록대상이 되는 범죄는 각 주마다 다양하였다. 이 시점에는 모든 주가 성범죄를 대상범죄로 하고 있는 한편 살인죄라도 인정하지 않는 주가 있거나 어떠한 경범죄라도 인정하는 주가 있는 등 전미 공통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범위는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 2003년 7월 시점에는 성범죄와 살인은 50개주에서, 폭행・상해사건은 47개주, 불법목적 침입은 44개주에서 수집대상이 되어 있다. 그 뒤 2004년 1월 시점에서는 35개주에서 모든 중범죄로부터 DNA 샘플을 수집하고 있고, 거의 같은 수의 주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년으로부터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⑸ 2004, 2005년 연방법 개정

2004년에는 ‘만인을 위한 사법절차법’이 2005년에는 ‘ DNA 지문법’이 개정되었다.

2004년 ‘만인을 위한 사법절차법’에 의하면, 연방수사국(FBI) 장관은 각주가 갖고 있는 기소된 자 기타 적법하게 DNA 샘플이 채취된 자의 DNA 프로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기소되지 않은 피체포자 및 일정한 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임의로 제출된 DNA샘플의 DNA 프로필에 관하여는 NDIS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005년 DNA 지문법에 의하면, 연방에서도 피체포자 및 합중국의 권한 하에 구금되어 있는 자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하고 DNA 프로필을 CODIS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 피체포자에 관한 사건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 내지 기한 내에 공소가 제기되지 못했다는 재판소의 재판소 등본을 사법장관이 수령한 경우는 FBI 장관은 당해자의 DNA 프로필을 신속하게 소각하여야 한다.

2) 영국[17)]

가) DNA형 DB 대상자 및 대상범죄

1984년 경찰・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은 영국의 최초의 종합적 형사절차법전이다. 동법에서 신체로부터의 내부와 내부 이외의 샘플채취 절차를 규정하였다. 그 뒤 DNA형 판정의 진보 등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고 내부 샘플채취 대상자의 범위가 구금형에 처해지는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다. 또한 내부 이외의 샘플을 채취하는 경찰권한도 개정되어 「범죄력 등록범죄」에 관한 판결이 나온 자로부터는 법정 동의 없이 내부 이외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샘플채취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신속한 수사 등을 위해 강제처분으로서 인정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1996년 형사소송법・범죄수사법(Criminal Procedures and Investigation Act 1996), 1997년 형사증거법(Criminal Evidence Act 1997),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1), 2003년 형사사법법(CJA 2003)에 의한 필요한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범죄등록범죄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 전원으로부터 샘플을 채취하고 DB에 등록하는 등 DNA형 DB 운영에서의 샘플채취 등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고 있다.

17) 日本辯護士連合會(2007), pp.22-23.

나) DB구축 · 운용 및 샘플 보존 · 삭제에 관한 근거법

1995년부터 범죄자 DNA형 DB라 불리는 대규모 범죄자 DB의 운용이 개시되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1994년의 형사소송 · 공공질서에 의한 PACE법의 개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DB화된 자료는 처음에는 유죄확정자라든가 미해결사건에 관한 현장자료로 한정되었지만, 2004년 4월 이후 등록가능범죄에 의해 체포된 자로부터 그 동의 없이 DNA 프로필, 지문, 기타 정보를 채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채취된 지문 및 신체샘플 파기조건은 1984년에는 채취당한 자에 대한 의심이 해소된 경우 등 특정 목적이 없어진 지문이나 신체 샘플은 가능한 한 빨리 파기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1994년 법개정에 의해 파기요건에 예외를 설정하고, 파기가 필요로 되는 샘플이라도 유죄판결을 받은 위법행위의 사례조사의 목적을 위해 샘플보존을 인정하였다. 그 뒤 2001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파기되지 않고 피체포자가 그 뒤 석방되어도 무죄가 되어도 얻어진 정보는 무기한으로 보존가능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법적 틀의 변경을 거쳐 영국의 DNA형 DB의 등록 자료 수는 2005년 3월 공표자료에 의하면 약 290만명의 DNA 프로필, 약 237,500건분의 범죄현장 DNA 프로필이고 1개월에 DB에 등록된 샘플은 피의자로부터 평균 4만건, 범죄현장에서 약 4,000건으로 되어 있다.

3) 캐나다[18]

가) DNA형 DB 대상자 및 대상범죄

1995년 7월 형법이 개정되어 “주법원이 특정범죄수사에 범죄 DNA분석의 목적으로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생체샘플(모발, 혈액, 구강내 조직)을 채취하는 것을 인정하는 위임장을 발포할 수 있다.(형법 §487.05)”고 되었다. 지정범죄는 살인, 성적 폭행, 강도, 유괴, 납치 등으로 개정형법 속에 규정되었다.

---

18) 日本辯護士連合會(2007), pp.25-26.

나) DB 구축 · 운용 및 보전 · 삭제에 관한 근거법령

캐나다의 국가규모의 DNA DB(NDDB, 또한 미국의 CODIS와 제휴되어 있다)는 미국과 비교해서 보다 인권문제에 배려하고 DNA 감정의 활용범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데이터 관리・샘플 보관에 관하여는 일정 기간 후에는 처분・파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4년 5년 시점에서 범죄자 DNA형 DB(유죄자 인덱스) 등록은 58,529건, 범죄현장 DNA형 DB(범죄현장 인덱스) 등록은 14,629건이다.

(1) DNA 감정법의 성립과 지정범죄

1998년 12월 DNA 감정법이 성립하고, 이것에 의해 국가규모의 DNA DB(NDDB)의 창설이 인정되고, 2000년 6월 30일에 시행되었다. NDDB에는 유죄자 인덱스와 범죄현장 인덱스가 있다. 유죄자 인덱스에는 캐나다 형법 §408.04에 제시된 제1차 지정범죄와 제2차 지정범죄의 유죄자 DNA 프로필이 등록된다.

(2) DNA 감정법의 내용—샘플 보존・삭제조건

신중한 심사 결과 1998년에 성립한 DNA 감정법은 프라이버스 문제에 배려하고 있다. 동법에는 완전 석방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가석방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유죄자 인덱스에 등록되어 있는 DNA 프로필에 대한 접근이 삭제되고, DNA 샘플이 폐기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NDDB의 대상이 되는 유죄자에는 청소년(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도 포함되지만, 등록의 보관과 파기에 관하여는 청소년범죄자법을 적용한다. 청소년의 살인사건의 경우 DNA 프로필에 대한 접근 삭제와 DNA 샘플 폐기에는 DNA 감정법 §9조가 적용되고, 석방부터 1년 후, 가석방으로부터 3년 후에 이루어진다. 살인 이외의 지정범죄의 유죄자에 관한 정보는 5년을 기한으로 하고, 기한 후는 신속하게 파기된다.

(3) DNA DB에 관한 외부평가기관의 설치

캐나다의 DNA DB에는 DNA DB 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라 2000년 5월에 독립 외부평가기관인 NDDB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NDDB의 샘플 처리나 분석방법이라는 과학적 방법의 문제, 법적·윤리면에서의 NDDB의 운용에 관한 여러 문제 등 다양한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고 권고를 하고 있다.

4) 독일[19)]

가) DNA형 DB 대상자 및 대상범죄

(1) 피의자로부터 채취한 체세포 등의 DNA형 감정

독일에서는 종래부터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채취가 인정되어 있고,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DNA형 감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지만, 1997년 3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DNA 분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혈연관계나 발견된 흔적물질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유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법관의 명령에 의하여만 할 수 있게 되었다.

(2) DNA 감정의 활용 확대

2005년 8월 17일「사법절차에서의 DNA형 판정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법률」이 공포되고, DNA형 감정에 관한 법률이 형사소송법과 하나가 되어 그 활용·확대가 도모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범죄현장 등에서 채취된 자료의 DNA형 판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명령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나 경찰의 명령으로도 감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피의자로부터 채취한 체세포 등의 DNA형 감정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법관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지만, 지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19) 日本辯護士連合會(2007), pp.26-27.

나 경찰의 명령으로 감정할 수 있다고 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법관의 명령은 불필요하게 하였다.

③ 범죄수사를 위해 특정지역의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정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실시하는 대규모조사(DNA형 일제조사)에 관하여는 엄격한 요건을 정하였다.

④ 중대한 범죄나 성범죄를 한 자에게 장래 다시 그 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관의 명령에 의해 체세포의 채취나 DNA형 감정이 인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에 의해 누범자에 관하여는 전체로서 불법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2)와 동일한 요건에 의해 체세포의 채취, DNA형 감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 DB 구축 · 운용 및 샘플 보존 · 삭제에 관한 근거법령

(1) DNA 동일성확정법의 제정(1998년 9월)

이 법률에 의해 일정 범죄의 피의자에 관하여는 “장래 그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에 기초하여 새로운 형사절차가 행해질거라 상정하는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래의 형사절차에서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하여” 체세포를 채취하여 DNA형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명기되었다.

(2) 형사소송법 제81g조의 개정에 의한 DNA 감정 DB구축의 근거법령

2005년 DNA 동일성확정법이 효력을 잃고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81g조제5항에 감정 자료의 관리, 사용, 피의자・피고인의 DNA 형 감정을 한 자료를 구축하는 경우의 고지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DB의 등록・삭제

독일에서는 성인에게는 10년, 미성년에는 5년이 경과한 후 본인정보를 수정할지 삭제할지를 심사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독일에서 2005년 3월까지에 축적된 DNA형 자료는 402,000건, DNA

형 감정을 이용하여 해명된 범죄는 2004년만 보아도 살인 371건, 성범죄 870건이다.

5) 네덜란드[20]

네덜란드에서는 1993년에 형사사건에서의 DNA 감정에 관한 규정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추가법이 성립하고, 1994년에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에 배려한 것으로 재감정의 청구권이나 감정에 대한 입회권 등이 인정되어 있고, 재감정 불능 미량정보에 관하여는 감정인 지정권도 인정되어 있다. 한편 일정 범죄의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예심판사가 자료의 강제채취를 명령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DNA 감정에서 얻어진 자료는 사법성 과학연구소의 중앙등록부에 등록된다. 보관조건으로서는 무죄가 판명되면 파기되고, 현장자료는 18년 뒤, 피의자・피고인 자료는 30년 뒤에 파기된다.

등록수는 2000년 봄에 범죄자 DNA형 DB는 약 600건에 그치고, 현장자료 DNA형 DB도 약 2200건으로 적다.

6) 스위스[21]

스위스에서는 2000년에「DNA 감정법」이 성립하고 피의자나 관계자, 행방불명자의 자료채취 외, 수사 틀에서 대량검사도 인정하고 있다. DB로서 DNA감정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범인으로 의심되는 자, 형집행중인 자, 증거, 행방불명자, 국제협력을 위해 송부된 자료도 추가된다. 이 시스템에 추가된 정보는 무죄로 된 경우 외 시효가 없는 형사범에게는 30년 뒤, 행방불명자에게는 본인의 동정 뒤 50년 후에 파기된다.

---

20) 日本辯護士連合會(2007), p.27.
21) 日本辯護士連合會(2007), pp.27-28.

다. 기타 아동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제도

1) 미국의 성폭력범죄자 거주제한 관련 법

미국의 여러 주법에서는 성폭력범죄자가 아동관련 시설로부터 거주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하나로 2007년 테네시 주법(Tenn. Code Ann. 40-39-211)에 의하면,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아동과 관련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0-39-211. 거주와 직업의 제한' 규정에서는 성범죄자 또는 폭력적 성범죄자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립, 사립, 교구설립학교, 인가받은 일일 보육센터, 이외 아동 보육시설, 공원, 놀이터, 레크레이션 센터 또는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공공 육상시설부터 1,000피트 이내에 의도적으로 주, 부주거지 또는 다른 형태의 거주시설을 설정하거나, 1,000피트 이내의 시설에서 의도적으로 성범죄자 치료를 받거나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1,000피트 이내에 위치한 시설의 의도적으로 입사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b) 40-39-202에 정의된 자로 성범죄자 또는 40-39-202에 정의된 폭력적 성범죄자는 이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가족의 거주지역에서 1000피트 이내에 거주해서는 안 되며, 이전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100피트 이내 접근할 수 없다. 법에 의해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또한 알칸사스주법(Sex Offender Registration Act of 1997 /Arkansas Code Annotated §12-12-901 -- 12-12-920)에서는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 관련 조항(s. 794.011, s. 800.04, s. 827.071, or s. 847.0145) 위반으로 유죄선고 받은 자가 학교, 일일 보육시설, 공원 또는 놀이터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거주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2]

---

22) s. 794.011 sexual battery
s. 800.04 lewd or lascivious offenses committed upon or in the presence of persons less than 16years old
s. 827.071 sexual performance by a child
s. 847.0145 selling or buying of minors

이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이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조항(s. 794.011, s. 800.04, s. 827.071, or s. 847.0145)의 1급 중죄 또는 더 가중한 중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3급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경우, 그리고 2급 또는 3급 중죄로서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1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경우 관련 조항(s. 775.082 or s. 775.083)에 의해 처벌 가능하다.[23]

일리노이주법에서는 성범죄자가 Section 11 9.3 or 11 9.4 of the Criminal Code of 1961에 정의된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아동성범죄에 관한 일리노이즈 주법에 따라 학교, 공원 또는 놀이터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명해야 하며, 성범죄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500피트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24]

아이오와주법에서는 성범죄자 거주제한(Sex offender residency restriction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아동범죄자는 성 맹수(sexually violent predator)이거나 (A) 아동성희롱, (B) 아동착취, (C) 아동교사, (D) child seduction, (E) 유괴,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이 아닌 경우로서 이 범죄 중 하나 또는 이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말한다.

아동범죄자는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학교지역, 청소년센터, 공공 공원의 1000피트 이내에 체류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역 1마일 내에 주거를 정한 경우 D등급에 해당하는 성범죄자 거주위반이다. 여기서 “체류하다”는 주거지 또는 주거지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장소에서 3박 이상 또는 30일 동안 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25]

또한 거주제한 규정(692A.2A Residency restrictions – child care facilities

---

23) http://offender.fdle.state.fl.us/offender/FloridaLaws.jsp(플로리다)

24) http://www.ilga.gov/legislation/ilcs/ilcs3.asp?ActID=2009&ChapAct=730%26nbsp%3BILCS%26nbsp%3B150%2F&ChapterID=55&ChapterName=CORRECTIONS&ActName=Sex+Offender+Registration+Act%2E

25) http://www.insor.org/insasoweb/general/zacharysLaw.jsp, http://www.ai.org/legislative/ic/code/title35/ar42/ch4.html#IC35-4

and schools)에 의하면, 미성년에 대한 형사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가중된 범죄, 성폭력범죄, 또는 미성년이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또는 아동 보호 시설이 포함된 실제지역으로 부터 2000피트 이내 거주할 수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가중된 경범죄에 해당한다.[26]

다만, 공립 또는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아동 보호 시설이 포함된 실제지역으로 부터 2000피트 이내 거주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 위반이 아니다. 즉, a. 구치소, 감옥, 소년원시설 또는 교정시설에서 복역을 명받은 자, b. chapter 229A에 의해 이행명령을 받은 자, c.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주거를 정하거나, 학교 또는 아동보호시설이 2002년 7월 1일 이후 새로 설립된 경우, d. 가해자가 미성년이거나 또는 후견인의 보호아래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오클라호마주법에 의하면, 안전지역은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회복지국의 인가받은 아동보호센터, 놀이터, 공원 주변지역을 의미한다. Sex Offenders Registration Act에 의해 등록하도록 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다른 관할지역에서 오클라호마주법의 Section 582 of Title 57에 열거된 범죄로 처벌받은 행위로(기수나 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인가받은 아동보호시설, 놀이터 또는 공원 지역의 300피트 이내를 배회(loitering)하는 것이 금지된다.

2) 일본의 아동 성폭력 재범방지 관련제도

일본에서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재범방지와 관련된 경찰청의 관련 통지(경찰청 통달)가 시행되고 있다.[27] 특히 성범죄자가 출소하는 경우 법무성으로

---

26) http://www.iowasexoffender.com/pages.php?node=02/02/25/4542571http://www.ojp.usdoj.gov/programs/victimservices.htm

27) 이 내용은 청소년위원회(2005),「청소년성보호를 위한 성범죄 재범방지 해외정책 사례집」, pp.112-120에 소개된 내용이며, 일본 경찰청 사이트 조사결과 현재도 이 통지(통달)들은 유효한 것(2005년 5월 19일자 조치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확인되어 수록하게 되었음.

부터 협조를 받아 출소정보를 제공받고 피해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제도는 우리에게도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일본 경찰청은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통지들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제도로는 '2005.5.19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의 출소자에 의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의 실시에 대해서'(이하 '성범죄 출소자 조치'라 함)와 '2005.5.19 아동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 추진 요령의 제정에 대해서'(이하 '아동범죄 대책추진요령'라 함)가 있다(부록4 참조).

'성범죄 출소자 조치'에 의하면, 경찰청이 나라현(奈良縣)의 여자아동 유괴·살인 등 사건의 피의자 검거를 위해, 2005년 1월부터, 성범죄 전력자의 출소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법무성과의 사이에서 협의를 하였고, 2005년 6월 1일에는 아동의 심신에 중대한 피해를 주며,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 도도부현 경찰이 이 조치에 근거하여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 출소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조치의 목적은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이후 출소하는 경우 출소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이 출소 후에 다시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 기타의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데 있다.

이어서 재범방지조치 대상자는 13세 미만의 아동대상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 및 미수, 치사상죄, 강도강간, 치사, 미수 및 상습 강도강간, 영리목적의 약취 및 유괴 중 성추행 목적의 죄 등을 행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 중에서 재범방지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경찰청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경찰청은 교도소 수용자 중 출소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재범방지조치

---

http://www.npa.go.jp/pdc/notification/index.htm.

대상자로 등록하게 되며, 출소 후 귀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본부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재범방지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본부의 재범방지조치 담당과장과 재범방지실시 경찰서장 및 재범방지담당관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재범방지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한 예로 경찰서장은 재범방지조치대상자가 귀주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계속해서 귀주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아동에 대한 스토킹, 말걸기 기타 범죄의 전조로 보여지는 사안에 대한 정보의 폭넓은 수집과 이 정보를 활용한 아동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와 함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와 관련해서, 대상자들에 대해 갱생을 배려하거나 관련 정보비밀엄수 등의 유의사항을 두고 있다.

또 하나 '2005.5.19 아동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 추진 요령의 제정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성범죄출소자 출소정보 제공 관련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경찰 활동의 적극적 전개를 통하여 각종 정보의 파악과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신 모두 발달 도상에 있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아동을 그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 사회나 시정촌 등이 연계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자원봉사자나 학교, 시정촌 등에 의한 자주적인 방범활동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주변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범죄 등의 발생 상황이나 범죄 유형별의 피해 방지 방법 등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하 '지역 안전 정보'라고 한다)가 제공되는 것이 기초가 된다.

따라서 도도부현 경찰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불심자에 관한 정보의 파악 강화에 힘쓰는 한편 지역 안전 정보가 확실하게 지역 주민 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제공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불심자 등에 관한 정보파악의 강화를 위해 모든 경찰활동을 통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발생이나 불심자에 관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파악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료화하여 각 부

문간에서의 공유화를 도모할 것, 지역에서의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사안의 전반적인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 성범죄, 유괴, 아동에 대한 말걸기 사안, 불심자의 출몰 등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사안의 발생 장소, 시간대, 수법 등에 관한 정보,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사안의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장소에 관한 정보에 대해 폭넓은 수집노력함과 함께 수집한 정보는 경찰 본부의 범죄억제대책주관부국에서 일원적으로 집약, 분석을 실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2005년 6월 1일부터 법무성으로부터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의 출소자에 관계되는 출소 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이 출소한 후에 다시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도도부현 경찰은 당해 통지에 따라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의 출소자에 관계되는 정보의 파악에 노력함과 함께 그 정확한 활용과 적절한 관리에 특히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동 성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재범방지대책에 관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아동 성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범방지를 위한 몇 가지의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법원 양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고형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가 법정형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고형은 매우 낮은 형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형사절차상 양형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법정형과 선고형은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성인 간 성폭력의 경우와는 다르게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고, 성폭력의 의미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은 매우 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정상참작의 이유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지원한 아동 성폭력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우 광범위하게 감경사유가 인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음주상태에서의 범행이나 범죄자와 피해자 간 합의사실이 양형에 반영된다든지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서 더 이상 추가 범행할 가능성이 없다든지, 나이 든 가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당뇨나 그 밖의 신체 질병 및 정신과 치료(우울증) 병력이 감경사유로 함께 고려된 것,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사유들이 감경사유로 인정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의학적 전문가 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분히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양형사유를 정하는 문제나 법원 재판부에 따라 비슷한 사안의 경우도 다르게 선고되는 형량들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예에서처럼 양형사유를 객관화하여 지침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 성폭력범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각 경우마다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명문화하여 선고형이 보다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범죄자에게 맞는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범죄유형이나 재범여부 등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처벌, 치료, 교육 중 어느 것이 필요한가를 판단하여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범방지의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도소 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병과될 필요가 있다. 집행유예만 선고되는 경우가 전체의 50%정도로 나타나는데 아무런 처우없이 집행유예기간만을 도과하면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인식개선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심각한 성폭력범죄의 잦은 발생으로 범죄자 처벌강화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일반예방이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단숨에 달성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충격적인 성폭력범죄의 발생으로 급히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조급성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처벌강화에 의해 성폭력범죄를 줄이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 이보다는 보다 심각한 범죄로 이행되기 전에 교육을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재범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재범방지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친고죄규정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원래의 취지가 희석된 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합의종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친고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이 팽배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친고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보호는 고소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사와 재판방식의 보안, 비밀누설금지와 보도금지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공소시효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공소시효제도가 필요한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공소시효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성폭력범죄는 다른 재산범죄나 상해범죄와 달라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일어난다는 특징을 갖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 성폭력의 경우 어렸을 때 경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성년이 되어 인식하게 되고 그 때 신고하고 사건화하고자 하면 이미 공

소시효가 완성되어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공소시효제도를 성폭력범죄의 경우만 없앤다는 것에 대해 법적 안정성이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에 관한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미성년의 경우를 포함시켜 성년이 된 이후에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법제화하여 사실상 공소시효를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중단시키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유전자정보 등록제도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유전자정보은행제도는 최근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성폭력범죄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를 찾아내는데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로 고안된 것이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죄발생시 범죄자를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된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검토된 의견 중 국가에서 개인의 정보를 관리함으로 인해 과도한 사적 정보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 등 우려되는 점들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동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시행해 본 경험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제도를 검토하여 이러한 우려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황에서 동 제도의 입법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성폭력범죄자 거주제한 관련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여러 주법에서는 성폭력범죄자가 아동관련 시설로부터 거주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테네시주법(Tenn. Code Ann. 40-39-211)에 의하면,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아동과 관련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지역으로는 공립, 사립, 교구설립학교, 인가받은 일일보육센터, 이외 아동보육시설, 공원, 놀이터, 레크레이션 센터 또는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공공 육상시설 등으로 이들 지역으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거주시설을 설정하거나, 1,000피트 이내의 시설에서 의도적으로 성범죄자 치료를 받거나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1,000피트 이내에 위치한 시설의 의도적으로 입사제안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특징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반복한다는 특성에 근거하여 범죄자들을 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아동관련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제한 규정의 도입도 잠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 출소 후 재범방지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이후 출소하는 경우 출소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이 출소 후에 다시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 기타의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일본의 경찰청 통지문이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소송 진행상황을 정식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범죄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 종종 처해진다.

따라서 범죄자가 교도소 복역 이후 출소했다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는 것을 비롯하여 경찰차원에서 범죄자를 관리한다면, 피해자 보호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III 아동성폭력 관련 아동보호

1. 형사절차상 피해 아동 보호 61
2. 성폭력 피해 아동 원스톱 지원 93
3.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 140

Ⅰ. 형사절차상 피해 아동 보호

최근 몇 년 동안 아동 성폭력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동이 수사과정 혹은 법정에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진술해야만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근대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피해자 입장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미하고, 그 결과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한낱 주변적인 지위에 서서 증거의 대상이 될 뿐이며, 재판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 사실이다(한인섭, 1994). 피해자의 이러한 주변적 위치는 바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한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주변적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에서 비롯되며, 두 번째로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장필화 등, 2003).

피해자가 성인이 아니라 아동인 경우, 특히 목격자나 신체적 징후가 거의 없는 아동 성폭력 사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심각해진다(Faller, 1993). 우선, 성폭력 피해자, 그 중에서도 아동은 피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된다. 즉, 피해와 관련된 자극들의 회피와 강한 공포증세를 드러내며, 심각한 불안과 우울, 섭식장애, 신체화장애, 배설장애, 품행장애 등을 경험한다(김태경 등, 2006; 안동현, 2005; 김정규, 김중술, 2000; Ruggiero, McLeer, & Dixon, 2000). 극단적인 경우 사건 관련 기억을 잊어버리는 심인성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아동과 그 가족이 함께 패닉상태에 빠져듦으로써 총체적 혼란을 겪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피해로 인한 이러한 후유증은 아동으로 하여금 피해에 대한 진술을 매우 힘들게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아예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더욱이 아동이 목격자나 피해자로써 법률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인을 위해 마련된 형사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현재의 형사사법 제도는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으며, 경찰관, 검사, 변호인, 법관 등

의 형사사법 종사자들 역시 아동을 다루는 데에 익숙지 못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아동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경험을 비롯한 형사절차를 두려운 것으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황만성, 2004; 정진수, 2000). 또한, 여러 사례들에서 아동은 위협적이거나 적어도 진술의 신빙성 추정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반복 조사를 받곤 한다. 또한, 복잡하고 긴 절차로 인해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증언이 지연되며, 이는 피해 아동과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을 장기화시킬 뿐 아니라 아동의 증언 능력도 함께 저하시킨다. 아동은 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남으로써 기억붕괴, 그릇된 정보, 성인의 암시나 유도, 사건과 조사 사이의 간섭 경험, 사회적 압력, 아동이 사건 경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이후에 새로이 습득한 지식 등과 같은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기억이 오염될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더 높다(예를 들어, Ceci & Bruck, 1993; Howe, Courage, & Bryant-Brown, 1993; Chi & Ceci, 1987; Loftus, Miller, & Burns, 1978). 이러한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아동을 수사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진실을 말하는 경우조차 아동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수년에 걸쳐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높아졌으며, 이를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다(예를 들어, 홍영오, 이수정, 2006; 황만성, 2004, 정진수, 2000).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며, 그 결과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개정 및 신설을 이끌었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 금지(제21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제21조의2),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제21조의3), 심리의 비공개(제22조), 전문가의 의견조회(제22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22조의3),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22조의4), 증거보전의 특례(제22조의6).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형사사법 절차의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조사 절차로 인해 아동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경우도 발견되고, 심지어 피해 아동이 피해가 있은 지 수년 후에 반복해서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절차제도들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시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들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보다 나은 대책들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가. 현행 제도

형사 절차 상 성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친권상실청구제도와 신고의무제도와 같이 형사절차 상의 제도는 아니지만,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중요 제도들도 논의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1)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0.27>

2) 제21조의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1조의3.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③ 제1항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0.27>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⑤ 수사기관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⑥ 누구든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0.27>

4)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제22조의2. 전문가의 의견조회

① 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6) 제22조의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제22조의4.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8) 제22조의6. 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청구와 그 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제21조의3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11, 2006.10.27>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운영 현황

1) 연구 방법

가) 성폭력 피해 아동 전담 지원기관의 사례 분석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보기 위하여, 아동 성폭력 전담 지원기관인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08년 7월 사이에 접수된 사례 중, 고소를 결정하여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례를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며, 2006년에 접수되었으나 형사절차가 2007년 이후에 진행된 사례도 일부 포함되었다. 고소를 결정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어떤 이유에서든 기관과의 접촉이 끊겨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와 보호자의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조사협조가 곤란한 경우 등은 표집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사례는 모두 54건이었다.

자료의 수집을 위해,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제도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기록지를 구성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법정지원팀에서 개발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2차 피해 공판절차 모니터링 체크리스트'(한국성폭력 상담소, 2003)를 참고하여,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피해의 유형,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성폭력 피해의 빈도, 수사관련 정보의 제공 정도, 합의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여부, 고소절차상의 어려움, 수사관 및 조사관의 아동에 대한 이해 정도 등) 및 경찰의 수사 과정, 검찰의 공판전 조사 과정 및 공판 과정으로 구분하여 관련자의 친절도와 적극성, 아동에 대한 이해의 정도,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규정,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영상물의 촬영·보존 규정,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증거보전 특례, 심리의 비공개, 전문가 의견조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 신문 등과 같은 제도의 준수 혹은 활용 정도를 묻는 질문들을 포함시켰다. 기록지 작성을 위해 해바라기 아동센

터의 모든 자료들에 대한 분석 및 보호자와의 전화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나) 사법기관의 현황 자료 분석

연구계획 시에는 경찰 및 검찰의 공판전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형사절차상의 보호제도들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해 사법 기관의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사법 기관별로 해당 자료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거나, 해당 자료가 있으나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형사절차상 피해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향후 관련 자료의 수집과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찰청에서 일부 자료를 공개하였으므로, 이 부분만을 정리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2004년 3월 12일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가 의무화됨으로써 경찰청과 경찰서 및 원스톱지원센터 등 총 270개의 진술녹화실이 마련되었다. 최근 몇 년 간의 진술녹화 실적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경찰청의 진술녹화 실적

(단위 : 건, %)

구 분	총 계			아동 성폭력			장애인성폭력		
	발생	녹화	녹화율(%)	발생	녹화	녹화율	발생	녹화	녹화율
2006	1,206	1,141	94.6	980	980	927	226	214	94.7
2007	1,748	1,571	89.9	1,554	1,554	89.8	194	176	90.7
2008.6	836	765	91.5	761	761	91.1	75	72	96

성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맞추어 전담 조사관 1,142명과 성폭력 전담 사법 경찰관 443명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전담 사법경찰관은 전담 조사관의 수사지휘·감독, 성폭력 사건의 책임 수사체제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전담 조사관을 위한 교육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 성

폭력「진술녹화 자격인증제」를 도입, 조사관의 진술녹화 실적(진술녹화 회수, 기소여부, 전문교육 이수 여부)을 점수로 환산, 1, 2, 3급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 인증자에 표창·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 전문성 제고·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다(2008년 7월 현재 자격인증 진술녹화관 총 26명). 진술녹화 운영지침 및 조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장애인 피해자, 여성 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신원노출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의 집·병원에서 신뢰관계자 동석 하에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진술녹화의 빈도, 조서의 사본 교부, 증거보전 등과 같은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적어도 진술 녹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그에 따른 변화들이 (적어도 양적으로는) 있어온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살펴볼 운용현황 자료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다) 관련 전문가 워크샵

제도들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및 법원 등 형사사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제언 제시에 참고하였다.

2) 분석결과

가) 아동 성폭력 피해 전담 지원센터의 자료 분석

(1) 피·가해자에 대한 기본정보

분석을 위해 사용된 사례는 모두 54건이었으며, 이 중 한 사례만 남아였다. 이 기관의 경우, 여아와 남아의 접수 비율이 9:1 가량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해바라기아동센터 2007년 사업보고서), 남아가 관여된 사건에 비해서 여아가 관여된 사건의 고소·고발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면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관계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남아의 경우 피해를 심히 수치스럽게 여겨 쟁점화를 꺼리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가벼이 여겨 고소를 원치 않는 등의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피해자의 연령분포는 <그림 Ⅲ-1>에 제시되어 있으며, 가해자의 연령분포도는 <그림 Ⅲ-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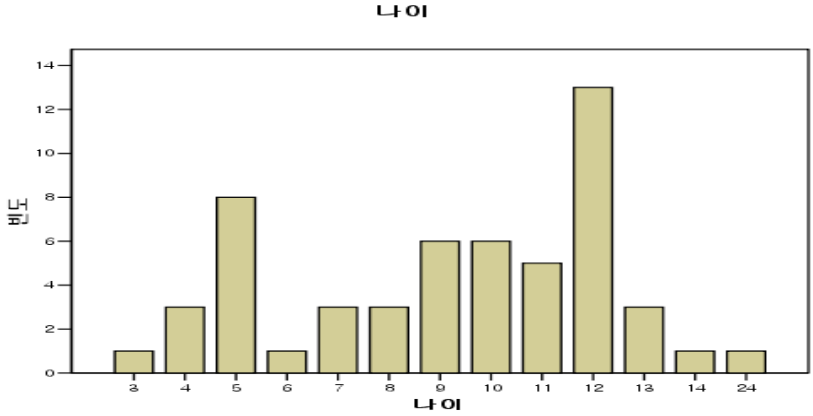

〈그림 Ⅲ-1〉 피해아동의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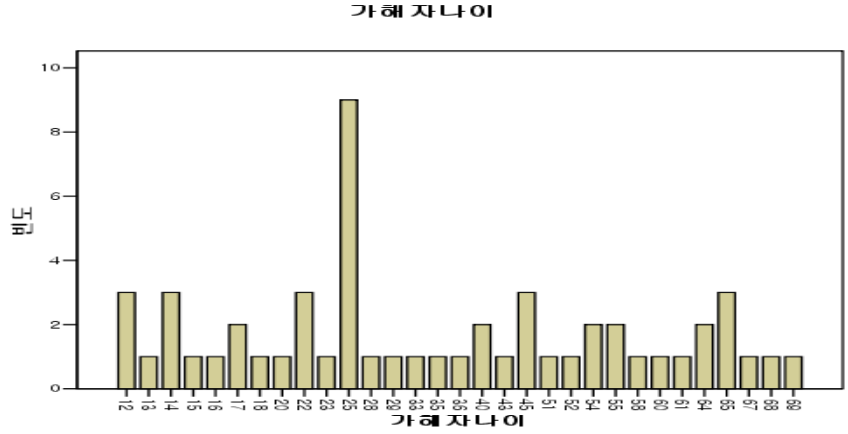

〈그림 Ⅲ-2〉 가해자의 연령 분포

피해 유형별로는 특수강간 3건(5.6%), 강간 16건(29.6%), 준강간 2(3.7%), 강제추행 25건(46.3%), 그리고 성추행 8건(14.8%)으로 나타났다. 1회의 피해를 당한 아동이 28명(51.9%)이었으며, 2회 이상 반복 피해를 당한 아동은 26명(48.2%)으로 나타났다. 13세 이상인 지적 장애인 두 명을 제외한 아동의 평균 연령은 9.13세(범위: 3-13세)였다. 학령 전 아동이 13명(24.1%)이었고, 7-9세가 12명(22.2%)이었으며, 10세 이상은 29명(53.7%)이었다. 13명의 아동이 12세로 최빈치를 나타내었다. 이중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모두 세 명이었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의 연령 분포가 피해 아동 전체의 연령 분포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10세 이상인 비교적 나이든 아동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 연령대에서 피해의 심각도가 가장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지목된)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36.88세(범위 : 12-69세)로 나타났다. 이중 미성년이 12명(22.2%), 20대 13명(20.1%), 30대 3명(5.6%), 40대 6명(11.1%), 50대 8명(14.8%), 그리고 60대 10명(18.5%)이었으며, 성인이기는 하나 연령대를 알 수 없는 사람이 3명(5.6%)이었다. (지목된) 가해자 중 12명(22.2%)은 친부나 친조부를 포함한 친인척이었고, 23명(42.3%)이 과외 교사나 통학버스기사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었으며,

19명(35.2%)은 낯선 사람이었다. 이들 중 30명(55.6%)이 유직이었으며, 14명(25.9%)이 무직이었고, 나머지 10명(18.5%)은 직업 유무가 파악되지 못하였다.

형사사법 절차별로 보면,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사례 11건(20.4%), 검찰의 공판 전 조사 단계에 있는 사례 4건(7.4%), 1심 재판 중이거나 1심 재판 후 종결된 사례 16건(29.6%), 2심 재판 중이거나 2심 재판 후 종결된 사례 14건(25.9%), 그리고 3심 재판 중이거나 3심 종결된 사례 6건(11.1%)이었다. 나머지 세 건 중 한 사례는 피해 아동이 13세로 친고죄가 성립되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소가 취하되었으며, 한 사례는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검찰 조사 후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파악할 수 없었고, 한 사례는 검찰의 공판 전 조사 단계에서 가해자가 자백 후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 이행하지 않고 조사도 받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하였는데 가해자가 촉법 소년이어서 현행법상 강제 연행이 불가능하여 불기소 결정되었다. 또 다른 한 사건에서는,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과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아동이 어느 날 어머니의 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폭로하여 아버지가 소를 제기하여 1심 재판이 열렸으나 공판 중에 갑작스럽게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친족이 아닌 아버지가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인 딸에게 용서를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있었으며, 공소기각 결정 후 자녀의 후유증 치료도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재판이 종료된 사례는 모두 19건(35.2%)으로, 9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한 건에서 치료명령만 내려졌고, 12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최고형량 : 무기징역). 한 사례에서 한 명의 아동이 수년에 걸쳐 각각 다른 장소에서 네 명의 다른 가해자로부터 반복 강간당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데, 두 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한 명에게는 실형을, 그리고 나머지 한명은 공판 중에 있다. 용의자가 검거되어 구속 수사를 받은 경우는 29건이었으며, 18건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2) 일반적인 분석 결과

(가) 수사 및 재판 소요시간

우선, 범인이 바로 검거되지 않고 일 년 이상 지연 후에 검거되어 수사가 재개된 사례가 두 건 있었는데, 이 사례는 소요시간의 분석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경찰에 고소 한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까지의 기간이 파악된 사례는 모두 28건이었으며, 소요된 시간은 평균 64.5일(범위= 9~226일)이었다.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공판 전 조사를 위해 소요된 시간이 파악된 사례는 모두 26건이었으며, 평균 소요일은 36.4일(표준편차= 29.40일; 범위= 6~123일)로 나타났다. 경찰 고소에서부터 첫 번째 재판이 열리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파악된 사례는 모두 34건으로, 소요시간은 평균 103.2일(표준편차 = 75.5; 범위= 22~248일)로 나타났다.

1심 공판에 소요된 시간이 파악된 사례는 모두 30건이었고, 평균 76.9일(표준편차= 65.5일; 범위= 13~263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고소가 제기되어 1심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모두 26건으로 평균 187일(표준편차= 122.2; 범위= 36~460일)로 나타났다. <그림 Ⅲ-3>은 이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의 히스토그램이다.

소요 시간이 짧은 경우는 모두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한 사례였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0일이라는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된 건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2심이 진행 중인 현재 아동이 법정 증언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학령 전 아동이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지 1년 반 이상이 지난 후에 증언대에 서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다른 한 사례에서는 피해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아동이 최초로 피해를 보호자에게 폭로하였으며, 그 후 1심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두 차례나 법정 증언을 해야만 하였다(이 사례는 1심에서 유죄선고가 내려졌으며, 보고서를 작성 중인 현재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유죄 판결을 받고, 피고측에서 상소한 상태임).

2심 재판이 종료된 사례는 모두 13건이었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61.7일(표준편차= 61.7일; 범위= 7~146일)로 나타났다(그림 Ⅲ-4). 3심을 거쳐 종료된

사례는 총 3건이었으며, 각각 379일, 431일, 그리고 441일이 소요되었다. 명백한 물리적 및 신체적 증거가 있거나 가해자가 자백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아동과 보호자는 지속적으로 강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만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한 아동의 어머니는 재판 전날만 되면 찾아오는 스트레스와 악몽 및 복통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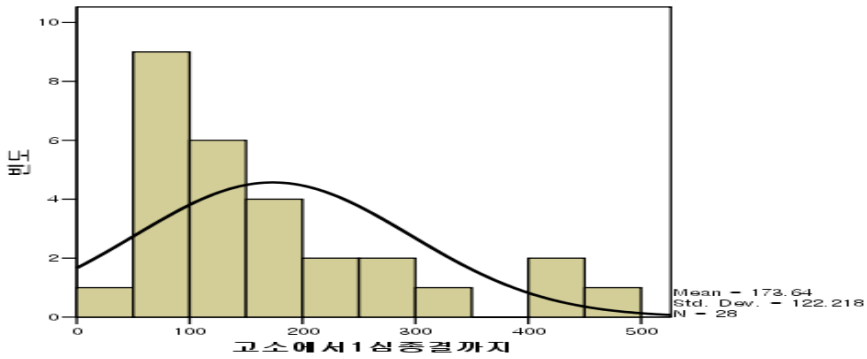

〈그림 Ⅲ-3〉 고소~1심까지의 소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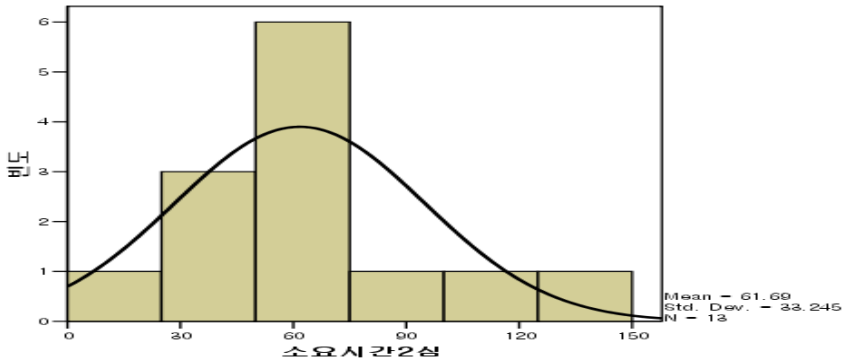

〈그림 Ⅲ-4〉 2심 소요 시간

(나)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의 태도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친절도, 수사의 적극성, 관련 정보의 제공 정도, 및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 수준에 대해 보호자에게 질문한 결과가 <표 Ⅲ-2>에 정리되어 있다.

〈표 Ⅲ-2〉 사법관계자의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경찰 수사관				검찰 수사관				재판관계자			피고측 변호사
	친절도	수사 적극성	아동 이해도	정보 제공	친절도	수사 적극성	아동 이해도	정보 제공	친절도	아동 이해도	정보 제공도	아동 이해도
응답수	52	52	49	52	36	36	31	38	31	31	31	31
평균	3.1	3.3	3.2	1.6	2.9	3.1	3.5	1.2	3.5	3.5	1.3	2.4
표준 편차	0.9	1.1	1.2	0.6	1.1	0.9	0.9	0.4	0.9	0.8	0.6	1.2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부의 친절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검찰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수사의 적극성에서는 검찰에 비해 경찰이 좀 더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보면, 경찰, 검찰 및 재판부 모두 평균인 2점을 다소 밑도는 낮은 점수를 얻었다. 그 중에서도 검찰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사건과 관련한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보호자들에게 조사와 공판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며, 이것에 대한 보호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게 보고되었다.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 수준을 보면, 세 집단 모두 보통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었으며, 검찰과 재판부가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들이 평가가 (충분치는 못하나) 긍정적인 편이었다는 것이 고무적이기는 하나, 보호자 역시 아동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일반적인 보고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가 형사사법 관계자들이 아동의 특성을 진정으로 잘 파악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다. 이와 관련해 실무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이전에 비해 형사사법 관계자들의 태도가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무엇보다 개인차가 너무도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가해자 혹은 피고측 변호사가 아동이라는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2.4점으로 다소 이해하지 못한다와 보통 사이의 점수를 보였다. 각 영역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사법관계자의 태도에 대한 빈도분석결과

		심히문제		다소문제		보통		약간양호		매우양호	
경찰	친 절 도	3	(5.8%)	6	(11.5%)	27	(51.9%)	13	(25.0%)	3	(5.8%)
	수사적극성	3	(5.8%)	8	(15.4%)	19	(36.5%)	14	(6.9%)	8	(15.4%)
	아동이해도	6	(12.2%)	6	(12.2%)	18	(36.7%)	10	(20.4%)	9	(18.4%)
	정보제공도	24	(44.4%)		-	27	(51.9%)		-	1	(1.9%)
검찰	친 절 도	5	(13.9%)	3	(8.3%)	21	(58.3%)	3	(8.3%)	4	(11.1%)
	수사적극성	3	(8.3%)	4	(11.1%)	19	(52.8%)	7	(19.4%)	3	(8.3%)
	아동이해도		-	3	(9.7%)	13	(41.9%)	11	(35.5%)	4	(12.9%)
	정보제공도	33	(86.8)		-	4	(10.5%)		-	1	(2.6%)
재판부	친 절 도		-	2	(6.5%)	18	(58.1%)	5	(16.1%)	6	(19.4%)
	아동이해도		-	3	(9.7%)	14	(45.2%)	11	(35.5%)	3	(9.7%)
	정보제공도	24	(77.4%)		-	5	(16.1%)		-	2	(6.5%)
피고측 변호사	아동이해도	8	(25.8%)	8	(25.8%)	12	(38.7%)	1	(3.7%)	2	(6.5%)

(3)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 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결과

(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제도

세 집단 모두 비밀유지가 그다지 잘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단계에서는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되어 지목된 가해자 측 사람들이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피해가 가장 빈번하였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가 변호사에게 모두 전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잦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과 가족이 위협감을 느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검찰 단계에서도 비밀유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는데, 대부분 별도의 조사실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무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되는 것들이었다. 어떤 경우는 아동이 조사 받는 중에 다른 사무실 직원이 들어와 점심 식사 메뉴에 대해 시끄럽게 논의하며 아동을 힐끔거리고 쳐다보는 일도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측 변호사가 아동의 주변인물, 특히 학교 친구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짐으로써 사생활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사례의 경우는 재판 결과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해 아동과 부모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각 기관별로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 Ⅲ-4>와 같다.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경찰과 검찰 모두 전담 조사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당사자들조차도 담당 조사관이 '전담'이었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적었다. 때문에, 전담조사제의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곤란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자들에

게 몇 가지 하위 문항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표 Ⅲ-5>와 <표 Ⅲ-6>은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Ⅲ-4〉 각 기관의 비밀보호규정 준수 제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경찰N=51		검찰N=39		재판부N=31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기술통계치	3.9	1.6	4.2	1.6	3.9	1.5
	빈도	%	빈도	%	빈도	%
심한침해	10	19.6	7	17.9	8	25.8
보통	7	13.7	2	5.1	3	9.7
침해없음	34	66.7	30	76.9	20	64.5

〈표 Ⅲ-5〉 전담조사제도와 관련한 질문항목에 대한 응답내용의 기술통계치

	경찰N=49		검찰N=12	
	평균	SD	평균	SD
조사자가 자신을 전담이라고 소개하였는지	2.8	1.9	2.4	1.8
조사자의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3.3	1.3	3.2	1.4
아동의 수준에 맞는 용어와 표현 사용	3.3	1.2	3.2	1.1
아동의 수준에 맞는 수사 기법 사용	3.3	1.3	2.8	1.1
전담조사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	3.1	1.2	2.6	1.0

* 5점 척도(심히문제에서 매우 양호)로 측정되었음.

〈표 Ⅲ-6〉 전담조사제도와 관련한 질문항목에 대한 응답 빈도

항 목	기관	아동특성이해		아동수준고려		적정수사기법		기타문제행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심히문제	경찰	6	12.2	5	10.2	5	10.4	6	12.2
	검찰	1	8.3	1	8.3	1	8.3	1	8.3
다소문제	경찰	6	12.2	6	12.2	5	10.4	5	10.2
	검찰	4	33.3	2	16.7	4	33.3	4	-
보통	경찰	17	34.7	19	38.8	23	47.9	27	55.1
	검찰	2	16.7	4	33.3	5	41.7	5	-
다소적절	경찰	8	16.3	9	18.4	2	4.2	11	22.4
	검찰	2	16.7	4	33.3	1	8.3	0	-
매우적절	경찰	12	24.5	10	20.4	13	27.1	0	-
	검찰	3	25.0	1	8.3	1	8.3	1	9.1

경찰의 경우 자신을 전담조사관이라고 소개한 경우가 22명(47.8%)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관이 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사람이 12명(24.5%)이었다. 아동의 수준에 맞는 단어와 표현 사용에 대해서는 11명(22.5%)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부적절한 조사 기법의 사용을 보고한 사람은 10명(20.4%)으로 나타났고, 어떤 식으로든 전담조사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11명(22.5%)이었다.

검찰의 경우에는 12명 중에 조사관이 전담임이 파악된 경우는 4건(33.3%)이었으며, 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 경우가 5건(41.7%)이었고, 아동의 수준에 맞는 단어와 표현 사용 항목에 대해서는 3명(25.0%)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적절한 조사 기법의 사용을 보고한 사람은 5명(41.7%)이었고, 어떤 식으로든 전담조사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고 보고된 경우도 5건(41.7%)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다행스럽게도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고려하면서 조사하였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가해자와의 대질 조사와 같은 부적절한 조사 방법을 시도하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는 조사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에서 보이듯이, 전체적으로 경찰이 좀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표집 수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두 집단의 실질적인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보호자의 평가가 조사자의 친절도에 따라 전문성 판단이 편향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 객관성이 다소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경찰이 검찰에 비해 여러 영역에서 보다 나은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다)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경찰단계 : 진술조사를 받은 모든 사례(N= 49, 100%)에서 보호자의 동의 하에 별도로 마련된 진술조사실에서 녹화를 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해 모든 사례(100%)에서 공지를 받았으며, 한 사례에서 아동이 보호자의 동석을 원하지 않아 단독으로 조사 받았으며, 나머지 48건(98.0%)은 부모나 친인척 혹은 상담원 등의 신뢰관계자로 볼 수 있는 대상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48건 중 40건(83.3%)에서 조사가 1회 실시되었으며, 조사 이외에 용의자 사진 대조 등의 이유로 3-4회 정도 경찰서에 방문하였다고 하는 사례가 3건 있었다. 8건에서 진술조사가 2회 이루어졌는데, 아동이 기억상실증세로 인해 진술이 불가능한 건을 포함해서 대부분 아동의 요인(아동의 진술 곤란)에 의해 반복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48건 중에서 44건(91.7%)이 경찰서의 별도 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성폭력피해아동 전담 지원기관의 조사실에서 아동심리학자와 경찰이 동반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건(85.4%)이 조사 과정 중에 조서 작성을 위한 타이핑 작업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조사가 방해되고,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5). 타이핑을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아동심리 전문가가 조사를 진행하였거나, 경찰 원스톱 지원 센터에서 실시된 일부 사례들로, 일선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조사의 경우는 조서작성(타이핑) 작업을 전

건 병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사 시, 5건에서 아동심리전문가와 경찰이 함께 아동을 조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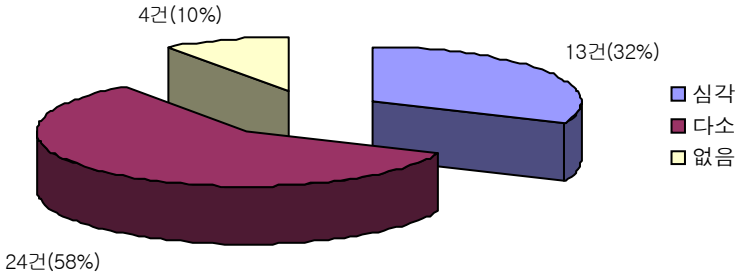

〈그림 Ⅲ-5〉 조사관의 타이핑이 조사를 방해하는 정도(경찰단계)

진술조사 녹화 영상물과 작성된 조서의 사본에 대한 교부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호자가 알고 있는 사례는 전혀 없었으며, 당연한 결과로 사본의 교부 신청 및 그러한 신청의 수용 건수는 전혀 없었다. 한편, 분석이 진행되는 중에 접수되어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한 사례에서는 보호자가 조서의 사본 교부를 신청하자 담당 경찰관이 난색을 표하면서 가능은 하나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교부를 회피하였다고 알려왔다.

② 검찰단계 : 검찰단계에서 진술조사를 받은 사례는 모두 13건(34.2%)으로 나타났다. 한 사례의 경우 검찰에 직접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검사가 아동심리 전문가와 함께 직접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밖에는 경찰에서 이미 진술녹화가 이루어졌으나 조사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서 재진술조사를 받은 사례들이었다. 분석결과, 검찰에서는 녹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8건, 61.5%)가 많았는데, 모두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검찰 사무실에서 타이핑을 하면서 아동을 조사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검찰에

서의 조사 횟수는 모두 1회로 나타났다.

13건 중 5건(38.5%)이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보호자들은 모두 대체로 편안한 공간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나머지 8건은 별도의 공간이 아닌 검찰 사무실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보호자들이 불편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된 사례는 전건 보호자의 동의 하에 녹화되었으며, 신뢰관계자로써 보호자가 동석하였고, 이 중 3건(60%)에서 조사와 조서작성을 위한 컴퓨터 타이핑 작업이 병행되었다. 조사가 사무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뢰관계자로 동석은 하였으나 모두 녹화되지 않았으며 전건 조서작성을 위한 컴퓨터 타이핑 작업이 병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관의 타이핑 작업이 조사를 방해하였다고 보고한 경우는 9건(81.8%)으로 나타났다(그림 Ⅲ-6).

2건(15.4%)에서 조사 시 아동심리 전문가가 조력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녹화물과 조서의 사본 교부가 요청되거나 그것이 수용된 경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보호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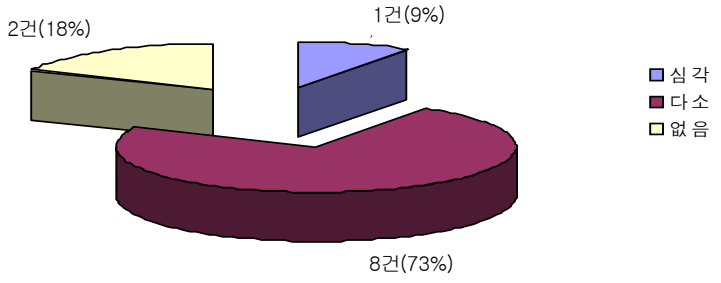

〈그림 Ⅲ-6〉 조사관의 타이핑이 조사를 방해하는 정도(검찰단계)

(라) 심리의 비공개 규정

아동이 증인으로 법정 출석한 사례는 모두 8건이었으며, 이 중 한 아동은 총 3회에 걸쳐 법정에서 반복 증언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총 출석 빈도는 11회이며, 1심과 2심(중복 합산)을 거친 사례가 모두 39건이므로 증인출석 비율은 28.2%로 계산되었다. 모든 아동이 피고와 방청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심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든 증언 사례에서 아동의 보호자나 아동이 원하는 신뢰관계자(예를 들어, 아동심리학자)가 동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언을 위해 출석한 아동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는 없었으며, 한 건에서 아동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여 이를 담당자에게 알리자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밀폐된 장소에서 대기하였다가 증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재판 과정 상, 이전 사건의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 길게는 한 시간 넘게 아동이 대기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안전한 대기실이 없어 복도와 같이 노출된 장소에서 기다려야 하며, 피고 측 관계자와 마주칠 것이 두려워 화장실에서 숨어있다가 증언대에 서는 경우도 있다. 증언 자체의 스트레스에 이러한 부가적인(배려가 있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까지 가중되면서, 아동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보호자가 법정 증언한 사례 중에서 증언자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과 방청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 심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4건 있었으며, 친부에 의한 성폭행 사건에서는 가정 내 발생하였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판사가 직권으로 방청인만을 퇴정시키고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비공개'라는 규정은 모호성을 띠고 있어서, 해석에 따라 비공개의 범위가 달라질 소지가 있다. 보호자의 법정 증언 시에는 피고가 출석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피고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일 경우에는 보호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위협감도 아동 못지않게 클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마) 전문가의 의견조회

검찰의 공판 전 조사 과정이나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경찰이 의뢰한 것을 포함하여,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이 요청되어 관련 서류가 발부된 사례는 모두 5건(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표집되지 않은 사례들을 모두 포함해서 볼 때, 경찰이 아동의 피해 후유증과 관련된 의사 및 아동심리학자의 의견서를 요청하는 빈도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2007년 전문가 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의료진단서제출 105건 및 의견서 제출 69건임).

재판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한 경우는 모두 7건(18.0)이었으며, 이 중 3건은 한 재판부에서 모두 의뢰한 것이었다. 아동 성폭력의 후유증과 치료, 및 아동진술의 신빙성 평가에는 상당한 아동전문 지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의견 조회는 아직까지 그다지 활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전문가들이 아동의 평가와 치료 및 조사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문가의 증언 청취 빈도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관련 전문가가 법정에서 아동관련 사항에 대해 증언한 빈도는 2004년 0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2건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지만,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이다.

(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경찰과 검찰에서 실시된 모든 조사에서, 녹화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 가능하다는 고지를 보호자가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의 아동이 보호자의 동석을 원하지 않아서 보호자 없이 조사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보호자가 동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규정은 상당히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한발 나아가 신뢰관계자로 동석한 사람이 과연 신뢰관계자로써 기대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오히려 조사에 방해가 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지 등과 같은 질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해서는 소결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아동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총 11건이었으나, 이 중에서 중계 장치를 활용하여 증인신문을 받은 경우는 단 한건(9.1%)에 그쳤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법원마다 중계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고는 하나, 보호자들에게 이러한 점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사, 요청하더라도 나이 든 아동인 경우에는 수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어떤 보호자는 검사에게 어렵게 이를 요청하였으나, 무성의한 태도로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식의 반응을 하였다고 불평하기도 하였다.

(아) 증거보전의 특례

증거 보전이 신청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보호자는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경찰이나 검찰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 소결

1) 요 약

아동 성폭력 전담기관의 법률지원 사례분석 결과,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형사절차상 아동의 보호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절도와 수사 적극성, 아동 이해도 등에서 경찰과 검찰 및 재판부 모두 보통 수준 정도의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관련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세 기관 모두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비해 검찰과 재판부에서 개인차가 훨씬 크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우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경찰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사생활 정보가 누설된 비율이 각각 15% 가량이었으며,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무공간에서 조사함으로써 아동과 보호자가 자기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등의 피해가 빈번히 보고되었다. 각 단계별로 볼 때 큰 비율이 아닌 것 같지만, 형사절차 전체로 본다면 절반 가까운 수의 아동이 어떤 식으로든 사생활 노출과 그로 인한 불편을 경험한다는 것이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치라 할 수 있겠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와 관련해서는 절반 가까운 수의 조사자가 '전담'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담여부와 더불어, 보호자들에게 조사자의 아동에 대한 이해 등을 조사함으로써 조사자의 '전문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조사자들이 아동과의 관계 형성의 중요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수칙은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가해자와의 대질을 유도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경찰의 경우 전건 별도의 조사실에서 조사 내용을 비디오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검찰의 경우에는 70% 가량에서 영상물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경우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사무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경찰과 검찰 모두 영상물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거의 대부분에서 조사와 조서 작성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증인으로 법정 출석한 모든 사례에서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되어, 심리의 비공개 규정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결과 증인으로 법정 출석한 아동이 높은 비율(28.2%)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 피해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서 법정 증언하게 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아동의 특성 상 기억의 붕괴나 오정보에의 노출로 인한 오류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한 쟁점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경찰과 검찰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한 경우는 1-2% 정도로 낮았으며, 재판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한 경우는 18% 가량이었는데, 이 중 절

반은 하나의 재판부에서 의뢰된 것이었다. 아동 성폭력과 같은 사건에서는 아동심리학자와 소아정신과 의사 등과 같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동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이러한 점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규정에 비해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규정은 매우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조사 사례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 가능함이 고지되었으며, 아동이 동석을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건 신뢰관계자가 동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규정이 때로 과잉 적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친부에 의한 성폭행과 같이 어머니가 사건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건에서 어머니를 동석시킨다거나 보호자가 없는 사건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킨다는 명분 하에 아동과 일면식도 없는 상담소 직원을 동석시키는 등의 문제들이 보고되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규정과 관련해서, 아동이 법정 출석하여 증언한 사례가 11건이었으나, 이 중에서 중계장치를 활용하여 증언한 경우는 한 건에 불과하였다. 관련 전문가의 보고에 따르면, 장비의 마련 비율은 상당히 높으나, 활용 빈도는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보전의 특례는 적용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보호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경찰이나 검찰 관계자가 해당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한편,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친권상실 청구제도와 신고 의무 제도와 같이 형사절차 상의 제도는 아니지만,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중요 제도들도 조사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관련 자료들이 충분치 못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신고 의무 규정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보육시설, 모부자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학교,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동복지지설, 장애인복지시설,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 쉼터, 청소년 지원기관 및 활동기관, 청소년재활센터)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 10조,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

상)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일선 상담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자신이 신고의무자인 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고 하는 등 충분한 홍보와 관련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설사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 해도 보호자가 사건의 쟁점화를 원치 않는 경우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신고할 경우 보복이나 원망을 듣게 될 것을 염려하여 망설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의 집이나 유치원 및 학원 등에서 발생된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신고의무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다하기 보다는 은폐, 축소 및 책임 회피의 유혹에 흔들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실정이며, 이러한 점에서는 학교 관계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신고의무 기관, 특히 보육 및 교육 기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제도(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검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에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활용도는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파악 상황이라는 점은 그 만큼 이 제도가 널리 홍보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2) 제언

본 조사에서는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들의 운영 현황을 검토해보았다. 관련 공식 통계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아동 성폭력 전담지원기관의 사례 분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

워크샵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겠다.

첫째, 진술조사 전문가 참여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아동 성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마련된 이래로 경찰수사연수원과 법무연수원에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해오고 있다. 기관별로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8월에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아동 성폭력 전담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동조사의 전문성은 몇 번의 교육이나 워크샵 참여만으로는 갖추어질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이다.

이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일관되게 밝혀진 사항으로, 예를 들어 Aldridge (1992; Aldridge와 Cameron, 1999)는 영국에 있는 경찰과 사회사업가를 위한 3일간의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이러한 훈련이 조사기술의 향상에 거의 효과가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경험 있는 경찰관과 사회사업가들이 집중적인 교육과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그들이 배운 새로운 정보를 사용해서 실습할 기회도 주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훈련프로그램에 참석한 이후에도 배운 바와는 달리, 여전히 충분한 라포 형성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유도적이고 암시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였다. 이에 대해 Aldridge(1992)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사전략의 향상과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조사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한 경험학습은 며칠간의 훈련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와 유사하게,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훈련 후에 수행된 조사를 분석한 결과(22명), 조사자의 말 중에서 2%만이 권유형태였으며, 34%가 선택적이고 암시적인 언급들이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훈련에서도 유사한 비효율성이 드러났다(Sternberg 등, 1996). 조사자에 의해 사용된 질문 유형의 분석결과(45명), 조사자의 말 중에서 5%만이 권유형태인 반면, 선택형과 암시질문은 49%에 달하였다. 아동은 조사자의 권유에 대한 반응으로 세부사항의 18%를 제공하였으며, 선택형과 암시적 질문에 대한 반응에서는 39%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성폭력 피해 아동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지 얼

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함의는 실로 크다고 하겠다. 아동, 특히 성폭력 피해와 같이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거의 없어서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민감한 사건에서는 아동과의 조사 기술이 중요한 관건이며, 성공적인 조사·면담을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 언어, 기억, 피암시성,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조사와 관련한 법률적 지식이 함께 요구된다. 전담 조사관제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 경찰 혹은 검찰 조사관에게 이러한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작업의 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심히 부당한 일일 것이며, 아동심리학자와 소아과나 정신과 전문의, 혹은 아동전문 사회사업가 등과 같은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아동 성폭력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아동 성폭력 조사자는 아동의 인지, 심리, 정서, 기억 및 성폭력 후유증 등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식들을 고루 갖춘 전문가는 국내에서 얼마 되지 않으며, 실태 파악도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감독과 더불어 관련 전문가의 양성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2007년 한국심리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어「아동 성폭력 행동·진술 분석제 및 아동심리전문가 참여제」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아직까지 전문가 참여제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해 사법경찰관리가 주도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조사라고 해서 배척당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형사사법 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둘째, 신뢰관계자의 동석과 관련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 아동과의 조사 시 신뢰관계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사 지침서들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본 연구 결과에서도 그러한

지침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은 조사자의 위협이나 협박 등과 같은 2차 피해의 감시와 진술 자체로 인해 아동이 겪을 수 있는 불안, 분노 등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며 안심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말은 아동의 부모가 반드시 신뢰관계 있는 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동석이 허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보호자가 가해자와 이익관계에 있거나 극단적인 경우 보호자가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조차도 동석이 허용되고 있다. 여아의 사례에서 아버지가 동석하여 아동이 부끄럽다며 진술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사례의 경우 조사 당일 처음 만난 상담소 직원이 신뢰자로 동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상담원은 신뢰관계 있는 자가 아닐 수 있다.

요컨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규정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 진정으로 신뢰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며, 어떤 식으로든 아동에게 위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동석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동석자인 신뢰관계자가 어떤 식으로든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조사관이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의 중간에 신뢰관계자가 유도나 암시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 아동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수적이며, 조사 중에 휴식이나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조사자가 보지 않는 장소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과 보호자가 따로 접촉하는 것은 향후 아동의 진술 신빙성 추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사례에서 아동이 조사관의 질문에 계속해서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아동과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갑자기 아동의 태도가 돌변하여 피해를 유창하게 보고하였다. 이런 경우 아동이 보고하는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성 추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셋째, 경찰 조사 및 수사 과정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에 따르면, '여성 경찰'이 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기는 하나, 드물지 않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경이라는 이유로 조사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아동과의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자의 '전문성'이지 성별은 아닐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같은 수사기관이지만 검찰에서는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 아동 조사관이 남성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경찰 단계의 조사에서 진술녹화를 여경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나, 향후 사건 처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이 명백한 여경이 아동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진술조사는 여청계에서, 그리고 수사는 형사계에서 진행하는 식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수사의 흐름이 유지되지 못하며, 보호자들이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하는 지 헷갈리는 경우도 잦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대부분의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청 원스톱 센터에서 진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스톱 센터의 조사자가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여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함으로써 경찰서에서 재조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원적인 시스템이 전문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겠으나, 사건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개선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영상물 촬영과 진술조서 작성의 병행 문제-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영상조서로 문서화된 조서를 대신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조사관들이 영상물 촬영과 조서 작성을 병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조사가 방해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과의 면담 시 조서 작성은 조사의 흐름을 방해하고, 아동의 주의를 분산시키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조사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를

가급적 금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검찰·법원에서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진술녹화 시 진술조서 작성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동의 경우, 진술 내용 뿐 아니라 진술시의 얼굴 표정, 억양, 몸짓 등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도 언어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자가 조서 작성으로 인해 주의가 분산됨으로써 중요한 비언어적 단서를 놓치는 것은 중요한 과오이며, 편리성을 이유로 영상녹화물의 재생보다 조서열람을 선호하는 것 역시 같은 실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동이 관여된 사건에서 만큼은 진술조서 대신 영상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는 형사사법절차를 경험했던 보호자들의 주관적인 보고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조사 대상이 서울 소재인 기관인 바, 일반화에는 일부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전담 기관이라는 점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이 경험하는 형사절차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줌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성폭력 피해 아동 원스톱 지원

가. 현행 제도 및 운영 현황

원스톱 지원은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통합 연계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즉 기존 시스템은 피해자가 상담, 일시보호, 의료지원, 치료회복, 법률구조, 수사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녔지만, 원스톱 지원 하에서는 수사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이 하나의 센터에서 통합·연계되어 제공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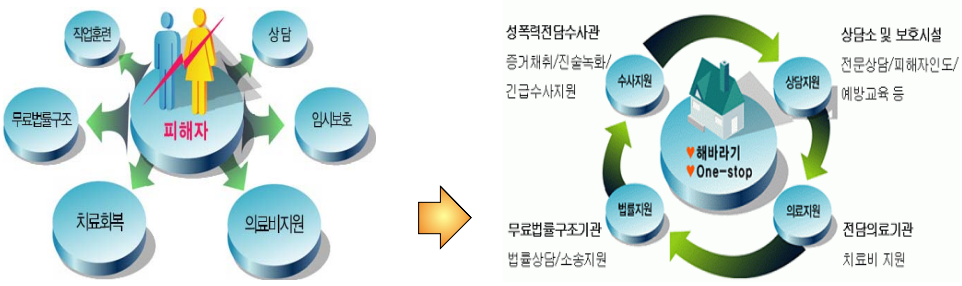

<기존 시스템> <원스톱 시스템>

※ 개별 서비스 지원 **※ 통합연계서비스 지원**

〈그림 Ⅲ-7〉 기존 시스템과 원스톱 시스템

출처 : 여성가족부(2007),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아동 성폭력 전담기구로 2004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에도 설치되어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2009년 6개가 증설될 예정에 있다. 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는 2005년 경찰병원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아동 성폭력 전담기구로 통칭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 성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여성폭력 문제와 학교폭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문제가 전체 피해자 중 6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경찰청, 2007), 그 중 아동 성폭력의 비중이 45%[28]에 이르고 있어서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피해자 지원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8) 경찰청 원스톱 지원센터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 3317명 중 청소년 이하가 1481명으로 약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1) 해바라기아동센터

가) 설치 배경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4년부터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여성부, 2008. 4.1 보도자료). 현재 서울센터(연세의료원, 04년 6월～), 영남센터(경북대병원, 05년 6월～), 호남센터(전남대병원, 05년 6월～)가 설치되어 있다.

〈표 Ⅲ-7〉 해바라기아동센터 설치 현황

구분	수탁기관	개소일	소재지
서울센터	연세의료원	04년 6월 18일	서울 마포구
영남센터	경북대학교	05년 6월 9일	대구 중구
호남센터	전남대병원	05년 6월 29일	광주 동구

나) 주요 기능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의학적 진단 및 평가와 치료 등을 제공하는 의료 지원,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 신고 및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 지원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중심이 되어 허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수사기관, 의료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연계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 피해상담
- 임상 심리전문가에 의한 심리평가
- 산부인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한 의료지원
- 자문변호사에 의한 법률 및 소송지원
- 가해 아동에 대한 교정사업(복권 기금 활용)

-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 홍보 등 예방사업

다) 업무 체계도

앞에서 살펴본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기능은 아래와 같은 업무 체계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업무 체계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서울, 영남, 호남 모두 이와 같은 업무 체계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아동 성폭력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초기단계에서 응급진료, 외상치료, 법의학적 증거확보 등이 이뤄지고,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신의학적·심리학적 평가, 법률적 처리를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각종 치료, 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 등 다양한 개입조치가 이뤄지고 치료가 종료된 후에는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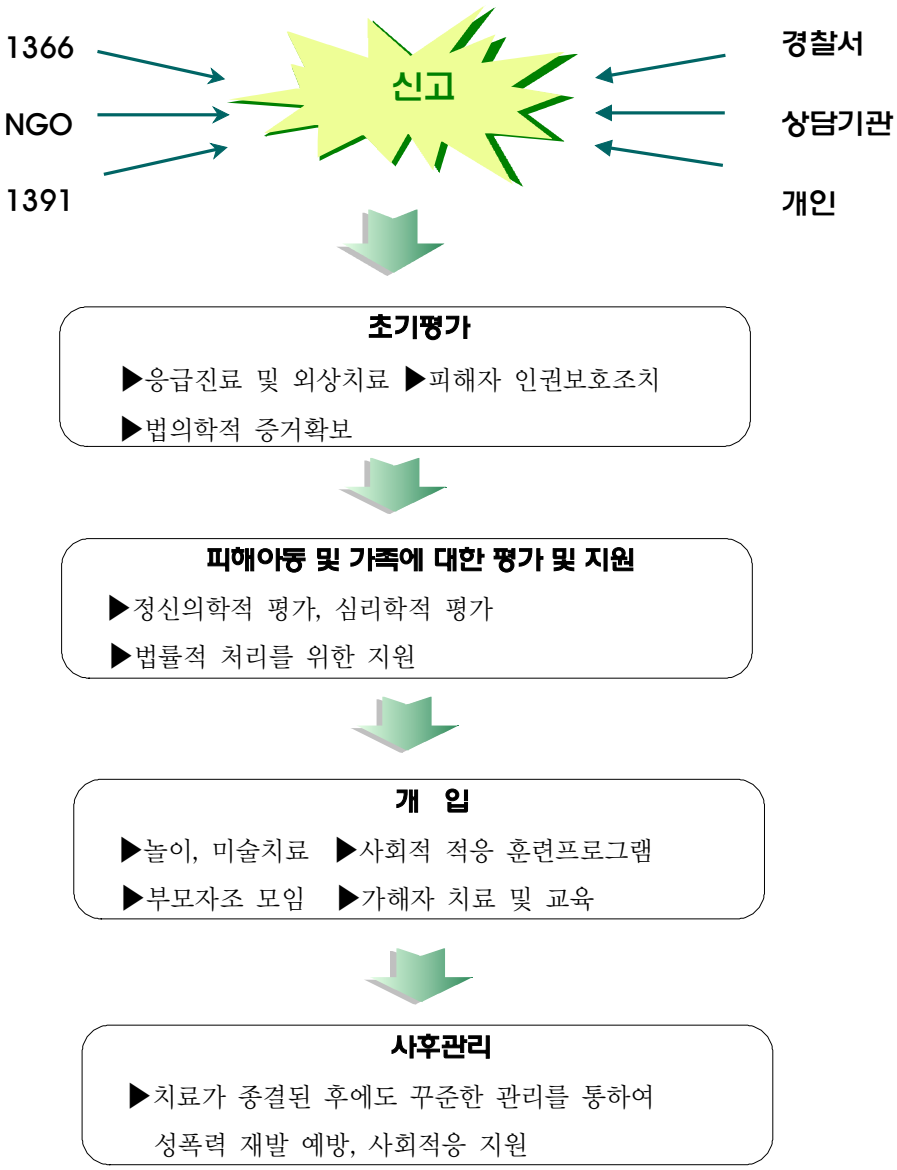

〈그림 Ⅲ-8〉 해바라기아동센터 업무 체계도

출처 : 여성가족부(2007),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

라) 주요 업무 및 조직 구성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기본적인 주요 업무와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 상담지원팀, 행정총괄팀으로 구성되어 각기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간호사, 행정담당자 등 센터 내부 인력과 외부 전문가 그룹 혹은 전문기관을 활용한 외부 인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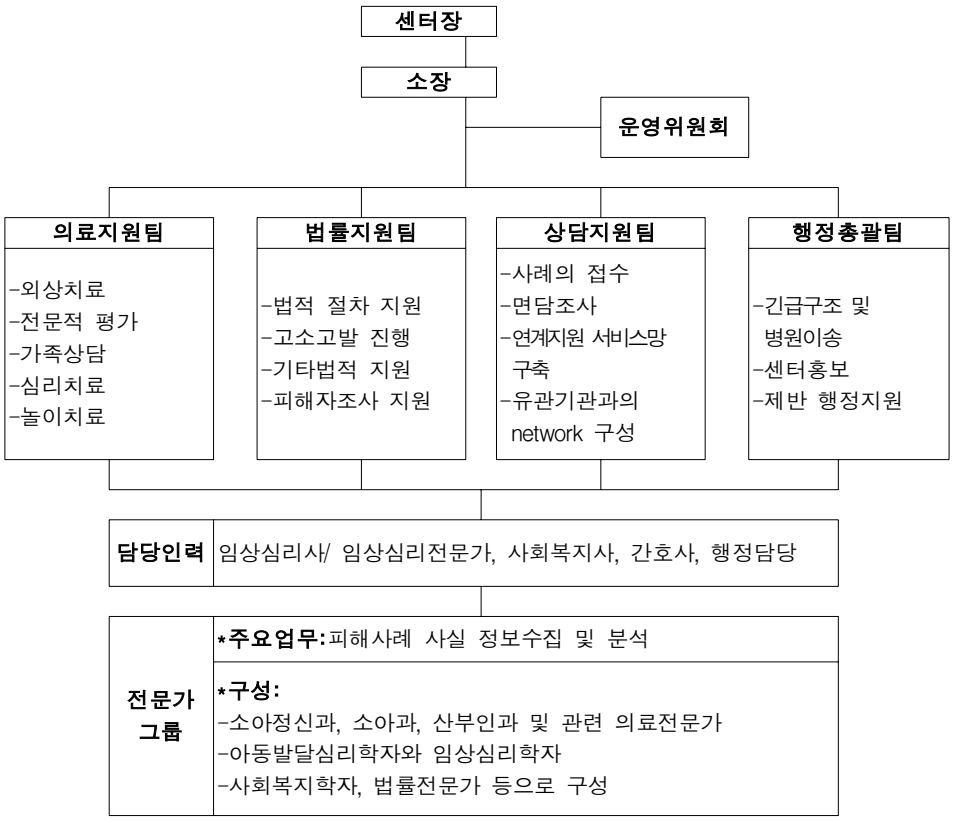

〈그림 Ⅲ-9〉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기본 조직도

자료: 여성부(2007), 아동 성폭력전담센터 운영타당성 조사.

그러나 실제 서울, 영남, 호남 각 센터의 조직 구성은 각 센터의 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센터와 호남센터는 의료지원팀, 상담 및 심리치료팀, 법률지원팀으로, 영남센터는 정신의학적지원팀, 법의학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각기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영남센터의 경우 의료, 상담, 심리치료, 법률지원을 중심으로 편재된 서울센터와 호남센터와 달리 정신의학적 지원과 법의학적 지원으로 편재하여 법의학적 증거 채취 등의 초기대응과 고소·고발, 법적 절차에 따른 지원 등 법률 지원을 법의학적 지원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영남센터에서는 간호사, 임상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다른 센터와 달리 별도로 법의학 간호사 2인을 채용해서 법의학적 지원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영남센터의 경우 다른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접근 경향이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차이점에 대해 여성부(2007)에서는 각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자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3개 권역에만 설치, 운영되어 있는 단계일 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성폭력 피해아동에서 접수에서 치료까지를 모두 지원하는 One-Stop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는 초기 단계라고 분석하고 있다.

2009년에는 6개의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증설될 예정에 있다. 각 센터가 설치될 지역적 특성, 센터 위탁 운영주체의 전문성 등에 기반한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운영된 3개소의 사업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서비스 이용 현황, 서비스 효과성, 서비스 수요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설립 초기에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설정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 그에 따른 서비스 내용, 조직체계, 구성인력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형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모델 확립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며, 확대에 앞서 전국에 설치된 어떤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이용해도 기본적인 서비스가 균질하게 제공됨과 동시에 기본적인 서비스가 전제된 위에 지역적 특성 혹은 위탁운영주체의 전문성 등이 반

영된 센터별 전문화가 이뤄지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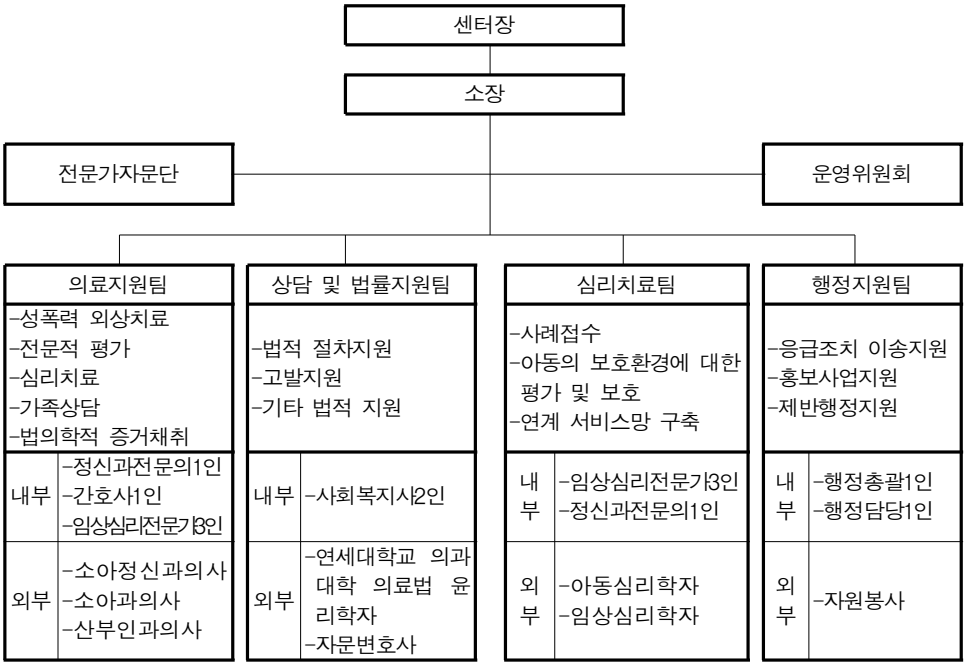

〈그림 Ⅲ-10〉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의 업무 및 수행 인력

자료 : 해바라기아동센터 서비스 제공현황 설문조사 실시 결과

〈그림 Ⅲ-11〉 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의 업무 및 수행 인력

자료 : 해바라기아동센터 서비스 제공현황 설문조사 실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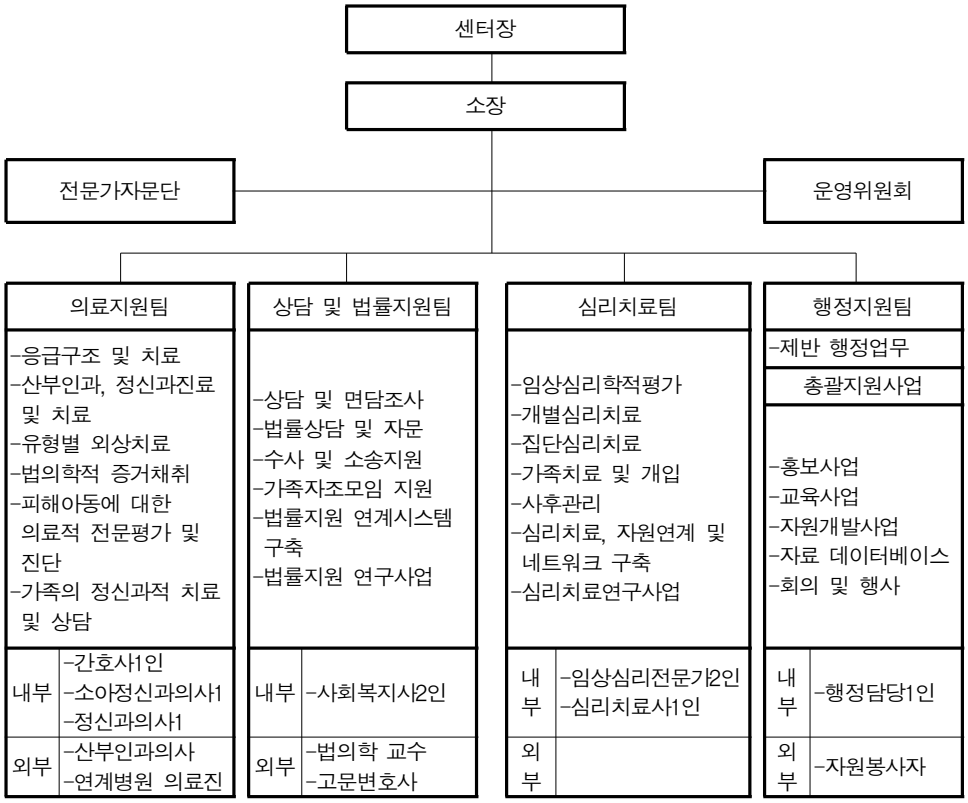

〈그림 Ⅲ-12〉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의 업무 및 수행 인력

자료 : 해바라기아동센터 서비스 제공현황 설문조사 실시 결과

마) 구비 시설

각 센터 구비 시설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서울센터는 소장실 1, 회의실 1, 심리평가 및 진술녹화실 1, 정신과진료실 1, 놀이치료실 2, 면담실 1, 보건실, 대기실 2이 구비되어 있었다. 영남센터는 소장실 1, 면담실 1, 놀이치료실 2, 심리검사실 1, 심리치료실 1, 진술녹화실 1, 회의실 1, 법의학검사실 1, 대기실 2이 구비되어 있었다. 호남센터는 소장실 1, 놀이치료실 3, 상담실 1, 부모상담실 2, 소회의실 1, 대회의실 1, 부모대기실 1, 보건실 1, 심리평가실 1, 정신과진료실 1, 집단상담실 1 등이 있었다. 이러한 구비시설은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내용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명칭은 조금씩 다르나 3개 센터 모두 심리치료, 심리평가, 정신과진료실, 놀이치료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센터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 구비 현황을 볼 때 3개 센터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진술녹화실의 경우 서울센터와 영남센터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서울센터와 호남센터는 보건실이 있는 반면 영남센터는 법의학검사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조직구조와 인력에서 볼 수 있었던 센터간 차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직구조, 인력, 구비시설 등은 결국 각 센터에서 비중 두고 있는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Ⅲ-8〉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구비시설

	소장실	회의실	법의학 검사실	심리 치료실	심리 평가 (검사)실	진술 녹화실	정신과 진료실	놀이 치료실	면담실/ 상담실	보건실	대기실
서울	1	1			1		1	2	1	1	2
영남	1	1	1	1	1	1		2	1		2
호남	1	소(1) 대(1)			2		1	3	1, 집담(1) 부모(2)	1	1

바) 운영 실적[29)]

(1) 접수 현황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는 기존의 성폭력상담소 등과 같이 상담과 법률지원만 하고, 의료지원이나 가족지원 등은 다른 기관과 연계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의 통합지원이 아니라 접수에서부터 초기면담, 그리고 정신과, 산부인과, 기타 의학적 치료와 심리치료, 수사 및 재판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 등 피해아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여성부, 2007). 각 센터별로

29) 여성가족부(2007)의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운영 타당성 조사에 수록된 2006년도까지의 통계치를 토대로, 각 센터별로 이메일을 통해 서비스 제공현황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도 통계치에 대해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해마다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센터의 경우 2004년 169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653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설립되면서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표 Ⅲ-9〉 접수 현황

(단위 : 건(월평균))

	서울	영남	호남
2004	169	-	-
2005	494	94	82
2006	638	228	202
2007	653	254	160

(2) 서비스 지원 현황

의료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등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 지원 현황을 각 센터별로 살펴보았다. 각 센터별로 인력배치나 조직도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부, 2007). 먼저 의료지원에서 보면 의학적 치료의 경우 서울센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7년에 급증한 반면 호남센터와 영남센터는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심리치료의 경우는 3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호남센터에의 급증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법률지원과 상담지원은 3개 센터 모두 의료지원에 비해 지원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지원에서는 서울센터가, 상담지원에서는 영남센터가 2006년 대비 2007년에 지원건수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10〉 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건)

구분			서울	영남	호남
의료지원	의학적 치료	2004	282	-	-
		2005	730	127	348
		2006	738	639	552
		2007	1618	320	433
	심리치료	2004	666	-	-
		2005	1758	230	275
		2006	1141	483	1307
		2007	1495	738	2335
법률지원		2004	200	-	-
		2005	454	148	291
		2006	430	503	286
		2007	768	362	493
상담지원		2004	368	-	-
		2005	628	208	290
		2006	636	436	1026
		2007	325	816	479

* 용어설명

- '의료지원' : 의학적 치료(정신과 치료, 산부인과 진료, 응급진료, 기타 통합진료, 약물치료, 입원치료)와 심리치료(심리평가, 심리치료, 집단치료) 등 포괄.
- '법률지원' : 법률상담, 법률 자문상담, 수사지원, 재판지원 등 포괄.
- '상담지원' : 초기면담조사, 지원상담, 부모상담, 부모교육, 자원연계, 기관 연계 등 포괄.

(가) 의료지원[30]

30) 첫째, 아동 성폭력전담센터와 대학병원과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통하여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성폭력 피해아동과 보호자가 들여야 했던 수고와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센터내원만으로 증상에 맞게 소아정신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의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이를 통하여 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을 제공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피해아동이 연계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센터 소속 간호사가 동행함으로서 아동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게 하고, 진료 중에도 아동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심리적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넷째, 성폭력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 무상

① 의학적 치료

센터에 등록되는 아동은 모두 정신과 진료를 통하여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이때 아동의 피해 내용에 따라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등의 진료여부를 결정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입원치료, 약물치료 처방을 한다. 입원 및 약물처방은 아동이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불면, 불안, 피해의 재현화, 악몽 등의 후유증이 일상생활에 불편 또는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에 처방하게 된다(여성부, 2007).

의학적 치료에서는 3개 센터 모두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산부인과 치료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았고 특히 서울센터의 경우 2007년 산부인과 치료 지원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심리치료

심리치료는 산부인과 치료나 정신과 치료, 약물치료, 입원치료 등을 통하여 의학적 치료를 통하여 심각한 불편이나 장애가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 실시하게 된다. 심리치료팀은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놀이치료사 등으로 구성되며 통상 주 1회 사례회의를 통해 한 주동안 실시된 정신과 진료, 심리평가[31], 심리치료[32]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여성부, 2007).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성폭력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다섯째, 급성증상의 치료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여 아동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도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입원을 통한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외래의 경우 센터와의 연락을 통해 사전예약으로 보다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여섯째,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한 소견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여 법적 지원이 용이해질 수 있다. 특히 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와 같이 법의학간호사가 상주하는 센터의 경우 법률서비스와 의료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곱째, 나아가 병원과의 연계시스템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아동 성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시켜주고 이를 통해 의료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전환은 피해아동에게 보다 신속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하게 한다. 의료지원에는 크게 '의학적 치료'와 '심리 치료'의 두 가지로 나뉘며, 다시 의학적 치료에는 '정신과 치료', '산부인과 치료', '약물치료', '입원치료', 그리고 '통합진료', '기타치료'가 있다(여성부, 2007).

31) 법적 활용도 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데, 사건의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아동의 진술 능력, 지적 능력, 증언의 신뢰도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

3개 센터 모두 심리평가 보다는 심리치료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특히 서울센터와 호남센터는 2006년 대비 2007년 지원건수가 2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11〉 의료지원 실적

(단위 : 건)

구분		서울				영남			호남		
		2004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의학적치료	정신과 치료	164	442	569	437	93	282	275	151	279	264
	산부인과 치료	65	180	68	-	14	33	44	65	65	47
	약물치료	43	83	79	109	17	49	34	113	172	90
	입원치료	10	22	22	10	3	8	5	3	5	4
	통합/응급/기타	58	-	-	105	-	7	0	16	31	28
	소계	340	792	738	661	127	379	358	348	552	433
심리치료	심리평가	112	225	194	173	37	193	215	32	81	72
	심리치료	427	89	947	1,495	193	353	523	243	1,226	2,263
	소계	539	314	1,141	1,668	230	546	738	275	1,307	2,335
계		879	1,043	1,879	2,329	357	925	1,096	623	1,859	2,768

(나) 법률지원

법률지원은 민사 및 형사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상담과 자문, 그리고

기 때문이다. 현재 센터의 심리검사에는 지능검사, 소아우울척도(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소아불안척도(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TAI-C), 한국아동인성검사(Korean Persoanlity Inventory for Children, KPI-C), Rorschach 검사, 한국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K-WISC-Ⅲ), 다면성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등의 도구가 이용되고 있다(여성부, 2007).

32) 놀이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놀이는 아동이 편안하게 즐기는 행동이며 아동이 두려워하는 감정을 표출하고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수단이다. 아동의 언어적 표현이 미숙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에서는 놀이의 형태를 빌리게 된다(여성부, 2007).

수사와 재판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칭한다. 수사 및 재판과정 전반에 걸쳐 피해 아동의 피해를 입증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필요한 의학적,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고소에 대한 두려움이나 2차 피해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법률상담, 법률자문, 수사지원, 재판지원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여성부, 2007).

① 법률상담 및 자문

법률상담은 법률지원 담당자가 실시하는 '법률상담'과 법조인의 자문을 받는 '법률자문'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상담은 보호자가 고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염려하는 상황이나 의문점 등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한다. 법률자문은 센터의 전문자문위원단 중에서 법조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연결하여 필요한 정보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상담이다(여성부, 2007).

법률상담 및 자문에서는 주로 법률상담 지원 건수가 많았는데, 각 센터별 조직구성에서 볼 때 서울센터와 호남센터는 사회복지사가, 영남센터는 법의학 간호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보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거나 전문인력과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수사 및 재판지원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고소를 결정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된다. 이 때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과정을 모니터하며, 진술서 작성을 지원하고, 경찰서에 동행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수사과정에 필요한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특히 센터의 녹화시설과 아동친화적 환경을 이용하여 2차 피해 없이 아동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아동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여성부, 2007).

각 센터별 지원 상황을 보면 서울센터의 경우 2006년까지는 증거자료제출 및 전문가 증인 출두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점차 수사, 재판동행 및 모니터링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영남센터와 호남센터는 증거자료제출 및 전문가 증인출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법률지원 실적

(단위 : 건)

구분		서울				영남			호남		
		2004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법률상담 및 자문	법률상담	15	133	123	410	29	183	200	148	124	223
	법률자문 의뢰	110	29	25	-	27	36	30	4	27	8
	소계	125	162	148	410	56	219	230	152	151	231
수사및 재판지원	증거자료제출 및 전문가 증인출두	28	110	133	23	21	73	80	42	49	42
	수사, 재판동행 및 모니터링	21	83	115	134	-	40	29	22	31	28
	진술녹화	26	35	34	24	7	16	16	16	25	14
	기타	-	9	-	177	11		2	59	30	32
	소계	75	268	282	358	92	129	127	139	135	166
계		200	430	430	768	148	348	357	291	286	397

주. 진술녹화의 경우, 전문가 진술녹화와 상담원의 동석 및 조사장소 대여가 모두 포함된 수치임. 서울센터는 전문가 진술녹화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영남은 장소대여 및 지지제공을 목적으로 한 상담원 동석이며, 호남은 경찰청원스톱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장소대여를 주로 하였으나, 원스톱이 생긴 뒤로는 원스톱에서 진술녹화 진행, 해바라기는 상담원이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으로 출장가고 있다고 함.

(다) 상담지원

상담지원에는 초기면담조사와 부모교육 및 상담으로 나눌 수 있다. 성폭력 피해사건이 접수되면 센터의 상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의뢰자와의 초기면담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아동의 환경을 평가한다. 초기면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지원 계획 수립과 아동 성폭력 피해현황 분석을 위해 활용된다(여성부, 2007).

서울센터의 경우 초기면담조사 건수가 부모상담 및 교육 건수보다 많은데 반해 영남센터와 호남센터는 부모상담 및 교육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 상담지원 실적

(단위 : 건)

구분	서울				영남			호남		
	2004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초기 면담조사	164	288	329	325	50	130	136	49	113	99
부모상담 및 교육	204	117	307	48	183	466	616	43	113	159
계	368	405	636	373	233	596	752	92	226	258

(라) 홍보 및 예방사업

아동 성폭력전담센터에서는 의료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이외에도 홍보, 예방,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여성 ·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가) 설치배경[33]

기존의 성폭력 · 가정폭력 상담소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해 운영되어 왔던 기관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수사 · 의료 · 법률지원 등은 해당기관으로 연계하고 해바라기아동센터도 상담 · 진료 · 법률지원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는 상황이어서 상담 · 의료 · 수사 · 법률 등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2005년 경찰병원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 경찰청, 병원의 3자 협약형태[34]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2005년에도 2개소가, 2006년에 13개소가 개소되었고 2007년 9월에 경기북부 센터가 설치되면서 전국 지역별 15개 원

33) 여성부(2006)의 여성부 혁신 우수사례 중앙부처 혁신우수사례 본선진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였다.

34) 3자의 역할 분담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청은 수사지원 및 센터운영 여경 24시간 상주, 여성가족부는 예산확보 및 지원과 상담지원, 병원은 부지 및 건물 제공, 의료지원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스톱 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센터가 속한 병원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료원에 7개소에, 대학병원에 5개소, 일반 병원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표 Ⅲ-14〉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현황

지역		의료기관	개소일
계		15개소	
서울		경찰병원	05.8
부산		부산의료원	05.12
대구		대구의료원	06.5
인천		인천의료원	06.3
울산		동강병원	06.1
경기	남부	아주대병원	06.11
	북부	의정부의료원	07.9
강원		강원대병원	06.2
충북		청주의료원	06.2
대전		충남대병원	06.9
전북		전북대병원	06.2
광주		조선대병원	06.9
경북		안동의료원	06.1
경남		마산의료원	06.12
제주		한라병원	06.12

출처 : 경찰청(2008), 여성청소년과 내부자료.

나) 주요 기능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 다양한 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협약서 및 규정에 따르면 첫째,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서비스의 통합 지원, 둘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등을 주요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주요 업무 및 조직 구성

주요 기능으로 구분해 보면 의료지원, 상담지원, 수사 및 법률지원, 행정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센터장, 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행정요원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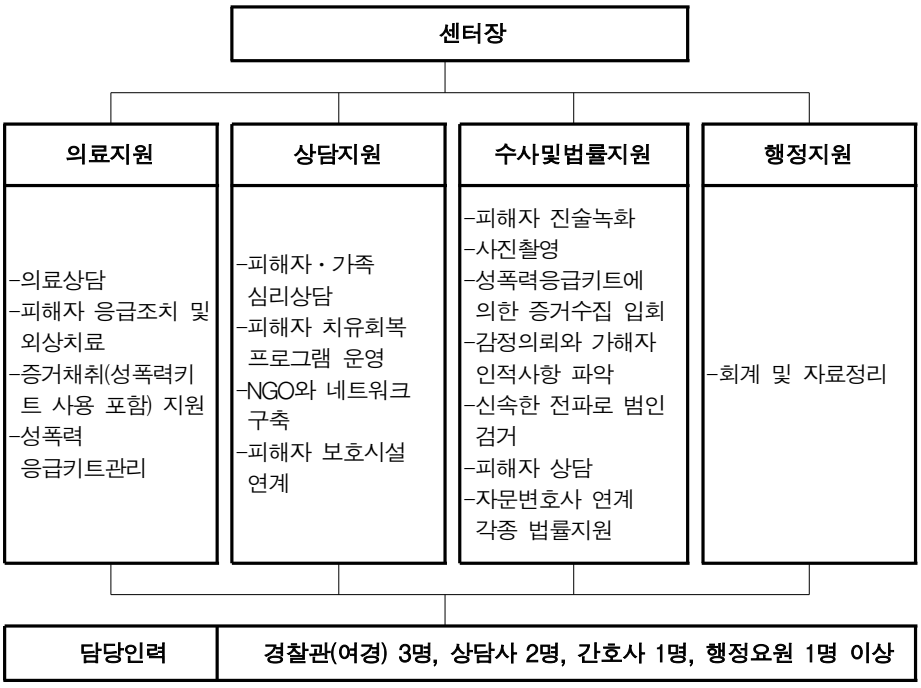

〈그림 Ⅲ-13〉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기본 조직도

센터장은 병원장이나 병원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그 임무는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총괄, 센터 사업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중요 사안 발생 시 지역별 센터 운영위원회 소집 및 보고,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센터의 실무 인력 구성을 보면, 경찰관(여경)3명, 상담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다.

〈표 Ⅲ-15〉 인력 구성 및 활용

(단위 : 명)

지역	센터위치	인력구성				근무방법		
		계	경찰관	상담·행정	간호사	경찰관	상담·행정	간호사
서울	경찰병원	9	5	4	-	팀장 : 일근/ 팀원 : 변형 3교대/ 월 2회휴무(주간)	일근	응급실간호사활용 (24시간)
부산	부산 의료원	7	3	4	1	팀장 : 일근 팀원 : 변형 3교대	경찰관합동 변형 3교대	(주): 산부인과 의사 (야): 응급실 간호사
대구	대구 의료원	9	4	4	1	변형 3교대	변형 3교대	일근
인천	인천 의료원	8	4	3	1	3교대 근무	3교대 근무	일근
율산	동강병원	7	3	3	1	변형 3교대	상담사 (2) : 야간 2교대/ 행정 : 일근	(주):산부인과 의사 (야): 응급실 간호사
경기 남부	아주대 병원	9	4	4	1	팀장 : 일근/ 팀원 : 3교대 근무	주5일 근무	야간 직일근무
강원	강원대 병원	9	4	4	1	변형 3교대	변형 3교대	일근(야간 call)
충북	청주 의료원	8	3	4	1	변형 3교대	변형 3교대	주 5일 근무
대전	충남대 병원	7	3	3	1	팀장 : 일근 팀원 : 3교대	3교대	일근
전북	전북대 병원	7	3	3	1	변형 3교대	변형 3교대 (행정 일근)	상담사와 합동
광주	조선대 병원	8	4	3	1	변형 3교대	변형 3교대	상담사와 합동
경북	안동 의료원	8	3	4	1	변형 3교대	경찰관합동 변형 3교대	주간근무
경남	마산 의료원	7	3	3	1	변형 3교대	변형 3교대	상담사와 합동
제주	한라병원	6	2	4	-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	일근

출처 : 경찰청(2008), 여성청소년과 내부자료 ; 남기재(2007),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먼저 경찰관은 각 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해당 지원센터에 파견근무 형식으로 근무하며 임무는 해당 경찰관서 등과 협의하여 피해자 진술녹화·사진촬영·성폭력응급키트에 의한 증거수집 입회·감정의뢰와 가해자 인적사항 등

을 파악, 신속한 전파로 범인 검거에 기여하고 피해자 상담 및 자문변호사 연계 각종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상담사는 사회복지・심리학 등 상담관련 전문 교육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선발하며 피해자・가족에 대한 초기・심리상담 및 조언,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여성가족부에 복권기금사업 별도 신청), NGO와 네트워크 구축, 피해자 보호시설 등 연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간호사는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선발하며 의료상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외상치료, 증거채취(성폭력키트 사용 포함) 지원, 성폭력 응급키트 관리 등의 임무를 하며 행정요원은 회계 및 자료정리 등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사, 간호사 등이 행정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남기재, 2007) 그러나 배치 인원수나 인원 구성 등은 센터별로 상이한데, 이로 인한 근무형태 등은 달리 운영되고 있다.

라) 구비시설

각 센터별로 상담실, 영상진료실, 진술녹화실, 피해자안정실, 사무실 등을 구비하고 있다. 상담실은 피해자 및 가족 등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며, 영상진료실은 피해자 치료 및 증거채취를 위해 디지털 써비코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진술녹화실은 피해자의 안정된 심리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진술녹화와 피해자 조서 작성 등이 이뤄지며, 해부학적 인형을 구비해서 표현력이 부족한 아동 등의 진술을 보완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안정실은 침대와 소파 등을 갖추어 피해자가 진료를 대기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여성부, 2006).

마) 업무 체계도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업무체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피해가 발생해서 경찰, 피해자나 가족이 직접 혹은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접수가 되면, 상담

사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면접을 통해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피해 상태에 대한 검진 및 기본적인 응급 처치,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채취 등을 실시하고 경찰에 의해 진술녹화 및 조서 작성 등 수사 및 증거자료 수집이 이뤄진다.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에 의해 상담이 이뤄지거나 관련 기관 연계, 정보 안내 등이 제공되며, 피해자가 고소를 할 경우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연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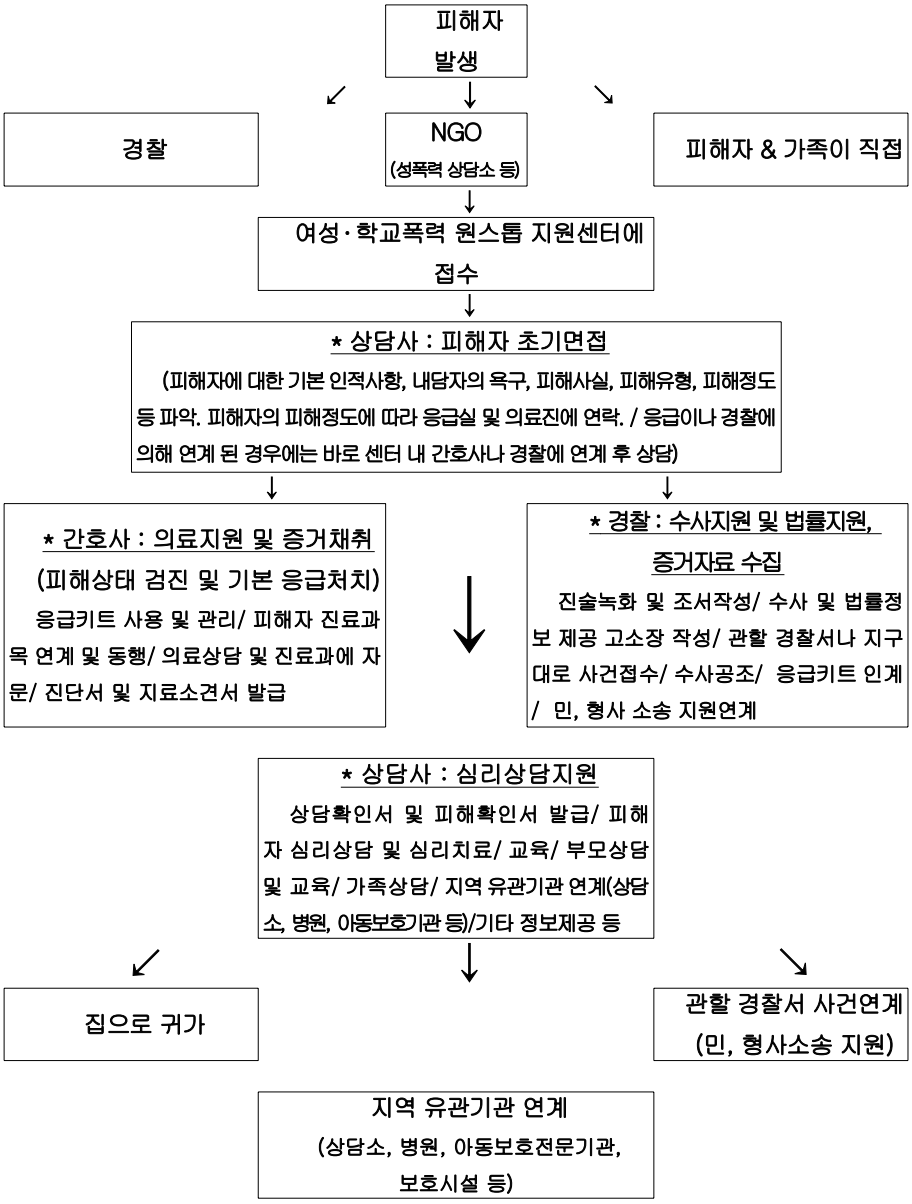

〈그림 Ⅲ-14〉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업무체계도

출처 : 여성가족부(2007).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업무매뉴얼.

바) 운영 실적

전체 운영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06년 4,764건에서 2007년에는 9,352건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피해자수는 2006년 대비 2007년에 4,588명(96.3%)이 늘어났고 지원건수는 13,537건(92%)이 증가하였다.

피해유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성폭력 혹은 아동 성폭력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4,764건 중 2,868건(60.2%), 2007년에는 9,352건 중 5,701건(60.9%)으로 10건 중 6건이 성폭력 피해자였다.

〈표 Ⅲ-16〉 피해 유형 및 지원 내용(06년~07년)

구분	피해유형(명)						지원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진료	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자조서
2006	4,764	2,868	1,284	226	48	338	14,699	7,386	3,592	1,123	542	2,056
2007	9,352	5,701	2,463	336	105	7,474	28,236	14,546	6,229	2,117	1,198	4,146

출처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내부자료(2008.7.7)

지역별 운영 실적을 보면 2008년 5월말 현재 전국에 있는 15개 센터에서 총 4,001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총 13,440건의 지원을 실시했다. 센터를 이용한 피해자 수는 인천 인천의료원이 554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지원 건수는 서울 경찰병원이 2,12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7〉 지역별 운영실적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대전	전북	광주	경북	경남	제주
센터 병원	15	경찰 병원	부산 의료원	대구 의료원	인천 의료원	동강 병원	아주대 병원	의정부 의료원	강원대 병원	청주 의료원	충남대 병원	전북대 병원	조선대 병원	안동 의료원	마산 의료원	한라 병원
피해자 수	4,001	403	336	356	554	134	268	150	176	295	286	151	250	145	348	149
지원 건수	13,440	2,128	1,211	1,156	1,499	508	1,853	608	431	794	703	512	840	336	605	256

출처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내부자료(2008.7.7)

사) 아동 성폭력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9월 18일부터 25일 동안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협조를 얻어 전국에 있는 15개 센터에 팩스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센터의 일반 현황과 아동 성폭력 지원 현황과 관련된 것이었고, 15개 센터 전수가 조사에 응답했다. 응답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담당업무는 수사 및 법률지원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3.9세, 평균 근무경력은 17.3개월이었다.

(1) 일반 현황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위치는 응급실 옆에 위치한 센터가 6개소, 응급실 옆에 위치하지 않는 센터가 9개소로 나타났다. 응급실 옆에 위치하지 않는 센터의 경우는, 응급실이 있는 건물에 다른 층에 위치하거나 별관 등 별도 건물에 위치하는 등 응급실과는 거리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시설 설비 현황을 보면 의료실, 진술녹화실, 성폭력응급키트는 15개 센터에 모두 구비되어 있었다. 상담실(12), 피해자대기실/안정실(10), 원격대질조사시스템(13), 디지털씨비코(10) 등도 대부분 센터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심리평가실 혹은 심리치료실은 한군데를 제외한 14개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설비 현황을 볼 때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공간적으로 심리치료나 심리평가 등 보다 증거 채취, 진술녹화 및 조사작성 등 의

료 및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에 용이함을 알 수 있다.

〈표 Ⅲ-18〉 센터 일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응답 결과	
센터위치	응급실 옆에 있음	6	
	응급실 옆에 없음	9	
시설 설비 유무		없다	있다
	상담실	3	12
	심리평가실/심리치료실	14	1
	피해자대기실/안정실	5	10
	의료실	0	15
	진술녹화실	0	15
	사무실	1	14
	해부학적 인형	0	15
	원격대질조사 시스템	2	13
	디지널씨비코	5	10
	성폭력응급키트	0	15

(2) 센터 내원 아동 성폭력 피해자 특성

아동 성폭력 피해자 특성은 13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로 한정하여 질문하였는데, 2007년 한 해 동안 센터에 접수되었던 전체 피해자 수는 평균 591명이었고, 이 중 성폭력 피해자는 평균 376명으로 전체 피해자 수의 63.6%를 차지하였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 수는 58명이었는데 이는 전체 피해자 수의 9.8%, 전체 성폭력 피해자 수의 15.4%로 센터를 이용했던 피해자 10명 중 한 명,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한 명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로 볼 수 있다.

〈표 Ⅲ-19〉 아동 성폭력 피해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인원수(평균)
전체 피해자 수	591
전체 성폭력피해자 수	376
아동 성폭력피해자 수	58

성폭력 피해 아동이 센터에 내원한 시간대를 보면, 오후 12-18시에 성폭력 피해 아동이 가장 많이 내원했다고 응답한 센터가 10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성폭력피해아동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50%이상이 18시 이후에 센터를 내원하는 것[35]과 비교하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원시점과 응급키트를 통한 증거채취 여부에 대해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내원하여 응급키트를 사용하여 증거를 채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전체 15개 센터 중 9개소에서 응답하였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센터 내원 경로는 경찰서를 통해서가 15개소 중 10개소(2/3)가 응답하였고, 부모나 친지에 의해서, 성폭력 상담소 혹은 보호시설에 의해서가 나머지를 차지하였다.

피해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가장 많다고 응답한 센터가 10개소였고, 그 다음은 유사강간(4개소) 순이었다. 피해아동 연령대의 경우 만 7세 이하가 평균 13명, 만 8세 이상-만 13세 이하(초등학생)은 평균 45명이어서 센터를 내원하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 중 2/3 정도가 8세-13세 이하(초등학생)에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경찰청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2008년 상반기 현재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지원된 성폭력 피해자 3,317명 중 18시 이후 내원한 경우는 1,771명으로 53.4%에 이른다고 했다.

〈표 Ⅲ-20〉 센터 내원 성폭력 피해 아동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응답 결과
내원시간대	오전 (6시-12시)	2
	오후(12시-18시)	10
	저녁(18시-24시)	2
	새벽(0시-6시)	1
내원시점과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채취 여부	피해를 당한 직후여서 응급키트를 통한 증거채취가 가능하다	4
	시간이 많이 흐른 뒤라 응급키트를 통한 증거채취가 불가능하다	9
	기타	2
내원 경로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서	2
	부모, 친지 등이 직접 알고서	3
	경찰서를 통해서	10
피해 범죄 유형	강간	1
	유사강간(구강성교, 항문성교)	4
	강제추행(성기추행, 신체추행, 패해자성기노출, 가해자성기노출)	10
피해 아동 연령대	만7세 이하	평균 13명
	만8세 이상- 만13세 이하(초등학생)	평균 45명

(3) 아동 성폭력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아동 성폭력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면 법률 및 수사지원과 관련해서는 녹화진술, 조서 작성, 고소장 작성 등이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었고, 수사진행 상황 확인, 법률자문, 고소장 접수, 수사공조, 조사동행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조사동행을 제공하고 센터는 전체 15개소 중 1/5 정도였다.

의료지원에서는 산부인과 및 항문외과 진료, 법의학적 증거채취, 외래진료 안내 및 동행이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었고 정신과 진료도 상당수의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내원하지 않기 때문에 응급키트를 갖고 증거채취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것에 비춰 보면 응급키트 사용을 통한 증거채취가 15개소 중 13개소에서 이

뤄지고 있는 것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료지원과 관련한 병원으로부터의 협조 여부에 대해선 충분히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4점으로 할 때, 산부인과는 3.93점, 정신과는 3.26점였고 그 외 다른 진료과목은 3.78점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병원으로부터의 협조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지원에서는 피해 가족 상담, 피해 아동 상담, 관련 기관 정보 안내, 관련 기관 연계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

〈표 Ⅲ-21〉 아동 성폭력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제공여부	
		있다	없다
법률 및 수사지원	녹화진술	14	1
	조서작성	13	1
	법률자문	6	8
	고소장작성	13	1
	조사동행	3	11
	수사진행상황확인	7	7
	고소장접수	6	8
	수사공조	6	8
	기타	1	14
의료지원	의료적 진단 및 평가	8	6
	산부인과 및 항문외과진료	13	1
	정신과진료	10	4
	법의학적 증거채취 (응급키트사용)	13	1
	외래진료 안내 및 동행	13	1
	기타	1	14
상담지원	피해아동상담	13	1
	패해가족상담	14	1
	심리치료	2	12
	관련기관 정보안내(기관명, 기관의 서비스 등 소개)	11	3
	관련기관 연계(실무자와 직접 통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연결)	11	3
	기타	1	14

전체적으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내원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볼 때 녹화진술, 조서 작성, 고소장 작성, 산부인과 및 항문외과진료, 법의학적 증거채취 등의 의료적·법률적 지원은 대부분의 센터에서 제공되고 있었고,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센터는 2개소에 불과해서 심리정서적 지원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부기관과의 연계에 있어서, 센터 외부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선 15개 센터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외부기관을 이용한 연계 경험을 보면, 평균적인 이용경험이 50% 이하여서 외부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만큼 실제 외부기관과 연계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위치한 지역마다 관련 기관의 존재 유무, 네트워크 유무 등 여건이 상이할 수는 있으나 성폭력 피해 아동이 성폭력 피해로 인해 갖게 되는 피해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센터의 인력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부기관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2〉 외부 기관과의 연계

(단위 : 개소)

구분	빈도		
센터인력이 인식하는 외부 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8(53.3)	
	필요하다	7(46.7)	
	필요하지 않다	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외부기관 활용경험		외부기관이용유무	
		있다	없다
	성폭력상담소	7	8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7	8
	아동전문신경정신과	3	12
	해바라기아동센터	7	8
	산부인과	3	12
	기타	2	13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율은 77.2%로 전체 피해자의 고소율 5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 고소율

(단위 : %)

2007년 전체 피해자의 고소율	53.4
2007년 아동 성폭력피해자의 고소율	77.2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일반경찰서보다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이용할 경우의 장점에 대해, 일반 경찰서에 비해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7명), 상담·진료·조사 등이 한꺼번에 제공되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7명),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4명), 경찰서 출입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된다는 점(3명) 등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제약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경찰관이나 상담사 모두 아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13명)이었다. 특히 응답자가 수사 및 법률지원 담당자였기 때문에 주로 성폭력 피해 아동으로부터 진술을 받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아동 성폭력 피해로 인해 보이는 불안감, 과민반응, 아동의 표현방법이나 행태, 아동과의 관계 형성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사건 정황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부모가 동석할 경우 부모로 인해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했다.

아동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센터 내 기존 인력의 아동 성폭력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 실시(6명), 아동진술과정에 아동심리전문가의 참여(2명) 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4) 센터 인력의 아동 성폭력 관련 교육 훈련 현황

센터 인력의 아동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여부를 질문한 결과 경찰관과 상담사는 15개 센터 중 10개소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간호사는 2개소만 교육을 이수했다고 응답했다.

〈표 Ⅲ-24〉 센터 인력의 아동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단위 : 개소)

센터인력	아동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있다	없다
경찰관	10	5
상담사	10	3
간호사	2	8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질문한 결과 경찰관의 경우는 10명의 응답자가 성폭력 수사과정을 통해 교육받았다고 응답했고, 진술녹화교육 등과 같이 특화된 내용에 대한 교육 이수 경험은 2명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는 9명의 응답자가 원스톱 센터 상담원 보수교육을 통해 교육받았다고 했고 아동 성폭력에 특화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2명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간호사는 1명만이 응답했는데 그나마도 아동 성폭력 관련 교육이 아닌 일반 성폭력 상담 및 장애인 성교육 관련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때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아동 성폭력 전담기구는 아니지만, 소수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라 해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전문적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외국 사례 분석[36]

여러 나라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전문분야간 협력(Multi-Disciplinary Team, 이하 MDT) 형태의 통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DT는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안적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형사법적 과정의 모든 단계를 혼자가 아닌 여러 도움과 지지를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어서, 서비스 제공과 증거수집에 더욱 효과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시킬 가능성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배려받고 지지받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경찰에 고발하고 기소과정에 충실히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37].

MDT 모델의 장점은 첫째 아동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둘째 MDT를 구성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 간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셋째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며, 넷째 훈련을 통해 보다 유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다섯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MDT가 원활히 운영되면 관계자들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MDT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별도 공간을 갖춘 센터 형태도 있고 병원이나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센터나 팀 형태로 형성되어 있기도 한다.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센터의 경우 면담이나 의료 검사,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관련 기관에서 팀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면서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36) Multi-Disciplinary Team(MDT)와 관련해서는 Ells, M. (2000). *Forming a Multidisciplinary Team To Investigate Child Abuse.*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을 참조함.

37) The Report of the Michigan Sexual Assault Systems Response Task Force. (2001). *The Response to Sexual Assault: Removing Barriers to Services and Justice.*

MDT는 경찰, 피해 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가(전문기관), 검찰, 의료인 등이 필수 구성원이 되고 필요에 따라 정신의료전문가,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문가, 법원에서 지정한 대리인(대변인),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어떤 전문가라도 팀 구성을 요청할 수 있고 사안별로 어떻게 팀을 구성해서, 어떤 과업을 수행하고, 그것을 위해 역할을 나눌 것인지, 개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 대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서비스 제공 이후의 평가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 과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MDT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CAC모델과 SART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CAC(The Children's Advocacy Center) 모델[38]

가) 운영 목표

CAC 모델의 일차적 목표는 아동이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개입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각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과 가족의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분야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둘째, 아동에게 친근하고 동시에 안전감을 줄 수 있는 면담 장소 등의 시설을 구비한다. 셋째, 여러 전문가들이 피해 아동에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그로 인한 또 다른 정신적 외상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넷째, 아동과 가족을 위한 정신 건강 치료와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여러 전문가들과 정부기관 관계자들 간의 개방적인 의사교환 체계를 형성 유지한다. 여섯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사(조사)와 아동 보호, 치료 등을 조정한다. 일곱째, 기소율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여덟째, 여러 전문가/기관들을 훈련, 교육시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 기술을 익힌다. 이를 위해 지역에 있는

38) CAC 모델과 관련해서는 The National Children's Advocacy Center. http://www.nationalcac.org/, http://www.chicagocac.org/, http://www.cacplano.org/, http://www.cactx.org/의 내용을 참고함.

CAC들을 관리하는 NCAC(The National Children's Advocacy Center)가 각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아홉째, CAC 모델은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고 시행된다.

나) 구성

CAC 모델은 조사(investigate)와 치료(treat), 기소(prosecute)를 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결합하여 협력하여 개입하는 MDT 형태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찰, 아동 보호기관, 검찰, 정신보건 전문가, 의료전문가, 피해자 옹호자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협력하면서 피해 아동 중심으로 효과적인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효과

CAC 모델이 활성화된 지역사회에서는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조사와 면담을 줄임으로써 아동에게 또 다른 정신적 외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며, 더욱 효과적인 의료, 정신보건 치료 등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다. 또한 기소율을 높일 수 있으며, 피해 아동과 그들의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 서비스 내용

□ 초기 접수(intake)

접수된 사건에 대해 센터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고, 의료적 지원, 법적 면담 등과 관련된 일정을 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센터에 요청하는 사항이나 이들의 현재 상황이나 욕구 등을 파악하여 MDT에게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 아동 법정면담(Child Forensic Interview)

훈련된 전문가가 하는 것으로 아동범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아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아동에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그 사건에 대해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서 안심시킨다. 아동면담전문가는 NCAC에서 별도로 교육 훈련을 받는데, 아동의 발달 수준과 의사소통의 수준에 적합한 법정 질문을 사용하고 면담을 통해 아동이 심도 있는 반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바로 그 옆방에서 경찰, 아동보호서비스 전문가, 변호사, 임상전문가 혹은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전문가 등이 그 상황을 관찰하고, 면담 전문가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찰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다.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함으로써 면담의 횟수를 줄이고 사건/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 의료지원서비스 (Medical service)

법의학 전문 간호사가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법의학 감정을 할 수 있는 전문 간호인력에게 의료지원을 받는다.

□ 정신보건 서비스 (Mental health service)

범죄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활용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이 이뤄진다. 12세 이하 아동, 12-17세 청소년, 자살시도 혹은 정신적 문제를 보이는 경우 등 대상별로 혹은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가족지원서비스 (Family Assistance Service)

피해 당사자가 아닌 양육자(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신체적 안전의 확보와 양육자와 아동 간의 가족적 연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양육자의 역할에 대해 교육시키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이외에 다른 다양한 자원체계와 연계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법정지원서비스 (Court service)

일반적인 법정 지원서비스 이외에 가족들이 특별한 욕구가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정 동행, 법적 절차 및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등을 제공하며 법적인 절차가 시작됨과 동시에 3년간은 그 사례를 관리한다.

□ Child life 서비스

CAC 센터를 방문한 피해 아동이 편안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 면담을 하기 전에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숙련된 전문가가 아동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매우 안전한 공간에 있음을 알려줘서 편안한 상태로 면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며 그 결과를 MDT 관계자들에게 제공한다.

□ 사후관리 서비스 (Case Tracking)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CAC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아동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법적 진행상황 등도 확인이 가능하며 이후 CAC 센터에서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평가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요 및 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파악하는데도 활용된다.

□ 상호 방문 서비스 (Site Visiting)

CAC 센터들 간에 상호 방문하는 서비스로 새로운 센터가 설립되고 3년 동안 매년 이뤄진다. CAC 센터 관계자뿐만 아니라 MDT에 속하는 다양한 전문가들도 함께 하며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발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교육훈련 서비스 (Traing)

CAC 센터 관계자뿐만 아니라 MDT에 속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기적인 컨퍼런스, 법정면담 훈련, 팀리더십 훈련, 사례개입 훈련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MDT에 속한 전문가들 간에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2) SART(Sexual Assault Response Team) 모델[39]

SART는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모델로, 성범죄 피해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든, 범죄 피해자의 주요 거주지가 어디인지와는 상관없이 일관되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기반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보다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하며, 명확한 의사소통을 토대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SART 모델이 이를 가능케 한다고 전제한다. 즉 팀을 이루어 대응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반복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전문가들 사이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40].

SART 모델은 기존의 시스템 중심의 개입방식 대신 피해자 중심의 개입에 기반한다. 피해자 중심 방식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범죄 피해자의 의견, 권리를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의사결정이 충분히 고려되는 것으로, 형사법적 체계가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며, 지지받으며, 성범죄 피해자 스스로의 의견이 개입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운영목표[41]

SART는 위기 개입과 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킨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섬세한

---

39) Ledray, L. E. (1999).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Development & Operation Guide.* Sexual Assault Resource Service: Minneapolis, Minnesota.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for Victims of Crime.

40) Ledray, L. E. (1999).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Development & Operation Guide.* Sexual Assault Resource Service: Minneapolis, Minnesota.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for Victims of Crime.

41) The Alaska Children's Cabinet. *Alaska Statewide Protocols for Sexual Assault Response Teams.*

공동의 접근을 취한다. 그리고 범죄의 조사와 수사를 수행하고 해당 범죄의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한 법정 증거를 수집・보존하며 이를 문서화한다.

나) 구성

SART은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적 및 법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연합하여 구성된 팀이다. SART은 경찰, 검찰,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법의학 전문가, 피해자를 대변해 줄 지역 피해자 서비스 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조사, 법적 진행, 증거채취 그리고 피해자 지지를 담당한다.

구성원별 역할을 살펴보면,[42] 경찰, 형사, 검사 등은 피해자의 즉각적 안전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면담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용의자를 체포한다. 필요하다면 용의자의 법정 신체검사(forensic examination)를 조율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정 절차에 참여하며, 수사와 법집행과 관련된 여러 다른 의무들을 수행한다.

법의학 전문가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검사를 수행하고, 법정 증거를 수집, 문서화, 보존하며, 피해자가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건강상의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의료 기록을 문서화하고, 법정에서 전문가 진술을 수행한다.

피해자 대변인은 피해자를 지지해주고,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면담과 신체검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범죄 조사나 증거 채취 등에 참여하지 않고 전체 조사과정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지와 지원을 해주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면담과정에 참여하거나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

42) 전서와 동일

다) 구비 시설[43]

SART가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은 법정 신체검사와 면담에 이용될 시설, 피해자에게 필요한 우선적인 치료와 사생활 보고, 안전 등이 가능한 시설 등이 갖춰지고 유지되어야 한다.

라) 서비스 내용[44]

경찰 등이 성폭력 범죄 현장에서 신고 받고 현장에 나갈 경우 그들은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현장의 증거를 보존하며 성범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약간의 진술을 피해자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병원응급실로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은 응급실에서는 법의학 전문가(법의학 간호사도 포함)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등에게 연락한다. 경찰과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법의학 전문가는 피해자가 즉시 의료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법정 신체검사가 필요한지 결정한다. 만약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치료를 진행하고 치료가 끝나면 검사실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피해자가 애초에 응급실로 들어오면, 응급실에서는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경찰 등에 연락을 하고, 이때 법의학 전문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게도 연락한다. 몇몇 주에서는 검사에게도 연락을 하기도 한다.

경찰, 법의학 전문가,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등은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질문을 줄이기 위해 질문을 논의한 후 피해자에 대한 심도있는 인터뷰에 들어간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두 명의 지지자와 동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다. 인터뷰 진행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45] 하나는 경찰 등

---

43) 전서와 동일

44) Ledray, L. E. (1999).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Development & Operation Guide*. Sexual Assault Resource Service: Minneapolis, Minnesota.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for Victims of Crime.

이 인터뷰를 담당하고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된다. 법의학 전문가,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등도 모두 인터뷰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데, 지원기관 관계자는 인터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법의학 전문가는 법의학 감정에 필요한 질문들을 직접 하고 이후에 경찰에게 법의학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또 다른 하나는, 경찰 등이 범죄피해자와 직접 인터뷰를 행하고,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법의학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는 방식이 있다.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법적인 조사를 위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법의학적 감정을 하는 동안 동행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인터뷰 질문을 행하거나, 그들을 대신해서 질문에 응답을 하지는 않는다.

면담 조사가 완료된 후, 경찰은 검사실 바깥에 머무르는 동안 성범죄 전담 법의학 전문가는 법의학 감정을 실행하게 된다. 이들은 증거를 채취 및 보관하고, 채취된 정보를 기록한다. 그리고 처방전을 제공한다. 처방전은 사후 시행되어야 하는 의료적인 보호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의료적 보호로는 범죄로 인해 입은 상해 관련 평가, 법의학 영상촬영, 범죄행위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예방, 임신예방 등이 포함된다. 채취된 증거는 경찰 등에 즉시 건네지거나 후에 법집행자가 가지러 올 때까지 안전한 곳에 보관된다.

신체검사가 완료된 후에 법의학 전문가는 필요한 다른 의료 지원이 필요하면 의사와 약속을 잡아주고,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는 필요한 상담이나 법적 지원을 해 줄 사람과 약속을 잡는다. 피해자는 집으로 이송되거나 가족 구성원 혹은 친구들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송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경찰이 대기하거나 다른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범죄피해자를 집으로 이송시키거나,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송할 수 있다.

---

45) Phyllis Barkhurst 외(2002). *Sexual Assault Task Force Handbook*

다. 소결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3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센터별로 의료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등이 제공되는데 인력과 조직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서비스는 주로 정신과, 산부인과 등의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의 비중이 높으며 법률지원은 법률상담이나 자문 정도로 상대적으로 법률 및 수사지원의 비중은 낮았다.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은 아니나 센터 이용자 10명 중 1명 정도, 센터를 이용했던 성폭력피해자 10명 중 한명이 아동 성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은 주로 강제추행에 의한 경우가 많았고 ⅔가 8-13세 이하였다.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녹화진술, 조서 작성, 고소장 작성 등의 법률·수사지원, 산부인과 등 의료지원 등이 많았다. 아동 성폭력만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경찰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교육 훈련 경험이 적었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 면담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전문가의 개입 혹은 아동 성폭력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외국 사례를 살펴본 결과, 아동 성폭력 피해자 혹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협력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MDT 모델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형사법적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지 않고 배려받고 존중받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소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MDT 모델 사례로 살펴본 CAC 모델은 이러한 형사법적 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SART 모델은 형사법적 과정에 비중을 두는 모델로 이해될 수 있다.

MDT 모델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긴밀한 상호 협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을 통해 조사, 증거수집,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각자의 전문 기술과 경험에 기반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아동과 가족들에게 반복 진술, 정신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며, 조사과정 동안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다 적절한 개입을 통해 이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자의 역할과 과업, 전체적인 진행과정,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갈등중재, 평가 등에 관한 정교한 매뉴얼을 갖고 그에 따라 서비스가 이뤄진다.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해 형사법적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각의 전문역량의 향상 뿐 아니라 MDT에 속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한 상호 이해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MDT는 형태도 다양해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이 구비된 센터 형태도 있지만 병원이나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팀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그리고 외부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아동성폭력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MDT 방식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 내용상으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CAC 모델은 우리나라의 해바라기아동센터에 가깝고 SART 모델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CAC 모델은 아동을 위한 센터를 전제로 해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시설이 구비된 물적 기반을 토대로, 형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서비스와 그 외에 다양한 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도 진술녹화, 증거채취 등이 이뤄지기는 하나, 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고 의료적 지원이나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SART 모델은 센터와 같은 물적 토대를 갖추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 각 기관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증거채취, 조사 등에 집중하고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는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이렇게 운영될 경우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고 언제어디서든지 관계자들이 모일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역시 경찰,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진술녹화, 고소장 작성, 조서 작

성, 성폭력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채취 등의 법률수사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SART 모델과 달리 센터를 거점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CAC의 경우 전국에 약 400여개 운영되고 있어서 피해 아동과 가족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바라기아동센터는 3개소,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1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두 기관 모두 2009년에 확충될 것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데는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센터를 계속 늘리는 것은 예산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가능한 것도 아닐 수 있다. 따라서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센터라는 물적 토대를 갖추는 방식 이외에도 다각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센터들은 센터 내부에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배치하여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는 차원에서의 원스톱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다. 한 곳의 센터에서 제공된다는 차원에서 원스톱일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나의 센터 안에 모든 필요 인력을 구비하는 방식으로는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영역 전반으로 보면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살리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원스톱 서비스라고 했을 때 기대되는 것은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일텐데 현재는 센터 안에서의 원스톱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형사법적 체계도 경찰, 검찰, 법원으로 나뉘어 있고 피해자 지원체계도 여성부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센터를 거점으로 관련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 실제 원스톱 지원을 하려면 각각의 기관이 시스템 차원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각각의 센터가 현재 구축된 인력과 설비 등을 토대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CAC 모델과 SART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법정면담은 피해아동을 통해 직접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과정인데, 아동 성폭력 피해

자의 면담에 대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에 의해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변호사, 법의학 전문가, 피해자 지원기관의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요한 사항을 모두 수집했는지, 적절한 질문이 이뤄졌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할 지 등에 대해 논의가 되어 여러 번의 면담이 이뤄지는 것을 최소화한다. 면담진행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경찰이 주도하고 경찰이 전달하는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는 방법과 경찰과 전문가가 같이 주도하고 함께 분석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이때 피해자 지원(대변)기관의 관계자는 동석하여 피해자가 안정감을 갖고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경찰, 검찰 등이 함께 하여 협업함으로써 반복 진술, 2차·3차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정신과 등의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조사와 관련된 비중은 높지 않았고 임상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법의학 간호사, 놀이치료사 등 동석하는 사람도 센터별로 다양했다. 동석할 경우 진술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반대로 녹화진술, 고소장 작성 등의 법률수사지원의 비중이 높고 경찰이 직접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아동 녹화진술과 관련된 전문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고, 관련 전문가의 개입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면담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반복되는 진술로 인해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기 면담이 충분히 제대로 이뤄져서 재차 진술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전문가나 또는 법정에서 의문을 표시할 만한 과정으로 이루어져서 피해자 진술을 다시 받는다거나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받더라도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그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에서 다시 피해자 진술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센터별로 진술녹화 진행방식을 개발하고 표준화하여 보급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의 투입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찰, 검찰

등과의 반복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외부 기관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MDT 모델은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는데, 종료 후에도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사후관리를 통해 축적된 정보와 자료들은 MDT를 기반으로 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활용된다.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도 피해 아동과 가족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에 비해 실제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처럼 다양한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반복 진술 등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이들의 욕구와 문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지원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이중삼중의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개별 센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전체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속에서 각 센터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것인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3.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

아동 성폭력 예방이라고 하면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미리 막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교정하는 일련의 형사사법 당국의 조치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아동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게 하거나, 범죄자가 장래에 재범을 행하지 않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면 이러한 사법당국들의 조치들은 아동 성폭력 예방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적 조치들은 앞 장에서 다루는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순수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범죄예방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후 살해사건이나 제주도 서귀포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해 사건,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 등이 성범죄 경력을 가진 이웃집 어른들에 의해 저질러진 점을 감안할 때 아동보호 차원에서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46]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2008. 7. 30.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동향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거주지역과 가까운 거리 안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법원에 의해 형 확정 판결을 받은 965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거주지역과 근접한 거리 안에서, 방과 후 오후 시간대(13시-18시)에, 모르는 사람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놀이로 유인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쉽게 유인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7]

---

46)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 이후, 일명 혜진・예슬법으로 알려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아동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하한에 대한 전반적인 상향 조정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해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그 위치를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전자발찌법'으로 알려진 「특정 성폭력범죄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되고,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아동 성폭력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의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하한의 상향 조정은 법원에서의 형 선고 시 여러 작량 감경사유의 고려로 그 효과가 감쇄되는 면이 있고, 전자발찌법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관계로 법 시행 전의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것만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지 모른다.

아동대상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에 정부차원에서도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합동 추진체인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하고,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2008. 4. 30 발표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목표 아래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강화, 신속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성폭력 범죄자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아동 유해 성장 환경 개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구축이라는 7개의 정책과제를 두고 있다.[48]

이하에서는 공식통계를 통하여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동향을 분석한 뒤, 아동범죄 예방과 관련된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들 내용들이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아동들을 성폭력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47)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 2008. 7. 30.
48)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2008. 4. 30.

지킬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공식통계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아동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07. 1-6월 중 형이 확정된 965건의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거주지역과 근접한 거리 안에서, 방과 후 오후 시간대(13시-18시)에, 모르는 사람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놀이로 유인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쉽게 유인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피해 아동 · 청소년의 성별

분석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총 1,226명으로, 대부분의 피해 아동청소년은 여자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표 Ⅲ-25〉 성범죄 유형별 피해 아동 · 청소년의 성별

(단위: 건(%))

성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남자	-	38(8.9)	7(1.4)	2(5.4)	47(3.8)
여자	275(100.0)	391(91.1)	478(98.6)	35(94.6)	1,179(96.2)
계	275(100.0)	429(100.0)	485(100.0)	37(100.0)	1,226(100.0)

2) 피해 아동 · 청소년의 연령

피해 아동 · 청소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 16세 이상이 각각 30.3%와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7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으로 28.2%로 나타났다. 이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13세 이상 16세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이보다 어린 연령층인 7세 이상 13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분포가 범죄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6〉 성범죄 유형별 피해 아동 · 청소년의 연령

(단위: 건(%))

피해자 연령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7세미만	4(1.5)	35(8.2)	-	-	39(3.2)
7세이상-13세미만	68(24.7)	265(61.8)	13(2.7)	-	346(28.2)
13세이상-16세미만	104(37.8)	67(15.6)	195(40.2)	5(13.5)	371(30.3)
16세이상	99(36.0)	62(14.5)	277(57.1)	32(86.5)	470(38.3)
계	275(100.0)	429(100.0)	485(100.0)	37(100.0)	1226(100.0)

3) 범행 발생 장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 발생장소는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특히 강간의 경우는 자동차 안, 강제추행의 경우는 찜질방, 놀이터, 학교 등이 범죄 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집,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피해자에게 친숙한 환경에서 13세 미만 강간 30.6%, 13세 이상 강간 25.6%, 13세 미만 강제추행 15.0%, 13세 이상 강제추행 18.6%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의 범위를 가해자의 집으로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13세 미만 강간 52.8%, 13세 이상 강간 46.3%, 13세 미만 강제추행 29.0%, 13세 이상 강제추행 29.5%로 나타났다.

〈표 Ⅲ-27〉 13세 미만에서의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행 장소

(단위: 건(%))

연령	범행 장소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13세 미만	길(대로, 골목)	3(4.2)	45(15.0)	-	48(12.5)
	공원, 야산 등	3(4.2)	22(7.3)	-	25(6.5)
	유흥주점, 노래방 등	-	1(0.3)	-	1(0.3)
	여관(숙박업소)	1(1.4)	3(1.0)	9(69.2)	13(3.4)
	피해자의 집	12(16.7)	24(8.0)	-	36(9.4)
	가해자의 집	16(22.2)	42(14.0)	2(15.4)	60(15.6)
	피해·가해자 공동주거지	10(13.9)	21(7.0)	-	31(8.1)
	제3자의 집	4(5.6)	14(4.7)	-	18(4.7)
	자동차 안	9(12.5)	15(5.0)	2(15.4)	26(6.8)
	찜질방	-	24(8.0)	-	24(6.2)
	놀이터/학교운동장	1(1.4)	21(7.0)	-	22(5.7)
	기타	13(18.1)	68(22.7)	-	81(21.0)
	계	72(100.0)	300(100.0)	13(100.0)	385(100.0)

4) 범죄 발생 시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시간을 살펴보면, 오후와 밤 시간대에 비슷한 비율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는 밤(19-24시)에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78건, 32.2%), 강제추행범죄는 오후(184건, 49.1%)에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으며, 성매수는 밤(171건, 43.7%)에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표 Ⅲ-28〉 성범죄 유형별 범행 발생 시간

(단위: 건(%))

범행발생시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	
새벽(1-6시)	72(29.8)	66(17.6)	89(22.8)	-	227(22.2)
오전(7-12시)	28(11.6)	52(13.9)	36(9.2)	-	116(11.4)
오후(13-18시)	64(26.4)	184(49.1)	95(24.3)	3(23.1)	346(33.9)
밤(19-24시)	78(32.2)	73(19.5)	171(43.7)	10(76.9)	332(32.5)
계	242(100.0)	375(100.0)	391(100.0)	13(100.0)	1021(100.0)

* 미상 205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 범행시간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13세 미만 강간의 경우는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37.9%가 발생해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고, 13세 이상 강간의 경우는 저녁 7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강간범죄가 67.4%가 발생하고 있어, 13세 미만의 동일한 시간대의 44.8% 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강제추행의 경우도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60.2%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13세 이상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저녁 7시에서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58.6%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동일한 시간대에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27.4%가 발생하고 있고 연령에 따른 차이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3세 미만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오후 시간대에 피해자 집과 집주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우선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받아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표 Ⅲ-29〉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범행 시간

(단위: 건(%))

피해자의 연령	범행시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13세미만	새벽(1-6시)	9(15.5)	33(12.7)	5(41.7)	47(14.3)
	오전(7-12시)	10(17.2)	32(12.4)	3(25.0)	45(13.7)
	오후(13-18시)	22(37.9)	156(60.2)	1(8.3)	179(54.4)
	밤(19-24시)	17(29.3)	38(14.7)	3(25.0)	58(17.6)
	계	58(100.0)	259(100.0)	12(100.0)	329(100.0)

* 미상 181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5)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행 당시 처음 본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956명(78.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네 사람이 각각 64명(5.3%), 56명(4.6%)으로 많았다. 친부나 의부, 모의 동거인, 친오빠 등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합쳐 7.2%로 나타났고,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그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친부에 의한 경우 39명(3.2%), 의부에 의한 경우 30명(2.5%), 모의 동거인에 의한 경우 2명(0.2%), 친척에 의한 경우 15명(1.2%), 친오빠인 경우가 1명(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범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네 가지 범죄유형 중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171명(62.2%)으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친부, 의부, 모의 동거인 등에 의한 경우가 47명(17.3%)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제추행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자가 안면이 있는 동네 사람과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 범죄는 99.2%가 가해자와 피해 아동·청소년이 모르는 사이인 경우였고, 성매

수 알선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경우가 25명(67.6%)으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Ⅲ-30〉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 건(%))

관계	죄명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	
모르는 사람	171(62.6)	295(69.6)	478(99.2)	12(32.4)	956(78.6)
친부	19(7.0)	20(4.7)	-	-	39(3.2)
의부	19(7.0)	11(2.6)	-	-	30(2.5)
모의 동거인	2(0.7)	-	-	-	2(0.2)
친척	7(2.6)	8(1.9)	-	-	15(1.2)
친구	2(0.7)	2(0.5)	-	-	4(0.3)
동네 사람	23(8.4)	31(7.3)	2(0.4)	-	56(4.6)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사람	11(4.0)	26(6.1)	2(0.4)	25(67.6)	64(5.3)
친오빠	-	1(0.2)	-	-	1(0.1)
부모의 친구	8(2.9)	11(2.6)	-	-	19(1.6)
친구의 아버지	5(1.8)	9(2.1)	-	-	14(1.2)
기타	6(2.2)	10(2.4)	-	-	16(1.3)
계	273 (100.0)	424 (100.0)	482 (100.0)	37 (100.0)	1216 (100.0)

* 미상 10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는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부, 의부 등 동거인에 의한 범죄 가해비율은 13세 미만 강간 22.2%, 13세 미만 강제추행 7.5%로 나타나, 13세 이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12.0% 및 7.0%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울러 동네 사람에 의한 13세 미만 강간과 강제추행도 각각 16.7%와 9.4%를 보여줌으로써 단일 집단으로써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동네 주변의 이웃이 매우 위험한 계층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31〉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 아동·청소년 간의 관계

(단위: 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13세 미만	모르는 사람	32(44.4)	197(66.3)	12(100.0)	241(63.3)
	친부	5(6.9)	15(5.1)	-	20(5.2)
	의부	9(12.5)	7(2.4)	-	16(4.2)
	모의 동거인	2(2.8)	-	-	2(0.5)
	친척	1(1.4)	4(1.3)	-	5(1.3)
	동네 사람	12(16.7)	28(9.4)	-	40(10.5)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사람	3(4.2)	23(7.7)	-	26(6.8)
	부모의 친구	5(6.9)	9(3.0)	-	14(3.7)
	친구의 아버지	2(2.8)	7(2.4)	-	9(2.4)
	기타	1(1.4)	7(2.4)	-	8(2.1)
	계	72(100.0)	297(100.0)	12(100.0)	381(100.0)
13세 이상	모르는 사람	139(69.2)	98(77.2)	466(99.1)	703(88.1)
	친부	14(7.0)	5(3.9)	-	19(2.4)
	의부	10(5.0)	4(3.1)	-	14(1.8)
	친척	6(3.0)	4(3.1)	-	10(1.3)
	친구	2(1.0)	2(1.6)	-	4(0.5)
	동네 사람	11(5.5)	3(2.4)	2(0.4)	16(2.0)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사람	8(4.0)	3(2.4)	2(0.4)	13(1.6)
	친오빠	-	1(0.8)	-	1(0.1)
	부모의 친구	3(1.5)	2(1.6)	-	5(0.6)
	친구의 아버지	3(1.5)	2(1.6)	-	5(0.6)
	기타	5(2.5)	3(2.4)	-	8(1.0)
	계	201(100.0)	127(100.0)	470(100.0)	798(100.0)

* 미상 10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조직 내부를 중심으로 교사, 목회자, 고용주, 직장 상사 등을 의미

나. 현행 제도 및 운영 현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거주지역과 근접한 거리 안에서 방과 후 오후 시간대에 모르는 사람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범죄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요청됨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 사회의 현 실정을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지난 2008. 4. 30일 발표된「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49] 중 아동 보호 차원에서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관 합동의「입체적 아동 안전 시스템」구축과 관련된 대책의 추진현황을 검토해 본다.

1)「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추진상황」점검[50]

2008. 4. 30 발표한「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목표 아래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강화, 신속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성폭력 범죄자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아동 유해 성장 환경 개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구축이라는 7개의 정책과제를 두고 있다.

가)「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구축・운영

광역권(시・도)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에 아동보호기능을 추가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로 재편한 후 전국 시・군・구로 확대 개편해 나가고 있다.「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각 시・군・구별 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교육・사법・경찰・아동보호기관・여성폭력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대표로 구성하여 지역 안전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는 아동안전지킴이 및 지킴이집,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점검 및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 전개, 위기 아동・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지역치안협의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안전망

49)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2008. 4. 30.
50)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실행계획, 2008. 5. 26. 참조.

구축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나) 아동 놀이터 · 공원, 학교 내 CCTV 설치

아동유괴 및 성폭행이 아동운집 지역인 놀이터 · 공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놀이터 · 공원에 CCTV 등 방범 시설 미설치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전국의 15,240개소 중 4,822개소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68.3%가 미설치되어 있다.

〈표 Ⅲ-32〉 놀이터 · 공원에 CCTV 설치 현황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개소	15,240	2,668	2,328	849	943	746	701	467	3,513	224	401	485	382	646	369	425	93
CCTV 설치	4,822	996	135	370	323	125	196	106	1,470	62	339	214	146	171	35	127	7
미설치	10,418	1,672	2,193	479	620	621	505	361	2,043	162	62	271	236	475	334	298	86

2008. 6. 13 공포된 개정「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조항(제9조의2)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 및 도시공원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조항은 2009. 6. 14부터 시행된다.

놀이터 · 공원 등의 시설관리 주체인 지자체, 아파트 입주자회 등과 협의하여 미설치 놀이터 · 공원 총 10,418개소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08. 4. 30) 전국 2,213대를 확대 설치하는 것이 논의 중이다.

〈표 Ⅲ-33〉 설치 목표대수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치 확정	506	6	2	10	18	0	9	3	157	50	0	24	16	147	56	8	0
협의중	1,707	50	169	160	333	4	6	47	216	64	171	85	53	186	22	91	50
계	2,213	56	171	170	351	4	15	50	373	114	171	109	69	333	78	99	50

아울러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투명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희망학교의 교사 밖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08. 4 현재 1,325개교 5,333대가 설치되어 있다(12%). 향후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70% 수준(7,763/11,091개교)에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놀이터 및 공원 CCTV는 2012년까지 미설치지역(10,418개소) 전체에 설치하고, 학교 내 CCTV는 2010년까지 전국 초·중등학교의 70% 수준(7,763개교)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관련 법령의 보완이 있지만, 설치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과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고려 없이는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다)「지역 공동 안전네트워크」 구축

(1)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아동안전지킴이집은 맞벌이 및 핵가족화 등으로 보호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사회안전망 및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로 이미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부터 민간과 경찰이 협력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Safety House, McGruff House등)를 운영하고 있다.[51]

「아동안전지킴이집」은 학교 주변 등 아동 운집지역의 약국 등을 아동 안전 지킴이집으로 위촉하여 위급 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임시 보호하고 112 및 지구대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2008.5월 현재 25,85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08. 9월부터는 아동안전지킴이의 집 홈페이지(http://www.아동안전지킴이.kr/, www.childsafetyhouse.go.kr)를 개설하여 전국 지킴이집 위치 검색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제도 시행 초기 미흡했던 아동 및 학부모 대상 교육과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경찰서별 지킴이집 지도 검색 콘텐츠를 구축하여 관내 지킴이집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홈페이지와 연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업주의 50%정도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아동대상 범죄예방 및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의지 사전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여주기 식의 숫자 늘리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지역 안전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업주의 전과조회를 통한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자발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함으로써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51) 외국의 민・경 협력 아동보호제도(2008. 4. 14 경찰청 브리핑 자료)

- ▸ 호주('79년~) : 위험한 사람이 접근하거나 다치는 등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피신할 수 있는 Safety House 운영 ⇒ 영국・뉴질랜드 등 제도 확산
- ▸ 미국('82년~) :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한 아동 임시보호, 범죄의심자 경찰신고 프로그램인 McGruff House 운영 ⇒ 유타주에서 시작, 현재 44개주 확산
- ▸ 캐나다('86년~) : 블록별로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자신의 집에 임시보호, 경찰 연계하는 Block Parent(골목부모) 활성화(약 30만가구)

〈표 Ⅲ-34〉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현황

○ 지역별 설치 현황

(08. 4. 14)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855	4,706	1,980	608	926	686	869	648	4,903	1,018	827	3,107	977	1,307	1,404	1,424	462

○ 주변 장소·상가 유형별 현황

(08. 7. 31)

주변 장소별							상가 유형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아파트단지	놀이터	공원	통학로	계	24시 편의점	약국	문구점	상가	기타
25,735	5,346	12,588	3,863	1,720	1,780	438	25,735	2,173	1,514	5,140	11,047	5,861

※ 상반기 재심사 결과, 842개소 부적합 업소 해촉

(* 해촉사유는 그 문제로 제기된 신원조회를 통한 것이 아닌, 본인이 원치 않아서, 폐업이나 이사, 노령으로 인한 대처능력 미흡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함)

○ 운영실적

(08. 7. 31)

총계		범인검거·지원활동 실적												범죄예방 및 보호실적									
		계		납치·유인범		성추행범		강도·갈취범		폭력사범		기타사범		계		폭력예방		실종예방		비행선도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139	194	14	28	1	1	1	1	6	12	3	8	3	6	125	166	17	25	32	33	17	22	59	86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2) 노인 및 퇴직인력을 활용한 아동안전 확보

「아동안전지킴이」는 노인 및 퇴직 경찰 인력을 활용하여 등·하교길 및 놀이터·공원 등에 순찰활동을 하는 소지역 차원의 안전망 구축방안이다. 안양, 일산 등 아동대상 강력범죄 발생 10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전직경찰로서 신뢰성이 있고, 전문교육 없이 소양교육만으로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회원 총 120명을 선발하여 08. 5. 7-7. 31의 3개월간 아동보호가 소홀하고 하교 후 외부활동이 집중되는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지역경찰과 연계하여 놀이터·공원 등 아동대상 범죄 취약지 주변 순찰 및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활동 등을 한 "아동안전지킴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3) 배움터 지킴이 배치확대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피해 학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지킴이를 중학교, 전문계고등학교에 우선 배치하여 학교내 순회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08. 4 현재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1,023개교에 배치되어 있다. 2010년까지 전국 초·중등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4) 아동 안전 자원봉사단체 효율적 관리·운영

전국 약 45개(7,862명)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단체별 정기회의 시 지구대장이 참석하여 도우미 활동시 유의사항 등을 수시교육하고 지구대와 핫라인형성 및 명단공유로 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Ⅲ-35〉 자원봉사단체 소속단체별 현황

구분	계	경찰	자치단체	교육기관	자생단체	법무부
개	45	9	13	2	20	1
인원	7,862	2,105	3,373	134	2,091	159

※ 예산지원 : 자치단체 예산 28개(17개 단체는 지원 없음), 활동비 월 10~30만원

경기도 지역을 예로 들면 어머니폴리스·실버폴리스·녹색어머니·자율방범대 등 도내 총 28개 협력단체 18만여명이 협력단체 네트워크 구축으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협동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표 Ⅲ-36〉 경기도지역 협력단체 연계현황

단체명	활동장소	활동시간	인원(명)
녹색어머니회	학교주변	07:00-09:00	109,169
배움터지킴이	교내외	09:00-18:00	64
어머니폴리스	학교주변	12:00-17:00	31,007
실버폴리스	놀이터 공원 통학로	14:00-18:00	1,136
바르게살기협의회	관내 취약지	20:00-23:00	1,770
자율방범대	관내 취약지	20:00-01:00	16,130
기타	관내 취약지	18:00-24:00	23,139

* 경기도 아동,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121면 참조.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이들이 활동하는 교육공간에 성범죄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 6. 30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신설하였다. 취업제한의 기간은 처음 시작은 형 확정 후 5년이었지만, 2008. 2. 4부터 형 확정 후 10년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취업제한 대상도 교육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자주 접촉하게 되는 아파트 경비원, 체육시설 종사자 등도 포함하게 되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그 후 10년간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청소년 대상 체육시설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42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법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반 시 사후구제책으로 해임요구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규정만 두고 있어,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성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외국 사례

1) 일본[52]

가) 경찰의 대책활동

52)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개원 3주년 기념 한・일 국제세미나, 경기도 아동,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2008.7.15, 19면 이하 참조.

일본 경찰청은 아동범죄예방과 관련하여 등・하교길 및 등・하교 시간대의 경찰관들의 순찰활동 강화, 퇴직한 경찰관을 스쿨 서포터로 위촉하여 활용, 지역 경찰의 웹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해 아동범죄 사건 및 아동에 대한 범죄의 전조로 여겨지는 상황(유괴 시도 및 미행)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안전지도”제작 지원, 아동대상 범죄예방교실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 범죄자가 난입했을 때의 대책훈련 실시, 위험에 처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주고 경찰에 알려주는「아동 110번의 집[53]」(자원봉사) 활동 지원, 아동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 파악 등을 하고 있다.

나) 행정 대처

경찰청의 대책을 토대로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효고현의「안전한 마을 만들기 조례」(2006. 4. 1. 시행)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지역 전체의 동참을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효고현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 효고현의 지원정책 : 정보제공・상담・조언, 활동 노하우의 습득기회 제공, 인재 확보 및 자금조달 지원, 공헌한 사람에 대한 표창장 수여
- 안전한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자원봉사)을 효고현 지사가 위촉하여 신분증을 발행하고 자원봉사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 그룹당 5만엔을 지원해 주고, 완장, 모자, 점퍼 등의 용품을 배포
- 4대 지침 :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및 조치 관련 지침, 범죄 예방 관점에서의 주택 및 주택단지의 구조・설비관련 지침, 범죄 예방을 위한 심야영업점포 관련 지침, 범죄 예방 관점에서의 도로 구조, 설비 관련 지침
-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및 조치 관련 지침에 의한 4가지 조치 : 아이들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아이들에 대한 위

53) 子ども110番の家

기발생 시의 활동 및 조치, 안전교육 충실화, 아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체제정비

다) 지역 자원봉사

경찰청, 행정 대책 및 지침, 경제적 지원 등이 뒷받침 되어 지역의 자원봉사자에 의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사카와 효고현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사카 지역의 활동

초등학생의 등・하교길 지켜주기

- 청색 회전등을 단 순찰차에 의한 안전 지원
- 자전거의 앞 바구니에 '순찰중'임을 표시, 개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한지 지켜보는 '애완견 순찰', 지역 주민들이 하교 시간대에 동네를 청소하는 등의 방범 지원
- 수상한 사람이나 사건 발생 시 이메일로 통보, GPS 활용, 지도 작성
- 방범 경보음 발생기 배포, 위급 시에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주는 「아동 110번의 집」을 찾아보는 레크리에이션 게임 실시
- 주택 단지별 활동 '애완견 순찰'

② 효고현 지역의 활동

- 오사카 지역과 동일한 활동
- 기업의 대책활동—영업용 차량에 「아동 안전 감시반」의 스티커 부착, 방범 홍보전단을 무료로 제공
- 대학생의 방범 순찰, 방범 교실 개최

라) 기술

- 현재 장소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휴대전화 GPS 기능, 책가방에 부착하는 IC 태그를 활용하고 있고, 수상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전송하고 있다.

2) 미국의 안전학교 프로젝트[54)]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 주에 위치한 Metro-Omaha 시의 경찰국에서는 학교주변 및 지역사회의 공공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3개년 장기간 계획안을 제출하고, 단계적인 실행에 착수하였다. 그 중 주목할 만한 시민참여 활동으로는 학교주변 폭력 감시 및 범죄환경 제거를 위해 경찰국과 시민단체가 공조한 안전학교 프로젝트(The Safe Schools Project : SSP)이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SSP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경찰국과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학교폭력퇴치 동반자(Partners Against School Violence)"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는 한편, 시경찰국은 시민조직망(Neighborhood-based networking)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업무지원을 받았으며, 등·하교길 순찰, 휴가철 빈 주택 보호·감시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순찰 활동 등을 적극 활성화하였다. 이 프로그램 운영 결과 학교, 경찰,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한층 더 생산적인 공조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며,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학교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경찰의 업무로 간주하지 않고 지역사회 공통의 책임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참여자들의 자체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문제의 보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사회 내의 모든 자원들 간의 총체적인 협력과 다양한 범죄예방 전략의 통합노력을 요구한다.

3) 영국의 이웃 상호감시 범죄 예방 프로그램(Neighborhood Watch Program)[55)]

영국의 이웃 상호 감시 프로그램은 1982년 Cheshire시의 Molington에서

---

54) Jonh Ashcroft, Comprehensive Comunities Program : Promising Approaches, (U.S. Department of Justice, 2001), pp.36-3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01-02) 73-74면 재인용.

55) Bennett Trevor, Evaluating Neighborhood Watch (Aldershot : Gower, 1990), pp.11-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80-81면 재인용.

범죄 예방 담당 경찰관의 제안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 기본 취지는 범죄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고취시켜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범죄기회의 원천봉쇄와 감시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웃감시조의 운영방법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모임을 조직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유인물을 나누어 보며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으로, 대표자의 역할은 기구의 조직이나 활동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구성원을 모집하고 경찰과 접촉하여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기금은 경찰자체 지원금 이외에도 각종 사회단체나 지역사회의 기업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웃 상호 감시 프로그램의 장점으로는 경찰과 주민 사이의 보다 밀접한 접촉과 비공식적인 사회통제를 통한 주민의 참여의식이 강화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찰의 범죄인지력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볼 수 있다.

4) 호주의 안전한 집 프로젝트

빅토리아(Victoria)주 경찰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 가운데 주민참여가 돋보이는 사례로 안전한 집(Safety House)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56] "안전한 집" 프로젝트는 아동들이 등·하교길에 위험한 상황을 직면한 경우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집들을 지정해 놓는 것을 말한다. 아동들이 등·하교길에 위험을 느끼거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이러한 지정된 집 중의 하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교로부터 고지받는다. 안전한 집에 들어온 아동이 있을 경우에 집주인은 아동을 보호하고 경찰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1982년 6월까지 8개의 경찰구역 내에서 69개 학교에 69개의 "안전한 집"위원회가 발족되고 21,000개의

56) Lorraine R. Beyer, Community Policing : Lessons From Victoria (Canberra :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3). 형사정책연구원,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84-85면 재인용.

“안전한 집”이 설치되었다. 그 결과 지역주민이 경찰력의 한 부분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범죄예방국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경찰(police and community working together)”이라는 공식적인 로고와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안전한 집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범죄 예방과 안전 욕구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시민참여의 힘을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국가 전역에 확산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재조직화에 일조를 한 프로젝트로 평가되었다.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행착오를 통하여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라. 소결

아동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 놓지만, 아직도 여전히 아동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일회적이고 캠페인적 성격이 짙은 정책들이 양산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점검해야 할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주도적으로 추진해 갈 주체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아 흐지부지 되어 버린 까닭이다.

1) 범죄 예방 영역에서의 검찰의 적극적 역할 수행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범인을 검거한다 할지라도 이미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형사소추기능에 주력해 왔던 검찰기능의 범죄예방기능으로의 확대가 요구된다.

검찰의 범죄예방영역에서의 적극적 역할수행은 미국의 지역사회검찰프로그램(Community Prosecution Program)의 성공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

다. 미국에서 199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지역사회검찰 프로그램은 사건처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검찰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사회의 마약범죄, 학교폭력문제 등 주민들이 해결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그 문제를 해결(problem-solving)함으로써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근원적 문제 해결방식에 의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지역사회검찰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부기관, 공사단체, 지역주민들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범죄예방영역은 경찰의 독점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예방차원의 범죄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예방 영역 역시 강제적인 처분 및 그에 따른 시민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근본적으로 예방차원의 범죄퇴치 프로그램은 검찰과 경찰이 함께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법무부에 범죄예방과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 주체간의 연계 모색

전통적인 법집행관 이외에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NGO, 지역주민들과 연계하여 범죄예방 및 통제 활동을 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지역-학교-행정-경찰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각 주체의 구성원이 중간에 바뀌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연계가 효율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주체 간의 연계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범죄예방활동은 복잡하고 바쁜 현대적 환경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각 주체 간의 의무적 연계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범죄예방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범죄예방망 구축

범죄예방망[57]이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복잡·다양한 범죄 발생의 원인에

대처하여 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범죄예방 전략들을 1차, 2차, 3차 등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를 통합한 후 이러한 범죄예방 전략을 구사할 다주체 간 연계를 통하여 촘촘한 그물 같은 통합적인 구조로 범죄예방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다.

범죄예방 전략은 영역별로 범죄적 경향성 억제영역(1차 예방영역), 범행기회 억제영역(2차 예방영역), 재범 억제영역(3차 예방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범죄예방망의 1차 예방영역에서의 핵심전략으로는 의료적・심리적 치료, 가정개입, 학교개입, 지역사회의 조직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경찰, 의료 및 심리상담기관, 각종 사회복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 교육기관 등이 범죄예방의 의무적 참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2차 예방영역에서의 주요 범죄 예방전략은 상황적 범죄예방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일반적인 피해 예방교육, 범죄 유발 위험환경에 놓이는 직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보호활동, 경찰관의 순찰빈도 강화 및 보안 점검, 범죄대상물의 보호 강화, 재물등록 등 각종 방범진단활동이 포함된다. 2차 범죄예방영역에서는 건축 및 도시설계전문가, 경찰, 건설업체, 경비업체,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 등이 의무적 참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3차 예방영역에서의 전략은 우범자 관리, 범죄 경력자 관리,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등이다. 3차 예방영역에서는 경찰과 보호관찰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 등이 의무적 참여기관이 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7) 범죄예방망의 구축의 제도화를 제안한 논문으로 박행열(2007),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이 부분은 그 내용을 참고로 기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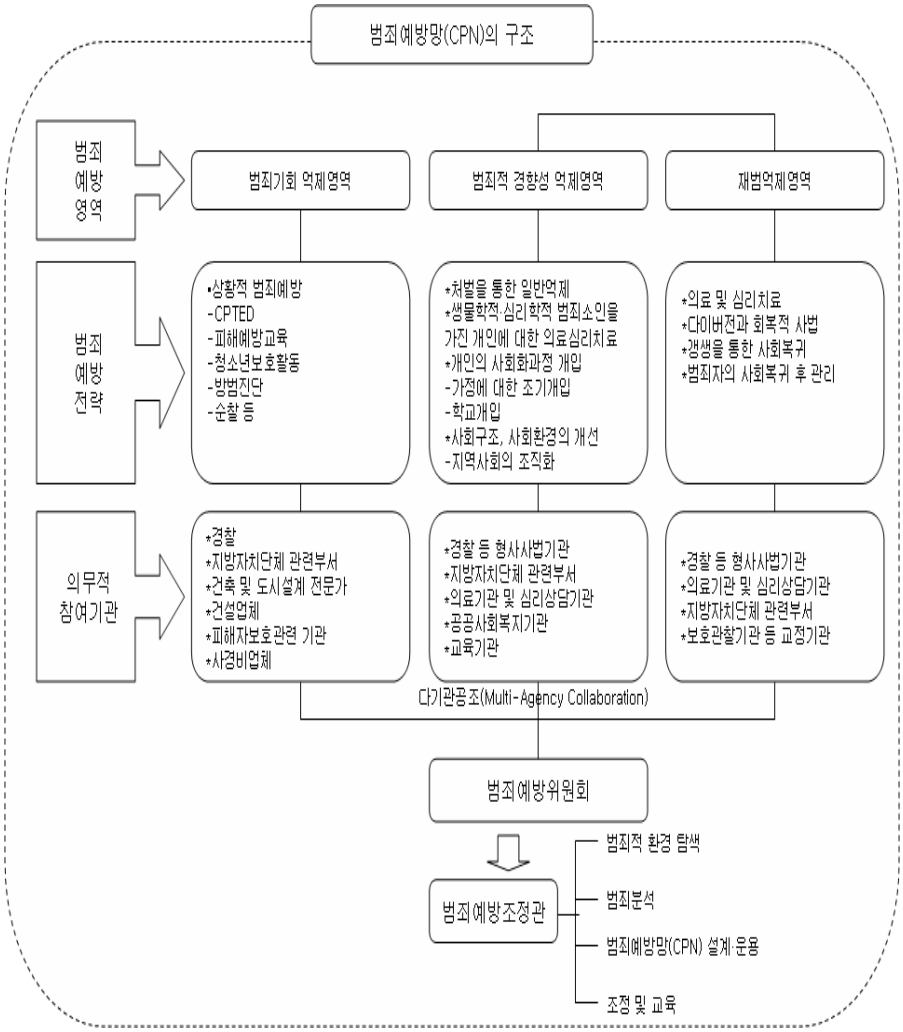

〈그림 Ⅲ-15〉 범죄예방망(CPN) 모델의 구조

박광섭 · 박행열, 범죄예방망(CPN) 모델의 이론적 틀과 구조, 교정학연구(제36호), 2007.

4) 범죄 예방 활동의 구체성, 현장성 강화

우리의 범죄 예방 활동은 구체적인 지역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공통된 방식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장학사업을 하는 등의 일률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지에서 출발하지 아니한 채,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그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범죄예방활동에도 구체성, 현장성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예세민, 2007, 49). 이를 위하여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지역사회검찰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티드(CPTED; Crime Prevent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범죄행위를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보고,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환경설계기법을 말한다. 범인들이 숨어 있지 못하도록 공원 등의 나무를 초등학생 키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건축관계법령에 반영될 정도로 제도화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는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있다. 되도록 빨리 관련 법이 제정되어 도시계획 수립시나 주택 등의 건축시 의무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및 성인 대상 예방교육 실시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도 필요하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동보육기관 및 교육기관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학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김진 외, 2007, 145).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모범사례는 미국 조지아 주의 성인대상 예방프로그램이다. 조지아 주에서 피해 대상자인 아동이 아닌 성인에게

예방 프로그램의 초점을 맞춘 이유는 기존의 예방 프로그램들이 아동들에게 성적인 접촉(sexual advances)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게 주요 초점을 두고 자신의 몸이 유익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게 예방 프로그램의 주요 방향이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동 성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90%가 피해자의 가족 내에 있거나 아는 사람인 상황에서 아동 대상 예방프로그램에 의문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GCCA(Georgia Center for Child Advocacy)[58]와 Darkness to Light[59]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는 성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들은 많은 성인들이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성인들이 아동 성범죄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 성범죄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과 단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인대상 예방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아동 성범죄율, 아동 성범죄가 아동, 아동의 가족,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 성인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 아동, 청소년과 함께 일을 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선별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

58) http://www.georgiacenterforchildren.org/
59) http://www.darkness2light.org/

Ⅳ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와 아동보호 대책

1.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대책 169
2. 아동성폭력 관련 아동보호 172

Ⅰ.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대책

가. 아동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입법적 정비 방안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입법적으로 정비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법원 양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양형지침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범죄가 법정형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고형은 매우 낮은 형량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책임에 기인한 처벌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정형화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국의 양형지침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위해 성폭력 범죄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각 경우마다 양형기준을 정하고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명문화하여 선고형이 보다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친고죄 규정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친고죄인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원래의 취지가 희석된 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친고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이 팽배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친고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보호는 고소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사와 재판방식의 고안, 비밀누설금지와 보도금지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소시효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공소시효제도의 폐지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공소시효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제도를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만 없앤다는 것에 대해 법적 안정성이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전자정보 등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유전자 정보은행제도는 최근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죄 발생 시 범죄자를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낼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에서 개인의 정보를 관리함으로 인해 과도한 사적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폐해 등 우려되는 점들은 미국, 영국 등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이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황에서 동 제도의 입법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성폭력범죄자 거주 제한 관련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여러 주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아동 관련 시설로부터 거주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특징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반복한다는 특성에 근거하여 범죄자들을 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제한 규정의 도입도 잠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성폭력 범죄자 대상 재범방지 교육의 실효성 확보

성폭력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책임에 비례하여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 수법의 학습 등 실형제도의 폐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책임에 근거한 처벌과 함께 자신의 책임성 인식과 피해자 공감 및 재범 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재범방지 교육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재범 방지교육이나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 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최근 2008.2월부터 시행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이 병과된 경우 재범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에게 등록기간 감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과 보호관찰소,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계를 통해 수강명령교육이나 등록기간 감축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표준적인 프로그램의 마련과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체의 양성 및 실제 교육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 출소 정보 고지 제도 도입

아동 대상 폭력적 성범죄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이후 출소하는 경우 출소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이 출소 후에 다시 아동 대상 폭력적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은 피해자 보호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

일본의 예에서 처럼 경찰청이 법무부로부터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출소에 관계되는 출소 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이 출소한 후에 다시 아동 대상 폭력적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자 자신의 재범방지 뿐 아니라 피해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시행과 병행하여 출소자의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경찰인력의 확충과 출소자 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성폭력 관련 아동 보호

가. 형사절차상 아동 보호 대책

1)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

범죄 피해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 및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필요한 상담, 의료지원,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등 범죄 피해로부터 회복되기 위한 정신적 및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현재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어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기존의 피해자 지원 기관들과의 역할 중복으로 인해 정체가 애매하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지원기관들이 이미 해오던 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 등에 업무가 치중되어 있어서, 국가 기관이어서 더욱 잘 할 수 있는 기능(예를 들어, 신변보호, 형사절차관련 정보제공 등)에는 정작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 명료화와 서비스의 질

적 향상, 연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형사절차상 권리 옹호에 힘쓸 필요가 있겠다.

2)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전문가 참여의 확대 및 활성화

아동 성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마련된 이래로 경찰수사연수원과 법무연수원에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해오고 있다. 기관별로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8월에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아동 성폭력 전담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동 조사의 전문성은 몇 번의 교육이나 워크샵 참여만으로는 갖추어질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이다. 조사 전략의 향상과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조사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한 경험 학습은 몇일간의 훈련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성폭력 피해와 같이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거의 없어서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민감한 사건에서는 아동과의 조사 기술이 중요한 관건이며, 성공적인 조사적 면담을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 언어, 기억, 피암시성,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조사와 관련한 법률적 지식이 함께 요구된다. 적절한 조사는 조사에 담긴 진술 내용의 신빙성 평가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의 책임을 형사사법 관계자들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의 경우에는 아동심리학자와 소아과나 정신과 전문의 등이 아동의 진술능력과 아동의 진술과 관련한 전문적 증언을 위해 자주 법정에 출석하는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문가 참여제도의 확대와 활성화 방안 모색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3)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양질의 성폭력 피해 아동 조사 매뉴얼 개발

경찰과 법무부가 별개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조사 매뉴얼을 개발, 배포하였으며, 진술조사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현장

에서 아동을 조사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담당자들은 그 매뉴얼들이 너무도 형식적이라고 불평하며, 초보 수사관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매뉴얼에 집착한 나머지 효율적인 조사에 실패하고 매뉴얼을 보지 않는 것보다 더 부적절한 방식으로 조사하는 일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기준과 관련한 것을 들 수 있다.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 아동과의 조사 시 신뢰관계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조사자의 위협이나 협박 등과 같은 2차 피해의 감시와 진술 자체로 인해 아동이 겪을 수 있는 불안, 분노 등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며 안심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말은 아동의 부모가 반드시 신뢰관계 있는 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동석이 허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보호자가 가해자와 이익관계에 있거나 극단적인 경우 보호자가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조차도 동석이 허용되고 있다. 여아의 사례에서 아버지가 동석하여 아동이 부끄럽다며 진술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사례의 경우 조사 당일 처음 만난 상담소 직원이 신뢰자로 동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상담원은 신뢰관계 있는 자가 아닐 수 있다. 요컨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규정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 진정으로 신뢰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며, 어떤 식으로든 아동에게 위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동석에 신중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신뢰관계 있는 자에 대한 규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를 지지하는 중요한 물리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재개되지 못하는 사례를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현 시스템에서는 수사의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녹화를 여경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나, 향후 사건 처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이 명백한

여경이 아동의 조사를 담당하는 일이 자주 있다. 즉, 많은 경우에 진술조사는 여청계에서, 그리고 수사는 형사계에서 진행하는 식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수사의 흐름이 유지되지 못하며, 보호자들이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하는 지 헷갈리는 경우도 잦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대부분의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청 원스톱 센터에서 진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스톱 센터의 조사자가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여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서에서 재조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원적인 시스템이 전문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겠으나, 사건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현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변화 모색이 요망된다.

4) 영상조서의 인정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영상조서로 문서화된 조서를 대신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조사관들이 영상물 촬영과 조서 작성을 병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조사가 방해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과의 면담 시 조서 작성은 조사의 흐름을 방해하고, 아동의 주의를 분산시키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조사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를 가급적 금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검찰·법원에서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진술녹화 시 진술조서 작성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동의 경우, 진술 내용 뿐 아니라 진술시의 얼굴 표정, 억양, 몸짓 등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도 언어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자가 조서 작성으로 인해 주의가 분산됨으로써 중요한 비언어적 단서를 놓치는 것은 중요한 과오이며, 편리성을 이유로 영상녹화물의 재생보다 조서 열람을 선호하는 것 역시 같은 실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동이 관여된 사건에서 만큼은 진술조서 대신 영상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성폭력 피해 아동 원스톱 지원 개선 방안

1) 센터 수준의 원스톱 지원이 아닌 성폭력 피해 아동 지원체계 차원의 원스톱 지원 강화

현행처럼 한 개의 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원스톱 지원을 표방할 경우, 피해 아동과 가족은 그 센터에서 모든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일부가 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수준에 있다. 그렇다고 한 개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등을 집중시키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다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체계 방식은 개별 기관의 한정된 자원으로는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아동이 전문인력으로부터 다양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적 형태로 등장하였다.

현행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역시 이러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원스톱, 원스톱이 아니라 원스텝이란 일각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원스톱 지원이라고 했을 땐 해당 기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센터별 원스톱 지원이 아닌 지원체계 차원의 원스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원스톱 지원으로 확장하고, 원스톱 지원의 핵심 거점을 현행 센터들이 담당하도록 한다. 즉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고유기능을 보다 발전시키고 이들을 거점으로 그 외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스톱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관련 지원체계 간의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전환하면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전체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안에서 자리매김하게 되고, 센터 이외의 기관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분절성이 완화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확장적인 차원에서의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

2) 원스톱 지원을 위한 다분야 전문가 협력 방식의 다각화

성폭력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가 지금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면 센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는 현행 방식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원스톱 지원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센터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제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면 많이 생겨야 하는데, 한 개 센터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확충되는 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센터와 같은 형태 보다는 전문인력들이 팀을 이루는 방식의 원스톱 지원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있는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사건을 위해 구성되는 것으로, 구성의 거점은 경찰, 병원, 상담소, 보호시설 등 다양할 수 있다. 누구나 이러한 팀 구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존에도 연계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었겠지만 팀을 구성해서 정보 교환, 진행상황에 대한 협의 및 의사결정, 개입전략 수립 등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별로 원스톱 지원을 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 지원 관련 전문가 풀이 발굴되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운영메뉴얼도 개발되어야 한다.

3) 원스톱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전문화 · 차별화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둘 다 원스톱 지원을 표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현재로서는 서비스 대상이나 주요

서비스 내용이나 인력 구성 등에서는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현행 구축된 인프라를 고려할 때 두 개 기관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윈윈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보다 고유한 역할에 대한 전문화, 차별화가 필요하다. 특히 원스톱 지원의 개념이 성폭력 피해 아동 지원체계를 관통하는 원스톱 지원으로 전환되면 두 센터는 현재의 인프라를 토대로 보다 전문적인 영역을 확고히 하고 그 외 영역에서는 연계하면서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의료적, 심리치료적 측면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수사지원, 학교・일상생활에서의 적응과 통합 등을 위한 외부기관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법률수사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그 외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선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술녹화, 수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 성폭력 전담수사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가 검찰, 법원에서도 효력이 지속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진술녹화 등은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선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나 경찰 등에서 주도적으로 하되, 관련 전문가들(이때의 전문가들은 해바라기아동센터 관계자 뿐 아니라 아동 성폭력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이 관찰하여 조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성폭력 피해 아동 지원 인력의 아동 성폭력 관련 교육 훈련 강화

성폭력 피해 아동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원체계 각각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훈련은 물론 전문적인 영역별로 필요한 교육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개별 집단별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집단들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체 교육 기회도 마련하여 상호 업무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아동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육 교재, 교육 메

뉴얼 등이 더불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5) 지역 사회 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미국의 경우 주 자치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된 모델이 아닌 각 주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에 맞추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가 3개소가 있는데 각기 다른 인력과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15개소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일정 정도 표준화된 형태로 운영될 수 있겠지만, 센터 내 자원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관련 기관들의 협조 정도에 따라, 센터에 접수되는 사건 내용에 따라 축적되는 노하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점차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어느 센터를 이용하든지 성폭력 피해아동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격차가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비스는 동일한 수준과 내용으로 제공되고 그 위에 각 센터별로 다양성을 갖도록 되어야 한다.

다. 아동 성폭력 예방 대책

아동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 놓지만, 여전히 아동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정책의 일회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이 지속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아동 대상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 보호 종합대책의 구체적 실현성 강화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책이

입체적 아동 안전 시스템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우선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면 그것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뿐만 아니라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의 하나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 안전 시스템으로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 의지 사전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보여주기식의 숫자 늘리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지역 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업주의 전과조회를 통한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자발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함으로써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반 시 사후구제책으로 해임요구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규정만 두고 있어,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성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범죄 예방 영역에서의 검찰의 적극적 역할 수행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범인을 검거한다 할지라도 이미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형사소추기능에 주력해 왔던 검찰기능의 범죄예방기능으로의 확대가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범죄예방영역은 경찰의 독점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예방차원의 범죄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예방 영역 역시 강제적인 처분 및 그에 따른 시민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근본적으로 예방차원의 범죄퇴

치 프로그램은 검찰과 경찰이 함께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법무부에 범죄예방과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 주체 간의 연계 모색

전통적인 법집행관 이외에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NGO, 지역주민들과 연계하여 범죄 예방 및 통제 활동을 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지역-학교-행정-경찰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각 주체의 구성원이 중간에 바뀌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연계가 효율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주체 간의 연계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범죄 예방 활동은 복잡하고 바쁜 현대적 환경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각 주체 간의 의무적 연계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범죄예방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예방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지역사회검찰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환경설계기법이 도입 초기단계에 있으나, 되도록 빨리 관련 법이 제정되어 도시계획 수립 시나 주택 등 건축 시 의무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성폭력 예방 교육 활성화 및 성인 대상 예방 교육 실시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도 필요하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동보육기관 및 교육기관의 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학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김진 외, 2007, 145면). 그 동안 아동 예방교육의 초점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접촉(sexual advances)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게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아동 성범죄율, 아동 성범죄가 아동, 아동의 가족,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 성인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 아동, 청소년과 함께 일을 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선별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아동 성범죄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과 단계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은영(2000),「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2007),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만들기를 위한 CPTED의 의의와 경남의 정책방향, 경남정책Brief(2007.9.28, 제7호).

경찰청(2007). 2007 여성학교폭력 지원사례집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06.7.20.

국가청소년위원회(2007),「제13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06),「'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자료집, 2006.3.16.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07),「학생 성폭력 대책 토론회」자료집, 2007.4.20.

김정규, 김중술(2000). 아동기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9(4):747-769.

김진외(2007), 여아차별 및 폭력방지관련 입법과제연구, 2007.10,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김태경, 김소향, 최경숙, 최지영, 임자영, 엄소용, 신의진, 2006. 한국 성폭행 피해 아동의 정신병리. 신경정신의학회지, 45(2), 165-173.

남기재(2007),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노성호・김성언・이동원・김지선(1999),「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2008), "DNA DB 구축의 필요성" 중 '영국과 미국의 입법례' 참조.

박용철(2006),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공소시효의 중단 및 연장에 관한 제 문제 - 미국법을 중심으로",「피해자학연구」제14권 제2호, 2006.10.

박행열(2007), 범죄예방망(CPN) 구축의 제도화와 경찰조정자모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법학박사논문.

법무부(2006),「"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자료집, 2006.12.

법무부(2006),「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성도착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실시- 」회의자료.

법무부(2007),「성・가정・아동폭력 형사정책 공청회」자료집, 2007.10.24.

서울지방경찰청, 2005. 아동 성폭력 수사 매뉴얼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2006, 2007).「해바라기아동센터사업보고서」

아동 성폭력피해자가족모임(2002),「아동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심포지엄」, 2002. 10.22.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2008).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실행계획

안동현(2005). 아동 성 학대. 홍강의, 강경미, 고복자, 곽영숙, 김경희, 김붕년 등 저. 소아정신의학. 서울:중앙문화사. p.493-475.

여성가족부(2007).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보호시스템 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2007).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운영타당성 조사.

여성가족부(2007).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업무메뉴얼

여성가족부(2007).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협약서 및 규정

여성부 보도자료(2006. 11. 10). 여성가족부 혁신우수사례 중앙부처 혁신우수사례 본선 진출 ‘ 병원과 경찰서를 전전하는 일만은 없도록’

여성부(2007). 여성폭력원스톱 지원센터 현장점검 결과보고. 내부자료.

여성부(2008).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업무 매뉴얼.

여성인권법연대・임종인 국회의원 사무실(2007),「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자료집, 2007.2.8.

예세민(2007), 미국의 지역사회검찰 프로그램, 『각국 검찰의 변화 및 미래전략』, 검찰미래기획단.

윤덕경・김인숙(2006),「성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윤덕경・정명희(2004),「성폭력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윤덕경・황정임・김인순・최대헌・김영란・최혜숙(2007),「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가청소년위원회.

윤지영(200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승환(2002), “여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전자정보은행 신설 제안”,「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pp.55-72.

장필화, 김정희, 박종선, 안수진, 이경환, 이미경, 이영란, 조중신, 2003. 형사사법 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법무부용역과제, 한국성폭력상담소, 101p

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008). 아동청소년성폭력관련 2008년 한미국제 심포지움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007),「아동・청소년 성폭력관련 2007 한・일 국제 심포지움」자료집, 2007.7.13.

전영실・강은영・박형민・김혜정・황태정・정유희(2007),「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진수(2000). 아동증언에 관한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한상훈(2000), "최근 독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과 성적 자기결정의 보호성",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pp.189-213.

한인섭(1994). 성폭력 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 연구, 3, 42p.

홍영오.이수정(2006).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만성(2004). 형사절차상 성범죄피해아동의 보호방안.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Aldridge, J. (1992). The further training of professionals dealing with child witnesses. In H. Dent&R. Flin(Eds.), Children as witnesses (pp.231-244). Chichester, England: Wiley.

Aldridge, J., & Cameron, S. (1999). Interviewing child witnesses: Questioning strategies and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3, 136-147.

Ceci, S. J., & Bruck, M. 1993. The suggestibility of the child witness: A historical review and syn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3, 403-439.

Chi, M. T. H., & Ceci, C. J. 1987. Content knowledge: Its role, representation, and restructuring in memory development. In H. W. Reese(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20, pp. 91-142). Orlando, FL: Academic Press

Daniel P. Hoffman et al(2005), Fair Banks Guidelines for Sexual Assault Response Team.

Ells, M. (2000). *Forming a Multidisciplinary Team To Investigate Child Abuse.*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Faller, K.C. 1993/2003. 아동성학대의 치료. (노충래 역). 서울:학지사.

Greg Coax et al(2001), *Standards of Practice for Members of the Interdisciplinary SART Team*, San Dieg County Sexual Assault Response Team.
Gillian Murphy(2002), *Beyond Surviving : Toward A Movement to Prevent Child Sexual Abuse*, Safety Program.
Howe, M. L., Courage, M. L., & Bryant-Brown, L. 1993. Reinstating preschoolers' memo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854-869.

International Centere for Criminal Law Reform and Criminal Justice Policy(2001), *Model Strategies and Practical Measures on the Emin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Field of Crime Preveion and Criminal Justice.*
Lauren Crouncher, Colorado Coalition Agains Sexual Assault- State Wide Sexual Assault Response Team Mannual, SAE/SART Community
Ledray, L. E. (1999).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Development & Operation Guide.* Sexual Assault Resource Service: Minneapolis, Minnesota.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for Victims of Crime.
Linda E et al,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Office for Victims of Crime.
Loftus, E. F., Miller, D. G., & Burns, H. J. 1978. Semantic integration of verbal information into a visual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Learing and Memory, 4, 19-31.

PCAR(2002), Sexual Assault Response Team Guidelines.
Phyllis Barkhurst et al(2002). Attorney Generals Sexual Assault Task Force Handbook. Sexual Assault Response Team.
Ruggiero KJ, McLeer SV, & Dixon J.(2000). Sexual abuse charact- eristics associated with survivor psychopathology. Child Abuse & Neglect, 24(7):951-964.

SART Standards of practice(2005), *Standards of Practice.*
State Laws on DNA Data Banks, Qualifying Offenses, Others Who Must Provide Sample July 2008: http://www.ncsl.org/programs/cj/dnadatabanks.htm

Sternberg, K., Lamb, M. E., Hershkowitz, I., Esplin, P. W., Redlich, A., & Sunshine, N.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igative utterance types and the informativeness of child witnesse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439-451.

2007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Sentencing Guidelines Council, Sexual Offences Act 2003 Definitive Guideline.

Texas Association Against Sexual Assault(2003), *Texas Model Protocol For Responding to Sexual Assault.*
The Alaska Children's Cabinet( ). *Alaska Statewide Protocols for Sexual Assault Response Teams.*

日本辯護士連合會(2007), 警察廳 DNA型データベース・システムに關する意見書.

부 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선고결과 및 감형사유 191
2. 범죄유형에 따른 DNA샘플 채취, 보존에 관한 미국 각 주의 관련 규정 194
3. 미국 50개 주의 주별 유전자정보 입력대상 범죄 표 199
4. 일본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방지관련 제도 201
5. 형사절차제도 : 실태 조사 기록지 210
6.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 217

<부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선고결과 및 감형사유

번호	선고결과	감형사유1	감형사유2	감형사유3	감형사유4	감형사유5	감형사유6
1	징역 8월	없음					
	항소기각						
2	징역10년/치료감호	피고의지적장애	어린나이(16세)	자백	잘못뉘우침		
3	징역10년/치료감호	피고의지적장애	어린나이(16세)	자백	잘못뉘우침		
4	징역5년	동종전과 없음	반성				
	징역4년	반성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자백	심신미약	장애(농아)	방조	미수	소년범
6	징역5년						
	징역3년	뉘우침	합의				
7	징역1년6월	동종전과 없음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60시간	동종전과 없음	다소 과한 애정표현				
	파기환송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160시간	동종전과 없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음	피해자 충격 심하지 않음	공탁	후회	
8	징역3년	미수	연령 및 건강				
9	항소기각	동종전과 없음	연령, 지능, 성행, 환경 기타 여러 사정(살인전과는 있음)				
10	징역1년6월	자백	뉘우침	전과 없음			
11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	고소 취하	선처 표시	피고인 부양자녀(3인)	재범가능성 없음	연령, 성행, 환경	

12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성폭력치료 강의40시간	고소 취하	선처 표시	피고인 부양자녀 (3인)	재범가능성 없음	연령, 성행, 환경	
13	징역3년	동종전과 없음	고령, 질병으로 수형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항소기각	동종전과 없음	재범가능성 없음	환경, 가족관계 등			
14	징역1년,집행유예2년,보호관찰,성폭력치료강의40시간	음주 후 우발 범행	동종전과 없음	정신과 치료중	고령,학력,경력,가정환경		
15	징역1년,집행유예2년,보호관찰1년,사회봉사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40시간	초범	범행시인	반성	합의	중추신경 장애 (베트남전)	연령,성행, 지능,가정, 기타 주변환경
16	징역3년,집행유예4년,보호관찰,사회봉사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40시간	우발적범행	범행시인	반성	연령,성행, 직업과환경,전과,가족관계	동기,경위,수단과결과, 범행후정황	
	징역3년 집행유예	우발적범행	반성	합의	동종전과 없음 (벌금형2)	나이,성행,환경	
17	공소기각	사유 없음					
18	징역10월	초범	고령	공탁	성행,범행전후 정황 등		
	파기환송						
	징역1년	초범	고령	질병 (고혈압)	공탁		
19	장기8년 단기5년	소년범					
	항소기각						

20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2년, 사회봉사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24시간	범행 시인	합의	전과 없음	연령,성행,환경		
21	징역1년	범행 시인					
22	항소기각	범행 시인					
23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2년, 성폭력방지교육40시간	자백	동종전과 없음	피해자의 모가 선처 바람	구금중 양육의무 이행	국가 유공자	기타 피해자와의 관계 참작
24	징역3년	사유없음					
25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	초범	합의				
26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성폭력치료강의40시간, 사회봉사120시간	전과 없음	반성	합의			
27	징역3년6월	음주	음주	반성	전과 없음		
28	징역8년 / 열람정보 5년	범행 시인	반성				

<부록2> 범죄유형에 따른 DNA샘플 채취, 보존에 관한 미국 각 주의 관련 규정

주	모든 중범죄	일부 청소년범죄	일부 경범죄자	일부 체포범	정신질환 인정*	기타
알라바마	○					
알래스카	○	○		○(폭력적 중범죄로 체포된 자)		
아리조나	○	○		○(대부분의 폭력적 중범죄자)		주거침입강도, 형사법상 강도(residential and criminal burglary) 포함
알칸사스	○	○(폭력적 범죄만 해당)	○(일부 성범죄)		○	
캘리포니아	○	○		○(2009년부터 모든 중범죄로 확대)		대량살상무기 조항 위반 관련 테러활동으로 유죄판결 받은 자, 다른 주에서 이와 동일한 죄로 유죄판결 받은 자 포함
콜로라도	○	○				성범죄자로 등록의무가 있는 자, 집행유예중인 자(probationer), 가석방중인 상습범 그리고 가석방 보호감독 없이 석방된 자 포함
코네티컷	○				○	보호감독이 면제되기 전 집행유예, 가석방 중인 자 포함
델라웨어	○		○(특정한 아동 위협(endangerment)과 유기범죄			
플로리다	○	○	○(대부분의 아동피해		○	유죄선고에 부가된 집행유예, 가석방, 석방 또는

			범죄와 스토킹, 훔쳐보는 행위(관음증)			보호감독중인 자 포함.
조지아	○	○				유죄판결로 집행유예 중인 자중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자 포함
하와이	○	○			○	구금중이거나 집행유예, 가석방, 가석방 조항 위반자중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자 포함
아이다호		○				대부분의 중범죄자 포함
일리노이	○	○	○(몇몇 경범죄자를 포함한,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요구되는 자)			수용치료 사법처분제도에 의해 수용된 자, 성범죄로 '유죄이나 정신질환 인정'을 받은 자, 스토킹, 주거침입강도 범죄자로 주간협정이 있는 주에서 이주해 온 자 포함
인디아나	○					집행유예, 가석방중인 자중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자 포함
아이오와	○	○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요구되는 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상의 범죄 포함)		○	가석방자, 외부통근자(offender on work release), 재판유보 판단을 받은 자 포함
캔사스	○	○		○(중범죄 또는 마약 그리드 1 또는 2단계; 2008년 6월 30일 이후부터 중범죄로 체포된 모든 이로 확대)		Includes 범죄자 등록법상의 범죄, 대부분의 심각한 중범죄, 몇몇 마약 범죄 포함.

켄터키	○	○				미성년자와의 불법적거래,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조장, 1,2 급 강도와 A, B 등급 중범죄로 피해자 사망 또는 심각한 위해를 입힌 범죄 로 유죄판결 받은 자 포함
루이지애나	○	○		○(Authorized to extent funding is available)		
메인	○	○	(최초에 기소된 범죄가 DNA제공조건을 충족한다면 경범죄라도 포함될 수 있음)			ABC등급의 모든 중요범죄자와 DE등급의 유죄판결받은 자로 이전의 중범죄 유죄판결에서 DNA샘플이 수집되지 않은 경우
메릴랜드	○	○				일부 경범죄자 포함
메사추세츠	○	○				
미시건	○	○				
미네소타	○	○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범죄인 경우 포함될 수 있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범죄)		
미시시피	○					
미주리	○					
몬타나	○	○				
네브라스카						
네바다	○		○(유죄판결받은 자로 등록 불이행한 자)			A또는B등급의 중범죄 또는 C급의 범죄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한 범죄, 일부 마약범죄

뉴햄프셔		○				폭력적 범죄를 포함
뉴저지	○	○	○(6개월 이상 구금이 선고되는 모든 범죄 포함)		○	
뉴멕시코	○	○		○(특정 폭력적 중범죄)		
뉴욕	○		○(대부분의 경범죄자)			대부분의 심각한 중범죄와 규제물품 관련범죄 포함
노스캐롤라이나	○				○	사회내 감독처분 받은 자
노스다코다	○			○(2009년 1월부터 모든 중범죄)		강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심각한 중범죄
오하이오	○	○	○(특정한 아동피해범죄)			
오클라호마	○					2001년 법은 점차적으로 중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시키려는 계획하에 있으며 2006년에는 모든 중범죄를 포함함.
오레곤	○	○				
펜실바니아		○				폭력적 성범죄자와 성범죄자 포함
로드아일랜드	○					
사우스캐롤라이나	○	○	○(범죄에 대한 법원의 명령이 요구됨)			사회내감독(community supervision) 처분받은 범죄자 중 일부 조건 충족하는 자 포함
사우스다코다	○	○		○(5년 이상 구금에 상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자)		
테네시	○	○		○(폭력적 중범죄경우, 상당한 이유 있을 때)		특정 범죄자로 주간협정이 있는 주에서 이주해온 자 포함

텍사스	○	○	○ (범죄에 대해 법원의 명령으로 요구됨)	○(일부 성범죄로 기소 후)		연방준비금에 관련된 모든 중범죄로 확대
유타	○	○	○(A등급 경범죄자. 낮은 등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	폭력적 범죄로 연방법 또는 다른 주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성범죄자로 반드시 등록해야하는 자를 모두 포함함.
버몬트	○		○(형의 합의(plea agreement)의 일부분으로 가능)			
버지니아	○	○		○(미수를 포함한 폭력적 중범죄)		
워싱턴	○	○				폭력적 범죄로 연방법 또는 다른 주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성범죄자로 반드시 등록해야하는 자를 모두 포함함.
웨스트 버지니아	○					
위스콘신	○	○	○(성범죄자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일부 경범죄자)		○	
와이오밍	○	○				등록을 요하는 모든 성범죄자 포함

*정신장애로 인한 무죄 또는 유죄이나 정신질환 인정(GBMI,guilty but mental ill)

<부록 3> 미국 50개 주의 주별 유전자정보 입력대상 범죄 표

제정년도	주	성폭력	살인	폭행	아동대상범죄	강도	침입절도	미수	유괴	소급여부	소년범	스토킹	중죄에만적용
1994	Alabama	*	*	*	*	*	*	*	*		*	*	
1996	Alaska	*	*	*	*	*		*	*		*		*
1989	Arizona	*			*						*		*
1997	Arkansas	*	*	*	*	*		*			*		*
1989	California	*	*	*	*			*	*		*		*
1988	Colorado	*			*								
1994	Connecticut	*								*			
1994	Delaware	*			*			*		*			
1990	Florida	*	*	*				*		*	*		*
1992	Georgia	*			*								
1992	Hawaii	*	*		*			*					
1997	Idaho	*	*	*	*	*		*	*	*	*		
1990	Illinois	*			*			*		*			
1996	Indiana	*	*	*	*	*	*		*	*			*
1989	Iowa	*	*	*			*		*	*			
1991	Kansas	*	*		*			*		*	*		
1992	Kentucky	*								*	*		*
1997	Louisiana	*	*	*	*	*			*	*			
1995	Maine	*	*	*	*	*	*		*		*		*
1994	Maryland	*			*					*			
1997	Massachusetts	*	*	*	*	*	*	*	*	*			
1990	Michigan	*		*				*					
1989	Minnesota	*						*		*	*		
1995	Mississippi	*											
1991	Missouri	*	*	*				*	*				*
1995	Montana	*	*	*	*	*			*		*		
1997	Nebraska	*	*		*			*	*	*		*	*
1989	Nevada	*	*	*	*		*	*					
1996	New Hampshire	*									*		*
1994	New Jersey	*						*		*	*		

1997	New Mexico	*	*	*	*	*	*		*	*	*		*
1994	New York	*	*	*									*
1993	North Carolina	*	*	*	*	*			*	*		*	
1995	North Dakota	*			*			*		*			
1995	Ohio	*	*		*		*	*	*	*	*		
1991	Oklahoma	*	*	*	*								
1991	Oregon	*	*		*		*			*	*		
1995	Pennsylvania	*	*		*			*		*	*	*	
1998	Rhode Island	*	*										*
1995	South Carolina	*		*						*	*		
1990	South Dakota	*			*								
1991	Tennessee	*						*			*		
1995	Texas	*			*		*		*				
1994	Utah	*	*		*								
1998	Vermont	*	*	*	*	*	*	*	*	*			
1990	Virginia	*	*	*	*	*	*		*		*	*	*
1990	Washington	*	*	*	*	*		*	*		*		
1995	West Virginia	*	*	*	*	*		*	*	*		*	
1993	Wisconsin	*	*	*	*		*		*				
1997	Wyoming	*	*	*	*	*	*		*	*			*
	합 계	50	32	26	36	16	14	24	22	25	22	6	16

출처 : 대검찰청, 임인규(2006),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재인용.

1. '미수'는 표시된 범죄를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2. '소급여부'란은 표시된 범죄에 대한 법 제정 이전의 범죄자를 입력할지의 여부
3. '소년범'란은 표시된 범죄 중 소년범인 경우 입력할 지의 여부
4. '중죄에만 적용'은 표시된 범죄 중 중죄자(Felony : 미국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자를 지칭함)만 입력을 할 것인지의 여부

<부록4> 일본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방지관련 제도

1) 2005.5.19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의 출소자에 의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의 실시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나라현(奈良縣) 내에 있어서의 여자 아동 피해의 유괴・살인 등 사건의 피의자 검거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성범죄 전력자의 출소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법무성과의 사이에서 협의를 거듭하여 왔지만, 금번, 금년 6월 1일을 기하여, 아동의 심신에 중대한 피해를 주며,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아동대상・폭력적 성범죄의 출소자에 의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의 실시에 몰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본 통지의 취지에 따라, 적절한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의 출소자에 의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는 바이다.

제1조 목적

이 통지는,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가, 아동의 심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보호자나 지역 주민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의 전력을 갖고 있는 자는 다시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것에 비추어 보아, 법무성으로부터 아동대상・폭력적 성범죄를 범하여 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출소 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이 출소 후에 다시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 기타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

이 통지에 있어서,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자인 것을 말한다.

一. 강제 성추행(형법 제176조), 동 미수(형법 제179조) 및 동 치사상(형법

제181조)

二. 강간(형법 제177조), 동 미수(형법 제179조) 및 동 치사상(형법 제181조)

三. 강도 강간, 동 치사(형법 제241조) 및 동 미수(형법 제243조) 그리고 상습 강도 강간(도범 등의 방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四. 영리 목적 등의 약취 및 유괴(형법 제225조) 중 성추행을 목적으로 한 행위 및 동 미수(형법 제228조)

제3조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

이 통지에서 재범방지 조치 대상자라 함은 아동대상・폭력적 성범죄에 의해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 받은 자 중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를 조직적・계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는 자로 경찰청이 등록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의 등록 등

1.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의 등록

경찰청은 법무성으로부터 아동대상・폭력적 성범죄를 범하여 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출소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는, 당해 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로서 등록함과 함께 출소 후의 귀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본부장(경찰총감 또는 도부현(道府縣(방면))경찰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동일)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재범 방지 조치 실시 경찰서의 지정

1의 통지를 받은 경찰본부장은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의 출소 후의 귀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재범 방지 조치 실시 경찰서로 지정한다.

3. 재범 방지 담당관의 지정

재범 방지 조치 실시 경찰서로 지정된 경찰서의 서장(이하[재범 방지 조치 실시 경찰서장]이라고 한다.)은 원칙적으로 경부(경감에 해당)이상의 계급에

있는 자로부터 재범 방지 담당관을 지정한다.

4.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의 실시 체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분담에 의해서 상호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실시한다.

⑴ 본부 재범 방지 조치 담당 과장

경찰본부장이 지정하는 본부 재범 방지 조치 담당 과장은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집약・분석하여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의 실시에 대해서 재범 방지 조치 실시 경찰서장을 지도한다.

⑵ 재범 방지 조치 실시 경찰서장

재범 방지 조치 실시 경찰서장은 재범 방지 조치 실시 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파악 등을 위해 소요의 체제를 확립함과 함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를 실시하는데 관련이 있는 경찰서장과 연계하여,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의 실시를 담당한다.

⑶ 재범 방지 담당관

재범 방지 담당관은, 재범 방지 조치 실시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의 실시 및 관계 소속과의 연락 조정을 담당한다.

제5조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의 실시

1. 소재의 확인

⑴ 출소 후의 소재 확인

재범 방지 조치 실시 경찰서장은, 출소 예정일 이후의 적당한 시기에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가 귀주 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⑵ 계속적인 소재 확인

재범 방지 조치 실시 경찰서장은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가 계속해서 귀주지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2.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에 관계되는 정보의 활용

경찰본부장은 아동에 대한 스토킹, 말걸기 기타 범죄의 전조로 보여지는 사안에 대한 정보의 폭넓은 수집에 노력하고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에 관계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아동에 대한 범죄 발생의 미연 방지에 노력함과 함께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 기타의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범 방지 담당 부분과 수사 담당 부분과의 정보의 공유 등 긴밀한 연계에 배려하여 신속한 대응을 도모한다.

3.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가 가출옥을 허가 받은 경우에의 조치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가 가출옥을 허가 받은 경우는 범죄자 예방 갱생법(1949년 법률 제 142호)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호 관찰에 회부되고, 또한 동법 제34조제2항의 보호관찰에 회부된 자의 준수 사항으로서 일정한 주거에 거주할 것 및 주거를 옮기거나 또는 장기 여행을 할 때는 사전에 보호 관찰을 실시하는 자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부 재범 방지 조치 담당 과장은 당해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의 보호 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와의 긴밀한 연락에 노력한다.

4.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등에 관한 조치

(1)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의 조치

1 (1) 또는 (2)의 소재 확인에서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가 이사한 것이 확인되고 이사처가 판명되어 있을 때에는, 재범 방지 조치 실시 경찰서장은 경찰본부장에게 이사처를 보고한다. 이 경우에 이사처가 다른 도도부현일 때는, 보고를 받은 경찰본부장은 경찰청 및 당해 이사처의 도도부현의 경찰 본부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보고를 받은 경찰 본부장(이사처가 다른 도도부현일 경우에는 당해 이사처의 도도부현 경찰의 본부장)은 이사처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계속해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가 실시되도록 제4에 규정하는 바에 준하여 재범 방지 조치 실시 경찰서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⑵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게 된 경우의 조치

1 (1) 또는 (2)의 소재 확인에서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가 각각의 귀주 예정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 된 경우(거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불명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범 방지 조치 실시 경찰서장은 경찰본부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경찰본부장은 경찰청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가 소재 불명이 된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경찰청은 각 도도부현의 경찰본부장에게 소재 불명의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지시한다.

제6조 등록 해제

경찰본부장은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의 과거의 범죄 경력이나 방법, 출소 후의 거동 기타 상황으로부터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할 때에는 경찰청에 대하여,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의 등록 해제를 요청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경찰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 요청된 자의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 등록을 해제한다.

제7조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 실시 상의 유의 사항

1.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의 갱생에 대한 배려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의 실시를 담당하는 자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가 재범 방지 조치의 대상자의 갱생, 사회 복귀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엄중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가 출소자인 경우에는 그 사정을 모르는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의 가족, 친족, 근린 주민, 근무처 기타 관계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필요가 없는 한 이들에 접촉을 피하는 등의 배려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2. 관련 정보 비밀의 엄수

관련 정보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그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 도도부현 경찰 간의 연계 등

1. 도도부현 경찰 간의 연계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경찰서가 다른 도도부현 경찰에 속할 때에는 재범 방지 조치 실시 경찰서장은 본부 재범 방지 조치 담당 과장을 경유해서 당해 다른 도도부현 경찰의 본부 재범 방지조치 담당 과장을 통하여 당해 관련이 있는 경찰서의 서장에게 협력을 의뢰하고, 협력 의뢰를 받은 도도부현 경찰은 성실하게 이에 대응한다.

2. 경찰청에 의한 조정

도도부현 경찰은 다른 도도부현 경찰에게 협력을 의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구 경찰국 또는 경찰청에 의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과의 연계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검찰청, 형무소, 지방갱생보호위원회, 보호관찰소 기타 관계 기관과의 연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 대상 폭력적 성범죄 이외의 범죄를 범한 자에 관한 조치의 특례

경찰본부장은 아동 대상 폭력적 성범죄 이외의 범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 받고, 당해 범죄의 동기・방법 기타의 상황으로 보아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와 동일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제3요인에 관계없이, 경찰청에 재범방지 조치 대상자로서의 등록을 요청한다.

이 경우에 등록 요청을 받은 경찰청은 당해 요청에 관계되는 자를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로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성에 대하여 그 자에 관계되는 출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법무성으로부터 출소 정보

의 제공을 받았을 때는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로서 등록한다.

2) 2005.5.19 아동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 추진 요령의 제정에 대해서

여성・아동을 지키는 시책의 실시에 대해서는「여성・아동을 지키는 시책 실시 요강의 제정에 대해서」(1999년 12월 16일부 경찰청 을생발 제16호, 을관발 제39호, 을형발 제13호)에 근거하여「아동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의 추진에 대해서」(2000년 3월 4일부 경찰청 병생기발 제58호, 병지발 제5호, 병소발 제8호)에 따라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전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가 발생하고 국민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경찰청에서는 아동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별지와 같이「아동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 추진 요령」을 제정하였으므로, 각 도도부현 경찰에는, 다음과 같이 아동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 강구에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아울러,「아동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 추진에 대해서」(2000년 3월 4일부 경찰청 병생기발 제58호, 병지발 제5호, 병소발 제8호)는 폐지한다.

[별지]

아동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 추진 요령

(청소년 성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성범죄출소자 출소정보 제공관련부분 발췌)

제1조 경찰 활동의 적극적 전개

3. 각종 정보의 파악과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제공

심신 모두 발달 도상에 있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아동을 그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 사회나 시정촌 등이 연계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자원봉사자나 학교, 시정촌 등에 의한 자주적인 방범활동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등의 발생 상황이나 범죄 유형별의 피해 방지 방법 등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하 '지역 안전 정보'라고 한다)가 제공되는 것이 기초가 된다.

따라서 도도부현 경찰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불심자에 관한 정보의 파악 강화에 힘쓰는 한편 지역 안전 정보가 확실하게 지역 주민 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적극적이고 또한 효과적인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불심자 등에 관한 정보의 파악 강화

모든 경찰활동을 통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발생이나 불심자에 관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파악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료화하여 각 부문간에서의 공유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의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사안의 전반적인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

-성범죄, 유괴, 아동에 대한 말걸기 사안, 불심자의 출몰 등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사안의 발생 장소, 시간대,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사안의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한 곳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폭넓은 수집에 노력함과 함께 수집한 정보는 경찰 본부의 범죄 억제대책주관부국에서 일원적으로 집약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2005년 6월 1일부터 법무성으로부터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의 출소자에 관계되는 출소 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이 출소한 후에 다시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상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한다. 도도부현 경찰은 당해 통지에 따라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의 출소자에 관계되는 정보의 파악에 노력함과 함께 그 정확한 활용과 적절한 관리에 특히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부록 5> 형사절차제도 : 실태 조사 기록지

<table>
<tr><td>등록번호</td><td colspan="5"></td></tr>
<tr><td>피해유형</td><td colspan="5">특수강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추행</td></tr>
<tr><td>피해내용
(구체적으로)</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담당 경찰관</td><td rowspan="2"></td><td>고소일</td><td></td><td rowspan="2">구속/불구속</td></tr>
<tr><td>검찰송치일</td><td></td></tr>
<tr><td rowspan="2">공판전 조사</td><td rowspan="2"></td><td>기소</td><td>결정일 :</td><td rowspan="2">구속/불구속</td></tr>
<tr><td>불기소</td><td>결정일 :</td></tr>
<tr><td rowspan="2">1심</td><td rowspan="2"></td><td>첫공판일</td><td></td><td rowspan="2">구속/불구속</td></tr>
<tr><td>선고공판일</td><td></td></tr>
<tr><td rowspan="2">2심</td><td rowspan="2"></td><td>첫공판일</td><td></td><td rowspan="2">구속/불구속</td></tr>
<tr><td>선고공판일</td><td></td></tr>
<tr><td rowspan="2">3심</td><td rowspan="2"></td><td>첫공판일</td><td></td><td rowspan="2">구속/불구속</td></tr>
<tr><td>선고공판일</td><td></td></tr>
<tr><td rowspan="2">피해자</td><td colspan="2">성별: 여성 / 남성 (학력 :)</td><td>피해 시 나이</td><td>만 세</td></tr>
<tr><td colspan="2">장애: 있음 / 없음 (유형 :)</td><td>현재의 나이</td><td>만 세</td></tr>
<tr><td rowspan="2">피의자(피고)</td><td colspan="2">성별: 여성 / 남성 (학력 :)</td><td>가해 시 나이</td><td>만 세</td></tr>
<tr><td colspan="2">장애: 있음 / 없음 (유형 :)</td><td>현재의 나이</td><td>만 세</td></tr>
<tr><td rowspan="5">형사절차 상
피해(요약)</td><td colspan="2">경찰조사과정</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검찰조사과정</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재판과정</td><td>1심</td><td colspan="2"></td></tr>
<tr><td>2심</td><td colspan="2"></td></tr>
<tr><td>3심</td><td colspan="2"></td></tr>
<tr><td>비 고</td><td colspan="5">불기소사유 :
판결문요약 :
기타 :</td></tr>
</table>

I. 경찰 수사 과정 상 피해자보호

1. 일반적인 사항

①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의 전반적인 태도	매우불친절	약간불친절	보통	약간친절	매우친절
구체적으로:					
② 수사 과정상 경찰의 적극성 문제	매우비적극	약간비적극	보통	약간적극적	매우적극적
구체적으로:					
③ 수사가 지연된 때, 지연 이유 등을 설명받았나? 전혀 / 약간 / 많이					
④ 수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들었나? 전혀 / 약간 / 많이					
⑤ 가해자의 신병에 관한 통지를 받았나? 예 / 아니요					
⑥ 조사관이 사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나?					
⑦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비난적이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나?					
⑧ 수사관이 무고, 명예훼손 등 역고소에 관한 위협과 협박을 하였나?					
⑨ 수사관이 보호자 및 아동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고소취하를 강요한 적이 있나?					
⑩ 사건과 무관한 불쾌한(혹은 사적인) 질문을 받았나?					
⑪ 기타 수사에 대한 불만					

2.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제21조)

	위반------준수				
▶ 아동관련 자료의 비밀보호규정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1	2	3	4	5
내용 :					

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제21조의2)

	위반------준수				
① 경찰이 자신을 전담 조사자라고 소개하였나?	1	2	3	4	5
② 경찰이 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보였나?	1	2	3	4	5
③ 경찰이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였나?	1	2	3	4	5
④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등 아동이라는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적절한 수사 기법을 사용하였나?	1	2	3	4	5
⑤ 기타, 전담조사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이 있었나?	1	2	3	4	5
내용 :					

4.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제21조의3)

	위반-------준수				
① 조사 과정에서 인격이나 명예훼손 및 사적 비밀 침해 금지 규정이 잘 준수되었나?	1	2	3	4	5
② 조사횟수는 최소화되었나? (회)	1	2	3	4	5
③ 아동이 편안한 환경에서 조사 받도록 배려되었나?	1	2	3	4	5
④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받았나?	1	2	3	4	5
⑤ 경찰서 내 별도로 마련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 했나?	1	2	3	4	5
⑥ 경찰 이외 편안한 장소(상담소나 집 등)에서 조사 했나?	1	2	3	4	5
(조사 장소 :)					
⑦ 조사과정이 영상녹화되었나? (회)	1	2	3	4	5
⑧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를 보호자와 아동에게 구하였나?	1	2	3	4	5
⑨ 수사기관에 조서를 요청했을 때 사본이 교부되었나?	1	2	3	4	5
⑩ 영상녹화물이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나?	1	2	3	4	5
⑪ 대질조사를 받았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받았나?(사전 동의, 수사관의 위협, 피의자 측의 위협, 절차상 문제 등)	1	2	3	4	5
내용 :					

5.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22조의3)

▶ 조사 시, 신뢰관계자가 동석하는 것이 허용되었나?	위반 -------- 준수				
	1	2	3	4	5
내용 :					

6. 증거보전의 특례(제22조의6)

	위반 ------ 준수				
▶ 경찰을 통해 검사에게 증거보전 절차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여 받아들여졌나?	1	2	3	4	5
내용 :					

II. 검찰 조사 과정 상 피해자보호

1. 일반적인 사항

①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의 전반적인 태도 구체적으로:	매우불친절	약간불친절	보통	약간친절	매우친절
② 고소 절차상의 어려움(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매우심함	약간있음	보통	별로없음	전혀없음
③ 수사가 지연된 때, 지연 이유 등을 설명받았나?	예 / 아니요				
④ 가해자의 신병에 관한 통지를 받았나?	예 / 아니요				
⑤ 조사관이 사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나?					
⑥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비난적이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나?					
⑦ 수사관이 무고, 명예훼손 등 역고소에 관한 위협과 협박을 하였나?					
⑧ 수사관이 보호자 및 아동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고소취하를 강요한 적이 있나?					
⑨ 사건과 무관한 불쾌한(혹은 사적인) 질문을 받았나?					
⑩ 기타 수사에 대한 불만 구체적으로:					

2.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제21조)

	위반 --- 준수				
▶ 아동관련 자료의 비밀보호규정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1	2	3	4	5
내용 :					

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제21조의2)

	위반 ---- 준수				
① 경찰이 자신을 전담 조사자라고 소개하였나?	1	2	3	4	5
② 경찰이 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보였나?	1	2	3	4	5
③ 경찰이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였나?	1	2	3	4	5
④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등 아동이라는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적절한 수사 기법을 사용하였나?	1	2	3	4	5
⑤ 기타, 전담조사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이 있었나?	1	2	3	4	5
내용 :					

4.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제21조의3)

	위반 ------ 준수				
① 조사 과정에서 인격이나 명예훼손 및 사적 비밀 침해 금지 규정이 잘 준수되었나?	1	2	3	4	5
② 조사횟수는 최소화되었나? (회)	1	2	3	4	5
③ 아동이 편안한 환경에서 조사 받도록 배려되었나?	1	2	3	4	5
④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받았나?	1	2	3	4	5
⑤ 경찰서 내 별도로 마련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 했나?	1	2	3	4	5
⑥ 경찰 이외 편안한 장소(상담소나 집 등)에서 조사 했나?	1	2	3	4	5
(조사 장소 :)					
⑦ 조사과정이 영상녹화되었나? (회)	1	2	3	4	5
⑧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를 보호자와 아동에게 구하였나?	1	2	3	4	5
⑨ 수사기관에 조서를 요청했을 때 사본이 교부되었나?	1	2	3	4	5
⑩ 영상녹화물이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나?	1	2	3	4	5
⑪ 대질조사를 받았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받았나?(사전 동의, 수사관의 위협, 피의자 측의 위협, 절차상 문제 등)	1	2	3	4	5
내용 :					

5.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22조의3)

▶ 조사 시, 신뢰관계자가 동석하는 것이 허용되었나?	위반 ------ 준수				
	1	2	3	4	5
내용 :					

6. 증거보전의 특례(제22조의6)

	위반 ------ 준수				
▶ 경찰을 통해 검사에게 증거보전 절차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여 받아들여졌나?	1	2	3	4	5
내용 :					

III. 재판 과정 상 피해자보호

1. 일반적인 사항

① 담당 판사의 전반적인 태도 구체적으로 :	매우 불친절	약간 불친절	보통	약간 친절	매우 친절
② 담당 검사사의 전반적인 태도 구체적으로 :					
③ 재판 절차상의 어려움 구체적으로 :	매우 심함	약간 있음	보통	별로 없음	전혀 없음
④ 피고측 변호사의 부적절한 심문에 대해 판사가 제재를 하여 아동을 보호하였나? 예 / 아니요					
⑤ 피고측 변호사의 부적절한 심문에 대해 검사가 제재를 하여 아동을 보호하였나? 예 / 아니요					
⑥ 판사가 추궁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나?					
⑦ 검사가 추궁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나?					
⑧ 재판이 지연될 때 지연이유를 설명해주었나? 예 / 아니요					
⑨ 재판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나? 아니오 / 약간 / 네					
⑩ 피고의 신병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았나?					
⑪ 담당 판사 교체 횟수 :					
⑫ 아동 법정 증언 출석 빈도 :					
⑬ 판사가 아동의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였나?					
⑭ 검사가 아동의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였나?					
⑮ 피고측 변호사가 아동의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였나?					
※ 기타 재판에 대한 불만					

2.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제21조)

▶ 아동관련 자료의 비밀보호규정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위반 ------- 준수				
	1	2	3	4	5

3. 심리의 비공개 (제 22조)

	위반 ------ 준수				
①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이루어졌는가?	1	2	3	4	5
② 증인 출석 시, 피고인 퇴정 요청했나?	1	2	3	4	5
③ 검사로부터 비공개 심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나?	1	2	3	4	5
④ 법원 내 증인 대기실로 쓰일 장소가 구비되었나?	1	2	3	4	5

4. 제22조의2. 전문가의 의견조회

	위반 ----- 준수				
▶ 법원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였는가?	1	2	3	4	5

5.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22조의3)

	위반 ------ 준수				
▶ 아동이 법정 증언하였다면, 보호자 동석되었나?	1	2	3	4	5

6. 증거보전의 특례(제22조의6)

	위반------- 준수				
① 아동 조사 내용이 증거보전 된 적이 있나?	1	2	3	4	5
② 경/검찰에서 이루어진 진술조사 영상녹화물이 공판에서 증거물로 채택되었나?					
③ 채택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7. 제22조의4.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위반 ------- 준수				
▶ 아동의 법정증언 시 전자재판 등의 제도가 활용되었나?	1	2	3	4	5

<부록6>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

본 조사는 법무부 여성아동과의 의뢰를 받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대책'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아동 성폭력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과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수집된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충실한 응답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응답내용이 향후 정책방안 수립에 귀중한 자료가 됨을 고려하시어 해당되는 모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의처 : 02-3156-7146 황정임 연구위원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현황 관련 사항입니다.

1.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응급실(응급의료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다
☐ 응급실(응급의료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

2. 센터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 ( )㎡

2-1. 센터내 내부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구비되어 있는 시설, 설비에 모두 √표해 주십시오.

☐ 상담실 ☐ 심리평가/심리치료실 ☐ 피해자대기실/안정실 ☐ 의료실 ☐ 진술녹화실 ☐ 사무실 ☐ 해부학적 인형 ☐ 원격지화상 대질조사 시스템 ☐ 디지널 씨비코 ☐ 성폭력응급키트
☐ 기타 ( )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배치 관련 사항입니다.

3. 센터에는 몇 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

총원	( )명	해당되는 것에 √ 표시해 주십시오		
		근무형태	자격증 여부	겸임 여부
경찰관	( )명	☐ 일근 ☐ 3교대 ☐ 변형 3교대	-	-

상담사	( )명	□ 일근 □ 3교대 □ 변형 3교대	□ 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 기타	□ 행정 겸임
간호사	( )명	□ 일근 □ 3교대 □ 변형 3교대	□ 일반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법의학 간호사	□ 행정 겸임
행정	( )명	□ 일근 □ 3교대 □ 변형 3교대	-	□ 간호사 겸임 □ 상담사 겸임 □ 기타업무 겸임

※ 2007년 한해동안의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아동 성폭력 서비스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4. 2007년 한해동안 센터에 접수되었던 전체 피해자 중 아동 성폭력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

피해자	피해자수	발생시간						신고시간						피해상황
		0-3	3-6	6-12	12-18	18-21	21-24	0-3	3-6	6-12	12-18	18-21	21-24	
전체	( ) 명													-
유아	( ) 명													□피해직후 □피해후 시간흐른뒤
초등 학생	( ) 명													□피해직후 □피해후 시간흐른뒤

5.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센터에 **주로 내원하게 되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로에 √표 해 주십시오.

□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연계 □ 산부인관 등 병원의 연계 □ 부모, 친지 등이 직접 알고서 □ 경찰서로부터의 연계 □ 기타 ( )

6.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서비스 내용
법률 및 수사지원	□ 녹화 진술 □ 조서 작성 □ 법률 자문 □ 고소장 작성 □ 조사 동행 □ 수사진행상황 확인 □ 고소장 접수 □ 기타 ( )
의료지원	□ 의료적 진단/평가 □ 산부인과 진료 □ 정신과 진료 □ 법의학적 증거 채취 □ 외래진료 안내 및 동행 □ 기타 ( )
상담지원	□ 피해아동 상담 □ 피해가족 상담 □ 심리치료 □ 관련기관 정보 안내 □ 기타 ( )

7. **2007년 한해동안** 센터에 내원한 아동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을 얼마인가 ?
____%
(※ 전체 피해자의 고소율 : _____ %)

8. **아동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교육훈련 여부	교육훈련 내용 **(교육 경험 있는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찰관	□ 있다 □ 없다	
상담사	□ 있다 □ 없다	
간호사	□ 있다 □ 없다	

9.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외부**(병원 외부의) **기관을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이용했던 기관에 대해 √표해 주십시오.

□ 성폭력상담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아동 전문 신경정신과 □ 해바라기 아동센터 □ 산부인과
□ 기타 ( )

10. 아동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_____
_____
_____

11. 센터에서 아동 성폭력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입니까 ?

_____
_____
_____

※ 응답자 관련 사항입니다.

1. 성별 □ 여성 □ 남성
2. 담당업무 □ 수사 및 법률지원 □ 의료지원 □ 상담지원 □ 기타
3. 연령 ( ) 세
4. 센터 근무 경력 ( ) 년 ( ) 개월

§ 감사합니다 §

해바라기아동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자료

본 조사는 법무부 여성아동과의 의뢰를 받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대책'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자료는 서울, 영남, 호남의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사업결과 보고서와 홈페이지 상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 선행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본 자료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연구 목적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충실한 응답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응답내용이 향후 정책방안 수립에 귀중한 자료가 됨을 고려하시어 충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의처 : 02-3156-7146 황정임 연구위원
발송처 :

1. 각 센터의 조직도 및 업무 추진 인력배치를 정리한 것입니다.
홈페이지와 사업결과보고서에 수록된 내용를 토대로, 일부는 전화상으로 문의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시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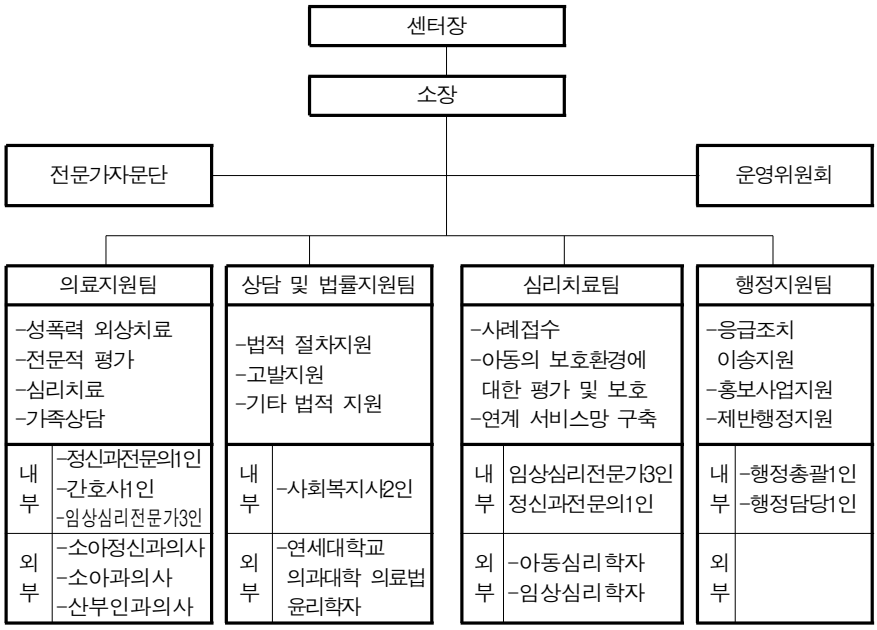

(출처 : 홈페이지 & 전화문의)

<그림> **서울해바라기센터**의 업무 및 수행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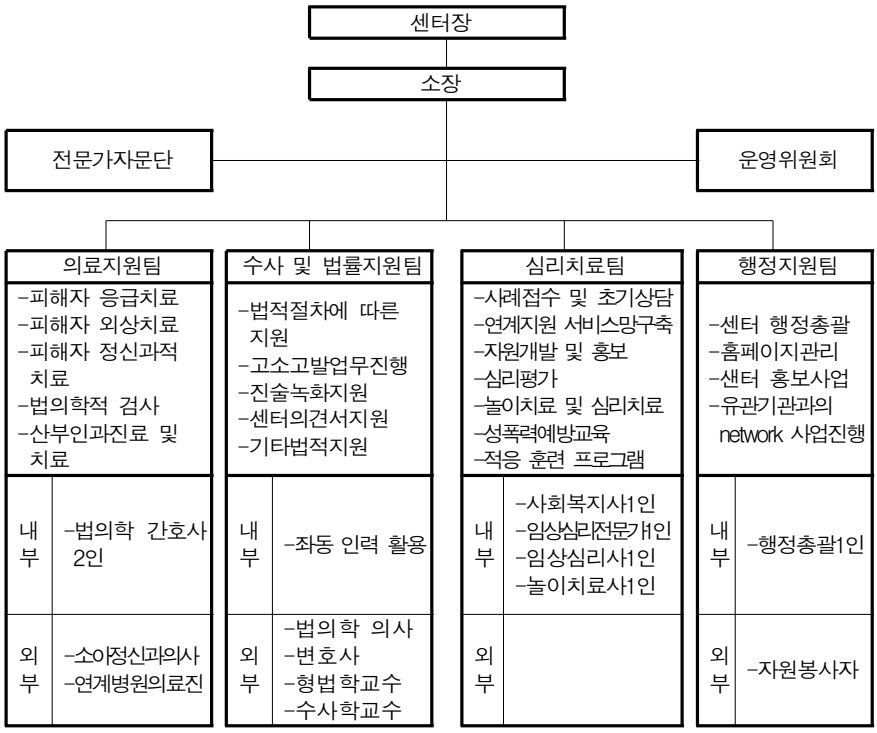

(출처 : 홈페이지 & 전화문의)

〈그림〉 **영남해바라기센터**의 업무 및 수행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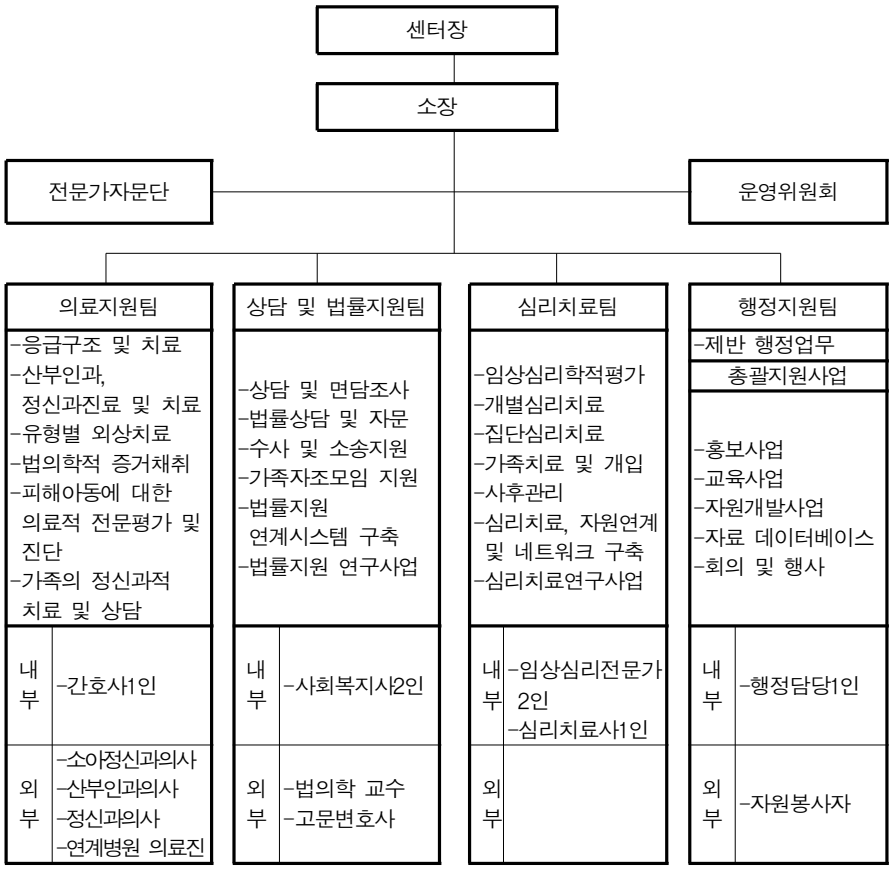

(출처 : 홈페이지 & 전화문의)

〈그림〉 **호남해바라기센터**의 업무 및 수행 인력

2. 각 센터의 시설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규모 : _____ ㎡

○ 구비시설(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시설명(예. 상담실, 검사실 등)을 모두 나열해 주십시오) :

_____

_____

_____

_____

3. 각 센터의 서비스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선행연구 결과와 각 센터에서 발간한 사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수치를 확인해 주시고, 수치가 비어 있는 센터 자료(특히, 2007년 영남센터)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표〉 접수현황

(단위 : 건(월평균))

	서울	영남	호남	전체
2004년	169(24.1)	-	-	169(24.1)
2005년	494(41.2)	94(13.4)	82(11.8)	670(23.1)
2006년	638(53.2)	228(19.0)	202(16.8)	1,068(29.7)
2007년		254(21.2)	160(13)	
계		576	444	

〈표〉 서비스 지원현황

(단위 :건)

구분			서울	영남	호남	전체
의료지원	의학적 치료	2004	282	-	-	282
		2005	730	127	348	1205
		2006	738	639	552	1929
		2007	1618		433	
	심리치료	2004	666	-	-	666
		2005	1758	230	275	2263
		2006	1141	483	1307	2931
		2007	1495		2335	
법률지원		2004	200	-	-	200
		2005	454	148	291	893
		2006	430	503	286	1219
		2007	768		493	
상담지원		2004	368	-	-	368
		2005	628	208	290	1126
		2006	636	436	1026	2098
		2007	325		479	
계		2004	1516	-	-	1516
		2005	3570	713	1204	5487
		2006	2945	2774	3171	8890
		2007	4026		3740	

* 용어설명

- '의료지원' : 의학적 치료(정신과 치료, 산부인과 진료, 응급진료, 기타 통합진료, 약물치료, 입원치료)와 심리치료(심리평가, 심리치료, 집단치료) 등 포괄.
- '법률지원' : 법률상담, 법률 자문상담, 수사지원, 재판지원 등 포괄.
- '상담지원' : 초기면담조사, 지원상담, 부모상담, 부모교육, 자원연계, 기관 연계 등 포괄.

〈표〉 의료지원 실적

(단위 : 건)

구분		서울				영남			호남		
		2004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의학적치료	정신과 치료	164	442	569	437	93	282		151	279	264
	산부인과 치료	65	180	68	-	14	33		65	65	47
	약물치료	43	83	79	109	17	49		113	172	90
	입원치료	10	22	22	10	3	8		3	5	4
	통합/응급/기타	58	-	-	105	-	7		16	31	28
	소계	340	792	738	661	127	379		348	552	433
심리치료	심리평가	112	225	194	173	37	193		32	81	72
	심리치료	427	89	947	1495	193	353		243	1226	2263
	소계	539	314	1141	1668	230	546		275	1307	2335
계		879	1043	1879	2329	357	925		623	1859	2768

- 심리평가 : 지능검사, 소아우울척도(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소아불안척도(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TAI-C), 한국아동인성검사(Korean Persoanlity Inventory for Children, KPI-C), 우울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불안척도(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STAI), 다면성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등과 같은 각종 도구를 활용한 평가를 의미함(여성부, 2007).
- 심리치료 : 놀이치료, 인지행동치료 등과 같이 아동이 두려워하는 감정이나 의사를 표출하고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치료하는 것 등을 의미함(여성부, 2007).

〈표〉 법률지원 실적

(단위 : 건)

구분		서울				영남			호남		
		2004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법률상담 및 자문	법률상담	15	133	123	410	29	183		148	124	223
	법률자문 의뢰	110	29	25	-	27	36		4	27	8
	소계	125	162	148	410	56	219		152	151	231
수사및 재판지원	증거자료제출 및 전문가 증인출두	28	110	133	23	21	73		42	49	42
	수사, 재판동행 및 모니터링	21	83	115	134	-	40		22	31	28
	진술녹화	26	66	34	24	7	16		16	25	14
	기타	-	9	-	177	11			59	30	32
	소계	75	268	282	358	92	129		139	135	166
계		200	430	430	768	148	348		291	286	601

〈표〉 상담지원 실적

(단위 : 건)

구분	서울				영남			호남		
	2004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초기 면담조사	164	288	329	325	50	130		49	113	99
부모상담 및 교육	204	117	307	48	183	466		43	113	159
계	368	405	636	373	233	596		92	226	258

4. 몇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한해동안의 통계수치를 토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의학적 증거 확보를 위한 **응급키트사용건수**는 **한달에 평균 몇건**입니까 ?

- 평균 _____건/월
- 2007년 전체 센터 접수건수 중 _____건

○ 센터에서 진행되는 진술녹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진술녹화시 센터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_____

- 진술녹화시 센터에서 참여하는 사람의 역할을 무엇입니까 ?

_____

○ 외부기관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 2007년 한해동안 총 _____건

○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 혹은 연계합니까 ?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 의료지원(구체적인 진료과목 : _____)
□ 주거/보호공간(보호시설 등) 제공
□ 법률지원(구체적으로 : _____)
□ 상담지원
□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주로 연계하고 있는 기관명을 적어주십시오.

_____

§ 감사합니다 §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

- 2008년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발 행 : 2008. 12.

발행인 : 김경한

발행처 : 법무부 여성아동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Tel. 02) 2110-3139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Tel. 02) 313-7593(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524-01